議政白書

제 4 집 [제3대 전반기]



蔚山廣域市北區議會

제 4 집

議政白書

-제3대 전반기-

(2002. 7. 1 ~ 2004. 6. 30)



蔚山廣域市北區議會

본회의장 전경



소회의실 전경



구 의 상 징 물

▮ 우리구의 마크 ▮



- **녹색부분** : 산, 육지-자연
- **파랑부분** : 바다 - 자연
- **주황색원**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의　　미** :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중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 우리구의 캐릭터▮



- 컨　셉 :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　태 : 돌고래
- 의　미 :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 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의미

구 의 상 징 물

구 화



참나리꽃은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 목



느티나무는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 조



산까치는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 간 사

제4집 의정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우리 북구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7년의 세월의 지났습니다.

그 세월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은 『제4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백서는 제3대 북구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앞으로 보다 나은 의정 활동 수행을 다짐하는 마음가짐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한 백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구민 여러분의 의정참여와 관심을 북돋우고 훗날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구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1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하 인 규

축 사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 의회의 의정백서 발간을 14만 구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기록된 역사는 후세에 교훈이 될 때에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정백서가 북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기록물로써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구청과 의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논리인 견제나 균형이 아니라 상호보완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제에서 볼 때 지금까지 구정의 여러 부문에서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구청이 합심 노력해서 북구를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방의회사에 길이 남는 의정지로써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 믿으며 2004년 북구 의정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4. 10. 1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이 상 범

축 사

좀 더 나은 지방자시대를 여는데 밑거름이 되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정백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갓 3년차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구의회로써, 다른 지방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는 다른 지방자치의원들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민선 1기 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상호협력, 비판하면서 북구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노력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자율과 분권의 정신에 충실하면서 제대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가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의정백서가 이후 좀 더 나은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남은 임기동안 의정백서에 담긴 그 노력을 잊지 마시고 북구민을 위한 참다운 의정활동을 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정백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북구가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15

국회의원 조 승 수

제3대북구의회의원일람

의장단(재임기간:2002. 7. 9 ~ 2004. 7. 6)

의 장	부 의 장
	
김 진 영	김 재 근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기념(2002. 7. 9)

弟 3 代 議員現況

(임기 2002. 7. 1 - 2006. 6.30.)

선거구	성 명	학 력 및 경 력	주소 · 전화
농소1동	 이 재 경 (56. 4. 25)	■학 력 - 농소중학교 졸업 - 신라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 력 - 공수특전사 중사 전역 - 농소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농소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이사 - 교육공동체 울산시민연합 공동대표 - 지체장애인 북구협회 후원회 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회장 - 북울산라이온스클럽 1부 회장 -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북구 생활체육육상연합회 회장 -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b-8n ☎ 282-8935 (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b-8n ☎ 295-5891 (E-mail) Ljkgo2@hanmail.net 011-583-7200
농소2동	 김 재 근 (58. 9. 11)	■학 력 - 김해 합성초등학교 졸업 - 김해중학교 졸업 - 김해농공고등학교 졸업 ■경 력 - 육군병장 만기전역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1~10대 대의원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2,4,8,9대 대의원 대표역임 - 울산여성회 자문위원 - 농소지구 APT 체육연합회 고문 -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회원 - 울산광역시 국립대유치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 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 -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3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32 매곡현대Ⓐ 105/504 ☎ 935-2365 (E-mail) jgkimmm@hananet.net 011-9557-8473
농소3동	 김 대 영 (60. 2. 2)	■학 력 - 부산 괴정초등학교 졸업 - 송도중학교 졸업 - 동아고등학교 졸업 ■경 력 - 육군하사 만기전역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 대표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직실장 역임 -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자문위원 -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58-1 쌍용아진Ⓐ 105/503 ☎ 295-1291 (E-mail) dbkdy@hanmail.net 011-860-9744

第 3 代 議員現況

(임기 2002. 7. 1 - 2006. 6.30.)

선거구	성 명	학력및경력	주소 · 전화
강동동	 윤 임 지 (52. 10. 15)	■학 력 - 강동초등학교 졸업 - 강동중학교 졸업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 력 - 경상남도농민후계자회 감사2선 역임 - 울주군 농민 후계자회 회장 역임 - 울주군 재향군인회 이사 - 강동농업협동조합 이사 -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경영인 연합회 고문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자협회 부회장 - 울산광역시 새농민회 부회장 - 울산광역시 농업동지회 회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96-1 ☎ 295-5598 (사)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73-7 ☎ 295-8833 (E-mail) yoon8833@orgio.net 017-564-8833
효문동	 류 재 건 (61. 2. 5)	■학 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용인대학교 졸업 ■경 력 - 동울산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역임 -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임 - 연암초등학교 운영위원 - 효문동 환경정화위원회 회장 -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효문동 방위협의회 위원 - 울산광역시 유도회 이사 - 북구도시계획 심의위원 - 효문동 청소년환경봉사단 단장 - 재성종합상사 대표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0-6 ☎ 288-0203 (사)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2-1 재성종합상사 ☎ 287-5060 (E-mail) 0203rj@hanmail.net 017-558-8931
송정동	 김 진 영 (64. 10. 11)	■학 력 - 송정초등학교 졸업 - 울산중학교 졸업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 력 - 현대엔진노동조합 부위원장 역임 - 민노당 북구지구당 부위원장 역임 -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역임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조직 전문위원 - 송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 - 송정동 청년회 총무 - 울산공고 총동창회 부회장 - 화봉조기회 부회장 - 울산핵발전소 반대공동집행위원 - 통일산악회 북구지부장 - 제3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현대중공업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41-7 ☎ 298-8793 (사) ☎ 289-7161 (Homepage) http://jinyoung.pe.kr (E-mail) gim8793@hanmail.net 018-592-1003

第 3 代 議員現況

(임기 2002. 7. 1 - 2006. 6.30.)

선거구	성 명	학력및경력	주소 · 전화
양정동	 류 인 목 (61. 12. 30)	■학 력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경 력 - 현대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 신울산지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판매본부 부본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지도위원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울산지부 고문 - 제3대 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4-29 ☎288-0786 (사) ☎288-8333 (E-mail) ryoo1604@yahoo.co.kr 011-573-1604
염포동	 하 인 규 (59. 9. 17)	■학 력 - 하동 가종초등학교 졸업 - 하동 옥종중학교 졸업 - 하동 옥종고등학교 졸업 ■경 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임시집행부 부위원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2대 총무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7대 대의원대표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7대 대의원대표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6대 후생복지부장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7대 회계감사 - 참여자치연대 · 울산환경운동연합회원 - 전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 -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92-13 ☎289-8518 (E-mail) haik8518@hanmail.net 017-703-1611



寫眞으로 보는 議政活動





김진영의장 개원사



이상범 구청장 축사



의원 선서



개원 기념(본회의장)



개원 기념 시루떡 자르기



행정사무감사 실시상황 (소회의실)



증인 선서 (소회의실)



매곡천 소공원 공사 현장확인



보건소 신축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상황 (소회의실)



양정 · 염포 하수구뚜껑 교체공사 현장확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업체선정외 3건의 진상조사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공모업체방문 현장확인



진상조사 현장확인



진상조사 현장확인



강동 제전항(육지소규모항) 현장 확인(2002.10.15)



성은아파트옹벽 붕괴 및 산사태 위험지구 현장 확인(2003.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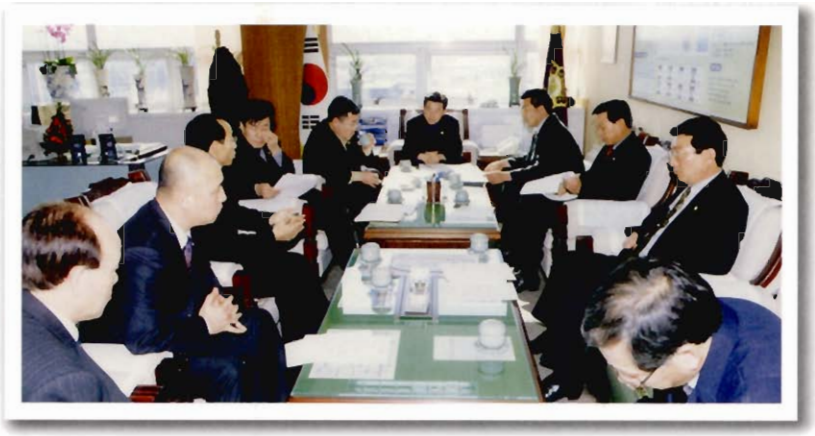
정자천 소교량공사 현장 확인(2004. 2.19)



남해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 견학(2002. 8.30)



진해 대체에너지시설(태양광 · 태양열) 현장 견학(2004. 5.2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2003. 1. 24)



광양시의회의원 내방 접견 행사(2002.11.21)



예천군의회의원 내방 접견 행사(2004. 5.12)



의원 및 관계공무원 정보화교육(2002. 8. 5 ~ 8. 9)



의원 및 관계공무원 특별 연수(2003. 5.21 ~ 5.23)



청소년의 회의 진행 실습(2004. 6. 4)



태연재활원 일일봉사(2003.5. 9)



생활쓰레기 수거현장 체험(2004. 5.20)



강동동 인구감소 관련 기자회견(2004. 6. 9)

目　　次

■ 발간사

■ 축　사

■ 제3대 북구의회의원 일람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41

제2절 의회 연혁 ····· 43

제3절 의회 일반현황 ····· 45

1. 제3대 의회 원구성 ····· 45

2. 의회기구 ····· 53

3. 의원현황 ····· 53

4. 의회 예산현황 ····· 54

5. 의사당 시설현황 ····· 55

6. 사무과 직원현황 ····· 55

7. 의회의 권한 ····· 56

8. 의회의 역할 ····· 57

제4절 구정 기본현황 ····· 58

1. 지역여건 ····· 58

2. 구정현황 ····· 58

3. 구민생활 ····· 59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 60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 62

제2장 의회 운영현황

제1절 집회 현황 ····· 65
1. 의회역대 집회 현황 ····· 65
2. 연도별 집회 현황 ····· 65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 현황 ····· 66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 67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 68

제3장 제3대 개회상황

제1절 제53회 임시회 ····· 121
1. 개회이유 ····· 121
2. 의사일정 ····· 121
3.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21
제2절 제54회 임시회 ····· 122
1. 개회이유 ····· 122
2. 개 회 사 ····· 122
3. 의사일정 ····· 12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25
제3절 제55회 제1차정례회 ····· 127

1. 개회이유 ····· 127
2. 개 회 사 ····· 127
3. 의사일정 ····· 12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31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31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132
제4절 제56회 임시회 ····· 134
1. 개회이유 ····· 134
2. 개 회 사 ····· 134
3. 의사일정 ····· 136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38
제5절 제57회 임시회 ····· 141
1. 개회이유 ····· 141
2. 개 회 사 ····· 141
3. 의사일정 ····· 142
제6절 제58회 제2차정례회 ····· 143
1. 개회이유 ····· 143
2. 개 회 사 ····· 143
3. 의사일정 ····· 14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46
제7절 제59회 임시회 ····· 153
1. 개회이유 ····· 153
2. 개 회 사 ····· 153

3. 의사일정 ····· 15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56
제8절 제60회 임시회 ····· 159
1. 개회이유 ····· 159
2. 개 회 사 ····· 159
3. 의사일정 ····· 16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62
제9절 제61회 임시회 ····· 167
1. 개회이유 ····· 167
2. 개 회 사 ····· 167
3. 의사일정 ····· 16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70
제10절 제62회 임시회 ····· 179
1. 개회이유 ····· 179
2. 개 회 사 ····· 179
3. 의사일정 ····· 179
제11절 제63회 임시회 ····· 181
1. 개회이유 ····· 181
2. 개 회 사 ····· 181
3. 의사일정 ····· 18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85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85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86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187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188
제12절 제64회 제1차정례회 ····· 190
1. 개회이유 ····· 190
2. 개 회 사 ····· 190
3. 의사일정 ····· 19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94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194
제13절 제65회 임시회 ····· 196
1. 개회이유 ····· 196
2. 개 회 사 ····· 196
3. 의사일정 ····· 197
제14절 제66회 임시회 ····· 198
1. 개회이유 ····· 198
2. 개 회 사 ····· 198
3. 의사일정 ····· 20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01
□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 201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2
제15절 제67회 임시회 ····· 204
1. 개회이유 ····· 204
2. 개 회 사 ····· 204
3. 의사일정 ····· 206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08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208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209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210
제16절 제68회 제2차정례회 ····· 212
1. 개회이유 ····· 212
2. 개 회 사 ····· 213
3. 의사일정 ····· 21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16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 216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20
□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 ····· 221
제17절 제69회 임시회 ····· 223
1. 개회이유 ····· 223
2. 개 회 사 ····· 223
3. 의사일정 ····· 224
제18절 제70회 임시회 ····· 227
1. 개회이유 ····· 227
2. 개 회 사 ····· 227
3. 의사일정 ····· 22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30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230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32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233

□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 236
제19절 제71회 임시회 ····· 242
1. 개회이유 ····· 242
2. 개 회 사 ····· 242
3. 의사일정 ····· 24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45
□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 ····· 246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49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250
□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251
제20절 제72회 임시회 ····· 253
1. 개회이유 ····· 253
2. 개 회 사 ····· 253
3. 의사일정 ····· 25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57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57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59
□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60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62
제21절 제73회 임시회 ····· 264
1. 개회이유 ····· 264
2. 개 회 사 ····· 264

3. 의사일정 ····· 26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66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66
□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 ····· 267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 271
제 2절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276
제 3절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79
제 4절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83
제 5절 2003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85
제 6절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89
제 7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93
제 8절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298
제 9절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00
제10절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04
제11절 2004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07
제12절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12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319

1. 감사개요 ····· 319
2.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320
3.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321
4. 행정사무감사일정 ····· 321
제2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324
1. 감사실시 개요 ····· 324
2. 감사실시 경과 ····· 324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 328
제3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343
제4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345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345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347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374
1. 감사개요 ····· 374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375
3. 감사자료 제출요구 ····· 376
4. 감사실시 방법 및 일정 ····· 377
제6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379
1. 감사실시 개요 ····· 379
2. 감사실시 경과 ····· 379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 383

제7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398
제8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00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 400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402

제6장 행정사무조사

제1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 진상조사 계획 ····· 449
제2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 진상조사 경과 ····· 454
제3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 진상조사 결과 ····· 461
제4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 진상조사 결과 처리내역 ····· 473

제7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 481
1. 구정질문 현황 ····· 481
2.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 481
제2절 4분 자유발언 ····· 491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 500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 510
1. 미군 장갑차에 치인 두 여중생에 대한 결의안 ····· 510
2. 이라크전쟁중단 요구 및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안 ····· 510
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동에 따른 결의안 ····· 511
4.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 ····· 512
5. 강동동 인구감소 대책에 관한 질문 ·····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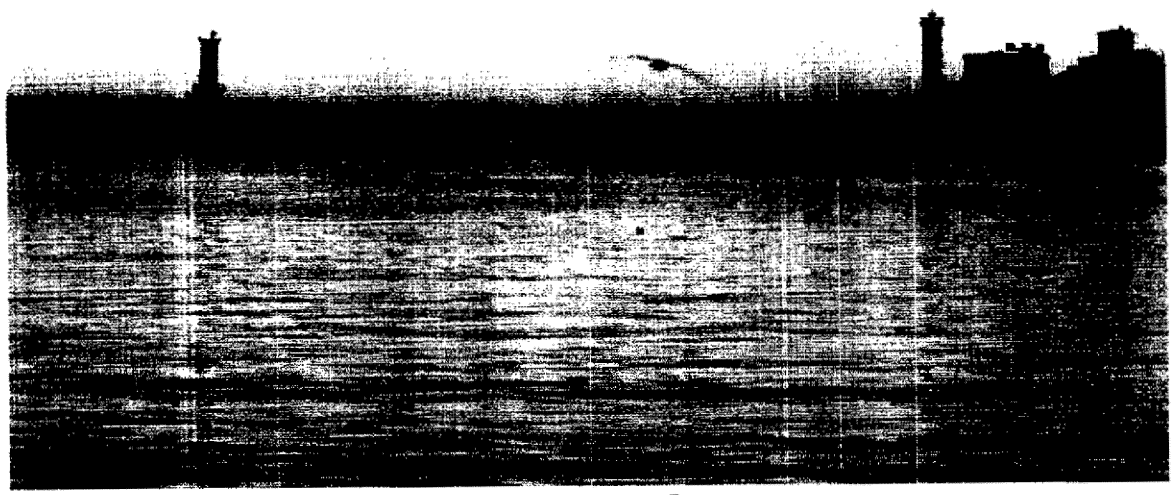
제5절 의정활동일지 ····· 515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 561
2. 초대의원 명단 ····· 562
3. 초대의원 사진 ····· 563
4. 제2대의원 명단 ····· 564
5. 제2대의원 사진 ····· 565
6. 제3대의원 명단 ····· 566
7.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 567
8. 역대 구청장 명단 ····· 568
9.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568
10. 역대 전문위원 명단 ····· 568

제 1 장 일반현황

제 1 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 2 절 의회 연혁
제 3 절 의회 일반현황
제 4 절 구정 기본현황



강동 정자항 일출

제1절 우리 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구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 → 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97. 7. 15 ~ '98. 6. 30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 2002. 6. 13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제3절 의회 일반현황

1. 제3대〈전반기〉의회 원구성

○ 집회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02년 7월 2일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집회일시는 '02년 7월 9일 10시00분으로 공고하였음.

○ 본회의장 의석 배정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

○ 의장단 선거(제1차본회의)

'02년 7월 9일 10시00분에 개회된 제5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8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김재근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김진영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김진영의원, 부의장에 김재근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 5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5표 중 무효와 기권 없이 김진영의원이 5표로 출석의원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5표 중 무효와 기권 없이 김재근의원이 5표로 출석의원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 개원식

- 개원식은 2002년 7월 9일(화) 오후 2시에 북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북구의회의원 8명과 이상범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이선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조승수 전 북구청장, 김성보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개원식 순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및호국용사에대한묵념
5. 의원선서
6. 참석인사소개
7. 개원사(의장)
8. 축　사(구청장)
9. 폐　식

- 개 원 사(김진영 의장)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3만 구민의 뜨거운 여망과 기대를 안고 21세기 자치 북구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제3대 북구의회를 개원하게 되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범 북구청장님, 이선규 강북교육장님, 조승수 전 북구청장님, 그리고 김성보 초대의장님을 비롯한 제1대 의원님, 박춘환 의장님을 비롯한 제2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또 한편으로는 비난과 질책을 받아가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숱한 곡절과 잡음도 있었지만 지난 10여년간의 축적된 자치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한 단계 한 단계 다져 나왔습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우리 북구의회도 초대와 2대 의회를 거치며, 열악한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면모를 갖추는데 시대적 사명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지방자치 초년의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며 우리 북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도 땀흘려오신 제1대 김성보 의장님과 초대의원님, 제2대 윤두환·박춘환·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민의 뜨거운 성원속에 제3대 북구의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21세기 북구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와 동료 의원님들이 쌓아온 지방자치의 경륜을 바탕으로, 자치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노력들이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IMF의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보였듯이, 이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지난 초대와 2대 의회가 이룩해 놓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바탕으로 13만 구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함께 의논하며 모아진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각적인 대화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폭넓은 의견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회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의 확대와 우리 의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의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그동안 신설구로서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위주의 기

반확충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

다른 무엇보다 우리 제3대 북구의원은 타 시·군·구 의원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젊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젊은 의원답게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개방화 시대에 발맞춰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문제점만을 제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집행부와의 상호 보완적 협조와 균형을 이루어 의회의 역할과 의무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3대 의원 모두는 다함께 굳은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의정, 활기차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1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00여 북구 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행정 환경은 지방화와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단편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으로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음은 물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행정개혁의 주역으로서 보다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

지난 6. 13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북구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제3대 의원은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듯이 우리 13만 구민 모두의 중지를 하나로 모아 21세기 북구의 힘찬 전진과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3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하반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진 영**

• 축 사(이상범 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선규 강북교육장님을 비롯한 조승수 전 구청장님, 김성보 초대의장님

을 비롯한 전직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출범하는 기쁘고도 희망찬 날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제3대 구의회 개원을 13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전에 있었던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어 앞으로 4년간 의정을 이끌어갈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식견과 경륜으로 우리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지방자치를 꾸려 나가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자치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신 제2대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97년 개원하여 비록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의원님들께서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주심으로서 그 동안 의회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망을 수렵하는 의회로서 그 위상을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난 초대 민선 때에는 신설구로서 열악한 자치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자치기반의 초석을 다지게 되어 밝고 건강한 북구의 주민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한발 앞서 개척해야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4강 진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저력은 끝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투혼과 노동자의 열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북구 발전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2일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앞으로의 구정운영의 방향으로 첫째는 제가 내건 공약을 실현시키는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행정, 깨끗한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북구를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북구 재정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이 좋은 결실을 맺어 13만 구민이 다함께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 한 정책과 업무에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 현안들을 하나 하나씩 해결해나감으로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참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제3대 북구의회가 출범하는 오늘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활동이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고 주민의 뜻과 바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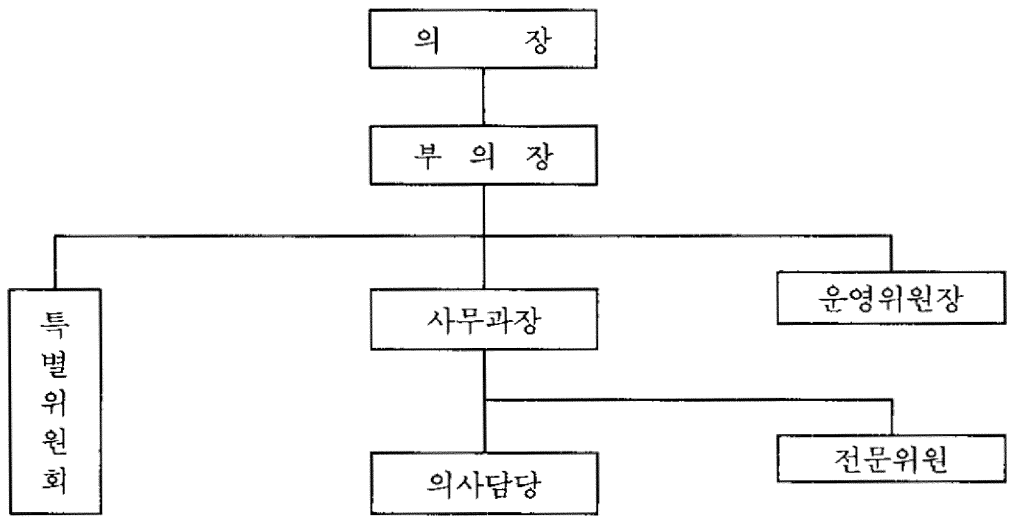
아울러 제3대 북구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9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이 상 범**

2. 의회기구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단위:명)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8	1	1	1	1	1	1	1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건설업	기 타
8	1	1	5	1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독학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8				6		2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0세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8			7	1	

□ 성 별

의원수	계	남	여	비고
8	8	8		

4. 의회 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의사운영	의정활동
2002년도	624,408	436,056	187,352
2003년도	735,578	530,682	204,896
2004년도	803,439	598,543	204,896

5. 의사당 시설현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

○면적 : 북구청 5층 1,052㎡ (318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	비 고
본 회 의 장	208.43(63.05)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129.05(39.04)	2인1실 3개
민 원 접 견 실	72.00(21.78)	
의 회 사 무 과	117.43(35.52)	
전 문 위 원 실	36.00(10.89)	
방 송 실 등 5 실	189.40(57.29)	

6. 사무과 직원현황

직 급	정원	현원	비 고
계	12	12	
5 급	2	2	사무과장, 전문위원
6 급	1	1	
7 급	3	3	
9 급	1	1	
기 능	5	5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 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적 요소 공존

○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 시설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 현황(2004.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27㎢(울산광역시의 14.9%)

○ 도시계획구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116.60㎢	8.27	0.81	7.56	99.96	-

※개발제한구역 80.41㎢(51%)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42,160세대	135,514명	70,608	64,906	789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사 업 소	동
현 황	3국 1실 13과	1사업소(보건소)	8개동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 건 소	동
442/412	335/305	12/12	35/33	60/62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02년도	64,555	63,798	798	37.3%
2003년도	66,576	65,742	833	32.0%
2004년도	74,787	73,897	890	38.0%

3. 구민 생활 지표 (2004.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료시설		생활보호대상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일평균)		1일분뇨 수거량 (수거율)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조건부	시설	1인1일 발생량	총발생량	
1,485 개소	357 개소	99	424	758 / 1,385	746 / 1,328	9 / 22	2 / 175	818 kg	110.9 ton	80ton (100%)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조설립업체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조합원수
2,850ha	1,006	1,710	134	796개	41,461명	22개	27,570명

□ 도시건설

도로				주택	상수도			하수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455.4 km	9.04 %	158 km	95.6 %	35.257 100.86%	28,927 ton/일	267 ℓ	81.7 %	135,514 명	80,224 명	59.2 %

□ 교 통

자동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48,259대	37,082	3,257	7,563	357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25개소 30,421명	12 18,216	7 6,706	4 5,027		2 472

4. 동별 인구 · 면적 현황 (2004. 6. 30. 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세대수)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27	27	135,514	
농소1동	14.90	4 (2개동중복)	19,754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임.
농소2동	11.42	3 (2개동중복)	23,063	
농소3동	31.01	5	24,197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세대수)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강동동	60.65	9	5,076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8	4	29,629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임.
송정동	10.79	2	14,559	송정은 큰노송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68	1	9,983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4	1	9,253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와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구·군 일반현황 (2004.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6.6	1,078,142	553,929	524,213	5,951
중 구	37.0	233,706	119,718	113,988	571
남 구	71.6	347,009	176,733	17,0276	1,270
동 구	35.8	186,371	97,170	89,201	1,478
북 구	**157.3**	**135,514**	**70,608**	**64,906**	**789**
울주군	754.9	175,542	89,700	85,842	1,843

□ 재정규모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1,317,248	907,457	409,791	65.8%
중 구	73,578	70,099	3,479	25.3%
남 구	103,796	97,529	6,267	45.8%
동 구	63,857	62,784	1,073	41.1%
북 구	**74,787**	**73,897**	**890**	**38.0%**
울 주 군	185,107	181,427	3,680	48.6%

제2장 의회 운영현황

제 1 절 집회현황

제 2 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 3 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강동 정자항 일출

제1절 집회 현황

1. 의회역대 집회 현황

구분	연도	정례회		임시회		합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전반기)	계	4	70	17	98	21	168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4	26	4	26

2. 연도별 집회 현황

연도	정례회		임시회		합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7	175	45	209	52	384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4	26	4	26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 현황

회 기	회 별	소집요구인	집회공고일	집회기간	일수
제53회	임시회	구청장	2002.7.1	2002.7.9	1
제54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2.7.15	2002.7.22~7.26	5
제55회	정례회		2002.8.31	2002.9.6~9.14	9
제56회	임시회	류인목의원외2인	2002.10.9	2002.10.15~10.25	11
제57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2.11.6	2002.11.12~11.14	3
제58회	정례회		2002.11.19	2002.11.25~12.20	26
제59회	임시회	류인목의원외2인	2002.12.14	2002.12.21~12.27	7
제60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3.2.6	2003.2.12~2.20	9
제61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3.3.25	2003.3.31~4.3	4
제62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3.5.14	2003.5.19	1
제63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3.6.9	2003.6.16~6.25	10
제64회	정례회		2003.6.30	2003.7.7~7.16	10
제65회	임시회	류재건의원외2인	2003.7.18	2003.7.23	1
제66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3.9.18	2003.9.25~9.27	3
제67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3.10.4	2003.10. 9~10.18	10
제68회	정례회		2003.11.19	2003.11.25~12.19	25
제69회	임시회	김대영의원외2인	2003.12.15	2003.12.20~12.26	7
제70회	〃	윤임지의원외2인	2004.2.6	2004.2.12~2.21	10
제71회	〃	김대영의원외2인	2004.5.3	2004.5.10~5.14	5
제72회	〃	이재경의원외2인	2004.6.4	2004.6.10~6.19	10
제73회	〃	류인목의원외2인	2004.6.25	204.6.30	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3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전반기〉(2002.7.1~2004.6.30)　　2002~2004년도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166	186	8	2	60	19	0	4	0	15	2	76
소계	2002년도	62	51	3	1	15	7	0	2	0	2	0	21
제53회	2002.7.9~7.9	1	3										3
제54회	2002.7.22~7.26	5	6			1					1		4
제55회	2002.9.6~9.14	9	9		1	4	1		1				2
제56회	2002.10.15~10.25	11	7	1		2	1		1				2
제57회	2002.11.12~11.14	3	5										5
제58회	2002.11.25~12.20	26	16	1		6	5				1		3
제59회	2002.12.21~12.27	7	5	1		2							2
소계	2003년도	80	89	4	1	28	9	0	2	0	4	1	40
제60회	2003.2.12~2.20	9	8			3					1		4
제61회	2003.3.31~4.3	4	14			7	2		1			1	3
제62회	2003.5.19~5.19	1	3										3
제63회	2003.6.16~6.25	10	9	1		4	1						3
제64회	2003.7.7~7.16	10	8		1	1	1		1		1		3
제65회	2003.7.23~7.23	1	3			1							2
제66회	2003.9.25~9.27	3	8			5							3
제67회	2003.10.9~10.18	10	15	1			3						11
제68회	2003.11.25~12.19	25	17	1		7	2				2		5
제69회	2003.12.20~12.26	7	4	1									3
소계	2004년도	26	46	1	0	17	3	0	0	0	9	1	15
제70회	2004.2.12~2.21	10	9			5					1		3
제71회	2004.5.10~5.14	5	19			6	1				8		4
제72회	2004.6.10~6.19	10	11	1		5	1					1	3
제73회	2004.6.30~6.30	1	7			1	1						5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1. 제53회 임시회 : 2002. 7. 9 ~ 7.9 (1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의장·부의장 선거	2002. 7. 9 의장직무대행 연장의원	○제3대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의 장 : 김진영의원 당선(1차투표) ○부의장 : 김재근의원 당선(1차투표)	2002.7.9 선 거

2. 제54회임시회 : 2002. 7. 22 ~ 7. 26(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2.7.16 구 청 장	○3대 의회 개원 따른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2002.7.22 ~ 7.26 전부서 실시
3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2002.7.16 구 청 장	○종전의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동민의 집, 쉼터 등 다양하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치센터의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 일원화 ○사용료·수강료의 징수권자 명확화와 징수범위, 요율 등의 범위를 정하여 징수·관리체계 개선 등 ※수정내용 • 안 제4조 ②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동" 은 행정동의 명칭을 사용한다)" 로 한다" 를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 ②항을 삭제한다.	2002.7.25 (제4차) 수정가결

3. 제55회제1차정례회 : 2002. 9. 6 ~ 9. 14(9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2. 7. 2 구 청 장	○200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 지출사업건수 : 양정동 새마을APT 뒤 절개지 옹벽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외4건 - 지출결정액 : 128,838,000원 - 지 출 액 : 123,584,110원 - 잔 액 : 5,253,890원	2002.9.14 (제8차) 승인가결
2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2. 7. 2 구 청 장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73,823,630,190원 - 세출결산액 : 58,999,776,510원 - 세계잉여금 : 14,823,853,680원	2002.9.14 (제8차) 승인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 8. 30 구 청 장	○제안이유 • 2001. 9. 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 - 광역시에서 수행하던 상수도업무중 일부업무가 구·군으로 이양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제5조의2) • 경제사회국 -간이상수도 등 수도(水道)에 관한 사무(신설)	2002.9.13 (제7차)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8.30 구 청 장	○제안이유 •2001. 9. 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되어 통보됨 ○주요내용 • 정원조정 : 증 1명 • 정원의 총수 : 374명 → 375명(증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362명 → 363명(증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변동없음)	2002.9.13 (제7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7	울산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002.8.30 구 청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관리 : 간이상수도-구청장, 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대표자 • 보수 : 구청장이 지원 ○관리비용 •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구청장 일부 지원 가능 ○협의회 설치 • 시설단위별 설치 • 기능 : 시설의 청결유지 및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도모	2002.9.13 (제7차)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북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9.7 이재경외3명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를 조정함. •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 현행 41,000원 → 조정 46,000원 • 의원의 숙박비 : 현행 22,000원 → 조정 25,000원	2002.9.13 (제7차) 원안가결
9	미군장갑차에치인두여중생살인만행에대한결의안	2002.9.11 류인목외4명	○주한미군 통수권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신효순, 심미선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 요구. ○미 2사단 측은 두 여중생의 유족, 사회단체 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과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진상을 밝힐 것.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의 공평한 재판을 위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재발방지, 유족에게 신속한 배상,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 등을 신속히 실행 할 것. ○조치사항 • 주한미국대사관, 외교통상부에 결의문 이송.	2002.9.14 (제8차) 원안가결

4. 제56회임시회 : 2002. 10. 15 ~ 10. 25(11일간)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10</td><td>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중개정조
례안</td><td>2002.10. 7
구 청 장</td><td>○제안이유
• 세분화 되어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가격을 공동주택봉투가격으로 단일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 가격 단일화(3종→1종)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용량별</th><th rowspan="2">용도별</th><th colspan="2">쓰레기봉투 가격</th><th rowspan="2">비고</th></tr>
<tr><th>현행</th><th>개정</th></tr>
<tr><td rowspan="3">5ℓ</td><td>단독주택</td><td>80</td><td rowspan="3">100</td><td rowspan="3"></td></tr>
<tr><td>공동주택</td><td>80</td></tr>
<tr><td>사 업 장</td><td></td></tr>
<tr><td rowspan="3">10ℓ</td><td>단독주택</td><td>140</td><td rowspan="3">200</td><td rowspan="3"></td></tr>
<tr><td>공동주택</td><td>200</td></tr>
<tr><td>사 업 장</td><td>210</td></tr>
<tr><td rowspan="3">20ℓ</td><td>단독주택</td><td>280</td><td rowspan="3">400</td><td rowspan="3"></td></tr>
<tr><td>공동주택</td><td>400</td></tr>
<tr><td>사 업 장</td><td>420</td></tr>
<tr><td rowspan="3">50ℓ</td><td>단독주택</td><td>670</td><td rowspan="3">1,000</td><td rowspan="3"></td></tr>
<tr><td>공동주택</td><td>990</td></tr>
<tr><td>사 업 장</td><td>1,030</td></tr>
<tr><td rowspan="3">100ℓ</td><td>단독주택</td><td>1,330</td><td rowspan="3">2,000</td><td rowspan="3"></td></tr>
<tr><td>공동주택</td><td>1,980</td></tr>
<tr><td>사 업 장</td><td>2,040</td></tr>
</table></td><td>2002.10.16
(제2차)
부 결</td></tr>
</tabl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1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002.10.7 구 청 장	○조례제정의 목적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옥외광고물등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수정내용 ○안 제3조 ②항 중 "다음 각호의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안 제3조 ③항 중 1호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로 한다.	2002.10.16 (제2차) 수정가결
12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2.10.11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61,088,542천원 • 일반회계 : 60,330,460천원 (증 15,125,091천원) • 특별회계 : 758,082천원 (증 29,013천원) • 심의기간 : 2002.10.17 ~ 10.25(9일간) ○삭감내역 • 세 입 : • 세 출 : 7건 168,500천원 (일반 168,500천원) ○확정예산액 : 61,088,542천원 • 일반회계 : 60,330,460천원 • 특별회계 : 758,082천원	2002.10.25 (제10차) 수정가결
1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002.10.11 구 청 장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 효문운동장 조성사업 계획변경 - 승인 - 당 초 : 연안동 산101-1번지일원 - 변 경 : 연암동 322-7번지일원 •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북구 양정동 776-21번지일원 - - - - - - - 승인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 북구 중산동829번지 - - - - - - - - 불승인	2002.10.16 (제2차)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4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 또는폐기촉구결의안	2002.10.24 류인목외3명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노동자와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 관련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 징계 등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입법안 철회 및 조속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함. ○국회는 초헌법적으로 외국 자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경제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조치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결의문 이송.	2002.10.25 (제10차) 원안가결

5. 제57회임시회 : 2002. 11. 12 ~ 11. 14(3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결의건	2002.11.14 의장제의	○감사기간 : 2002.11.26 ~ 12.2(7일간) ○감사주체 : 본회의	2002.11.14 (제3차) 원안가결

6. 제58회제2차정례회 : 2002. 11. 25 ~ 12. 20(26일간)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td><td>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td><td>2002.11.25
구 청 장</td><td>(단위 :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합계
(2001
~
2005)</th><th colspan="2">기준년도</th><th>예산편성
지준제시</th><th colspan="2">발전계획</th><th rowspan="2">비
고</th></tr><tr><th>2001</th><th>2002</th><th>2003</th><th>2004</th><th>2005</th></tr><tr><td>계</td><td>310,288</td><td>54,717</td><td>61,088</td><td>62,921</td><td>64,809</td><td>66,753</td><td></td></tr><tr><td>일반
회계</td><td>303,885</td><td>51,487</td><td>60,330</td><td>62,140</td><td>64,004</td><td>65,924</td><td></td></tr><tr><td>특별
회계</td><td>6,403</td><td>3,230</td><td>758</td><td>781</td><td>805</td><td>829</td><td></td></tr></table></td><td></td></tr>
<tr><td>15</td><td>2002년도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td><td>2002.11.8
구 청 장</td><td>○『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소재지 : 북구 중산동 829번지
• 규 모
- 부지 : 3,170㎡(959평)
- 건물 : 지상2층 1,260㎡(381평)
• 방 식 : 퇴비화(지렁이 사육)</td><td>2002.12.3
(제2차)
원안가결
(승인)</td></tr>
<tr><td>16</td><td>200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td><td>2002.11.20
구 청 장</td><td>○송정동사무소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변경의결
• 위 치 : 북구 화봉동 555번지
• 건축규모 변경
- 당 초 : 728㎡(220평)
- 변 경 : 1,091㎡(330평)
• 변경사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공간 추가확보</td><td>2002.12.3
(제2차)
원안가결
(승인)</td></tr>
<tr><td>17</td><td>2003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td><td>2002.11.20
구 청 장</td><td>○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양정동사무소신축
- 위 치 : 북구 양정동 488번지(현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규 모 : 부지 1,650㎡(500평), 건물 1,091㎡(3층 330평)</td><td>2002.12.3
(제2차)
원안가결
(승인)</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18</td><td>제3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td><td>2002.11.20
구 청 장</td><td>○계획기간 : 2003 ~ 2006(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td><td>2002.12.3
(제2차)
원안가결</td></tr>
<tr><td>19</td><td>2003년도일
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td><td>2002.11.20
구 청 장</td><td>○요구예산액 : 60,471,090천원
•일반회계 : 59,840,479천원
•특별회계 : 630,611천원
○본회의심의내역
•심의기간 : 2002.12.4~12.17(14일간)
•삭감내역 : 세입 감3,898,627천원
세출 감4,921,409천원
○확정예산액 : 56,572,463천원
•일반회계 : 55,941,852천원
•특별회계 : 630,611천원</td><td>2002.12.20
(제16차)
수정가결</td></tr>
<tr><td>20</td><td>2003년도기금
운용계획의결
의건</td><td>2002.11.20
구 청 장</td><td>○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전심사(원안가결)
•심사기간 : 2002.12.4~12.17(14일간)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table><tr><th>기 금 명</th><th>금 액</th></tr><tr><td>계</td><td>539,975</td></tr><tr><td>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td><td>77,775</td></tr><tr><td>노인복지기금</td><td>113,726</td></tr><tr><td>식품진흥기금</td><td>55,788</td></tr><tr><td>재해대책기금</td><td>213,943</td></tr><tr><td>재난관리기금</td><td>78,743</td></tr></table></td><td>2002.12.20
(제16차)
원안가결</td></tr>
</tabl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1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2002.11.27 구 청 장	○전자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를 면제하는 단서 규정신설	2002.12.18 (제15차) 원안가결
22	울산광역시북구 구보조례안	2002.11.27 구 청 장	○구보 발행주기 및 호외 발행 ○구보 게재사항 ○구보 게재 자료수집 및 원고료 지급방안 ○구보발행 명예기자 위촉 및 해촉 등	2002.12.18 (제15차) 원안가결
23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안	2002.11.27 구 청 장	○위원회 기능은 문화정책의 입안, 문화예술 시책수립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등을 구청장이 위촉함. ○구청장은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음. ○위원이 회의출석이나 직무상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2002.12.18 (제15차) 원안가결
24	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11.27 구 청 장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	2002.12.18 (제15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5</td><td>울산광역시북구
노사정협의회설
치및운영조례안</td><td>2002.11.27
구 청 장</td><td>○노사정의 책무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노사정협의회의 기능
•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td><td>2002.12.18
(제15차)
심의보류</td></tr>
<tr><td>26</td><td>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중개정조
례안</td><td>2002.12.4
구 청 장</td><td>○쓰레기봉투 가격 단일화(3종→1종)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용량별</th><th rowspan="2">용도별</th><th colspan="2">쓰레기봉투 가 격</th><th rowspan="2">비 고
(종전안)</th></tr>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rowspan="3">5ℓ</td><td>단독주택</td><td>80</td><td rowspan="3">120</td><td rowspan="3">100</td></tr>
<tr><td>공동주택</td><td>80</td></tr>
<tr><td>사 업 장</td><td></td></tr>
<tr><td rowspan="3">10ℓ</td><td>단독주택</td><td>140</td><td rowspan="3">250</td><td rowspan="3">200</td></tr>
<tr><td>공동주택</td><td>200</td></tr>
<tr><td>사 업 장</td><td>210</td></tr>
<tr><td rowspan="3">20ℓ</td><td>단독주택</td><td>280</td><td rowspan="3">500</td><td rowspan="3">400</td></tr>
<tr><td>공동주택</td><td>400</td></tr>
<tr><td>사 업 장</td><td>420</td></tr>
<tr><td rowspan="3">50ℓ</td><td>단독주택</td><td>670</td><td rowspan="3">1,250</td><td rowspan="3">1,000</td></tr>
<tr><td>공동주택</td><td>990</td></tr>
<tr><td>사 업 장</td><td>1,030</td></tr>
<tr><td rowspan="3">100ℓ</td><td>단독주택</td><td>1,330</td><td rowspan="3">2,500</td><td rowspan="3">2,000</td></tr>
<tr><td>공동주택</td><td>1,980</td></tr>
<tr><td>사 업 장</td><td>2,040</td></tr>
</table></td><td>2002.12.18
(제15차)
원안가결</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td><td>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td><td>2002.12.20
의장제의</td><td>○감사기간 : 2002.11.26~12.2(7일간)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table><tr><th>감사대상부서</th><th>감사자료제출건수</th><th>증인출석인원</th><th>참고인출석인원</th><th>주요감사실시건수</th></tr><tr><td>계</td><td>214</td><td>31</td><td>1</td><td>214</td></tr></table>○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table><tr><th>감사대상부서</th><th>계</th><th>모범사례</th><th>시정요구사항</th><th>건의사항</th></tr><tr><td>계</td><td>41</td><td>1</td><td>17</td><td>23</td></tr></table></td><td>2002.12.20
(제16차)
원안가결</td></tr>
</table>

7. 제59회임시회 : 2002. 12. 21 ~ 12. 27(7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7	200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02.12.13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64,555,521천원 • 일반회계 : 63,797,439천원 (증70,804천원) • 특별회계 : 758,082천원 • 심의기간 : 2002.12.23 ~ 12.26(4일간) ○삭감내역 • 세 입 : • 세 출 : 1건 3,000천원(일반 3,000천원) ○확정예산액 : 64,555,521천원 • 일반회계 : 63,797,439천원 • 특별회계 : 758,082천원	2002.12.26 (제4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8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2.16 구 청 장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 연장 • 당 초 : 2002년 12월 31일까지 • 변 경 : 2004년 6월 30일까지	2002.12.27 (제5차) 원안가결
29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2002.12.16 구 청 장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 연장 • 당 초 : 2002년 12월 31일까지 • 변 경 : 2004년 6월 30일까지	2002.12.27 (제5차) 원안가결

8. 제60회임시회 : 2003. 2. 12 ~ 2. 20(9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3.2.8 구 청 장	○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3.2.12 ~ 2.19 보 고
30	울산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2003.2.6 구 청 장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업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관직 지정 ○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융자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수정내용 ○안 제1조 중 "규정에 의거" → "규정에 의한" 으로 한다. • 안 제2조 제5호는 삭제한다 • 안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2003.2.20 (제8차)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31	울산광역시북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 안	2003.2.6 구 청 장	○사업 운영사항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업 •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등 ○운영방법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등 ○관리감독 • 위탁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월 보고를 받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수정내용 ○안 제2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 제2조(위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 단서 삭제	2003.2.20 (제8차) 수정가결
32	울산광역시북구 청및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2003.2.6 구 청 장	○소재지 변경 • 북구 상안동 371-6번지 ⇒ 북구 상안동 380-8번지	2003.2.20 (제8차) 원안가결

9. 제61회임시회 : 2003. 3. 31 ~ 4. 3(4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처수)
34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2003.3.19 구 청 장	○인터넷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며, 개선을 위해 연1회 이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고 이용자의 게시자료 중 불건전한 내용은 삭제함.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함.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함.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함.	2003.4.1 (제2차) 원안가결
35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3.19 구 청 장	○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 •보험가입금액 : 최저 1억원 ○보험료의 지급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 발생시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변상책임액등의 보험금액 초과시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2003.4.1 (제2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36</td><td>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개정조
례안</td><td>2003.3.19
구 청 장</td><td>○체육시설 사용허가심의위원회설치
○체육시설 개방제한
○체육시설 개방시간
• 하절기(3월 ~ 10월) : 06:00~18:00
• 동절기(11월 ~ 2월) : 07:00~17:00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시간산정 등
•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table>
<tr><th colspan="2">시 설 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사 용 료</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시설명</th><th>세부기준</th><th>평 일</th><th>토·일
공휴일</th></tr>
<tr><td rowspan="5">농소
운동장</td><td colspan="2">인조잔디
축구장</td><td>1시간</td><td>15,000</td><td>22,500</td><td rowspan="5">육상
트랙
사용은
이용
권고</td></tr>
<tr><td colspan="2">마사
축구장</td><td>〃</td><td>5,000</td><td>7,500</td></tr>
<tr><td rowspan="2">육상
트랙</td><td>전용
사용</td><td>〃</td><td>10,000</td><td>15,000</td></tr>
<tr><td>연습
사용</td><td>〃</td><td>1인당
200</td><td>1인당
300</td></tr>
<tr><td colspan="2">전가사용</td><td>〃</td><td colspan="2">1,000</td></tr>
</table>
○체육시설 협의사용허가
※수정내용
○안 제11조 ①항 1중 "취소·연기할 때에는" 를 → "취소할 때에는" 으로 한다.
○안 제15조 ①항 중 "그에 상당한" 을 → "이에 상당한" 으로 한다.</td><td>2003.4.1
(제2차)
수정가결</td></tr>
</tabl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37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3.19 구 청 장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매년 7월1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변경	2003.4.2 (제3차) 원안가결
38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3.19 구 청 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자구 수정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율 세분화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를 →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로 한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법령명칭 변경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 2002.12.31 → 2005.12.31	2003.4.2 (제3차) 원안가결
39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3.19 구 청 장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 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등	2003.4.3 (제4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40</td><td>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td><td>2003.3.24
구 청 장</td><td>○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할 재산을 당해 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율 연 5%에서 연 4%로 인하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율 연 8%에서 연 6%로 인하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에게 매각할 때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율 연 8%에서 6%로 인하 등</td><td>2003.4.2
(제3차)
원안가결</td></tr>
<tr><td>41</td><td>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td><td>2003.3.25
구 청 장</td><td>○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결
- 취득재산 : 부지 1,964㎡(594평), 건물 495㎡(150평), 사업비 500백만원
- 위 치 : 북구 달천동 267번지 (달천농공단지 인근)</td><td>2003.4.3
(제4차)
원안가결
(승인)</td></tr>
<tr><td>42</td><td>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td><td>2003.3.25
구 청 장</td><td>○ 200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식품진흥기금 경상사업 예산 편성·운용
○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2002년도말
현재액(A)</th><th colspan="4">2003운용계획</th><th rowspan="2">2003년
도말
현재액
(A+B)</th><th rowspan="2">비
고</th></tr>
<tr><th colspan="2">수 입</th><th colspan="2">지 출</th><th>증감
(B)</th></tr>
<tr><th>당초</th><th>변경</th><th>당초</th><th>변경</th></tr>
<tr><td>41,983</td><td>13,805</td><td>33,805</td><td></td><td>20,000</td><td>13,805</td><td>55,788</td><td></td></tr>
</table></td><td>2003.4.3
(제4차)
원안가결
(승인)</td></tr>
</tabl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자(제출기관)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43	이라크전쟁중단 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안	2003.3.28 하인규외2명	○미국의 이라크 침략지원,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 요구 ○미국의 이라크 전쟁 복구비용 요구 단호히 거부 ○국회의 한국군 파병반대 입장 표명 요구 ○조치사항 • 청와대, 국회, 국방부 결의문 이송.	2003.3.31 (제1차) 원안가결

10. 제63회임시회 : 2003. 6. 16 ~ 6. 25(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자(제출기관)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45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5.20 구 청 장	○보건소 위치변경 • 당 초 : 북구 화봉동 449-1번지 • 변 경 : 북구 연암동 1082번지	2003. 6.17 (제2차) 원안가결
46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2003.6.5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 당초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375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36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12명) • 변경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24명이며,집행기관의 정원은 41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2003.6.17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47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및운영조례안	2003.6.5 구 청 장	○비영리 법인·단체에 문화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북구문화정책위원회에 운영자문 및 운영 실적 보고 ○문화회관운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회원제 운영 ○08:00~22:00까지 개방, 사용자 사용료 부담 등 ※수정내용 ○안 제3조 제①항 중 "문화회관"을 →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안 제3조 제②항 중 "문화회관"을 → "문화예술회관" 으로 한다.	2003.6.17 (제2차) 수정가결
48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6. 5 구 청 장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 변경 ○조례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량의 무사업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계약·행정 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 토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함.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단독주택, 일반음식업소 분리배출에 따른 처리수수료 징수 방법 변경	2003. 6.17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4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2003.6.5 구 청 장	○「북구 어린이 공공도서관」 신축 부지 •위치 : 중산동 570-2, 중산동 568-6 •규모 : 부지 900㎡(272평), 사업비 110,000천원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신축 •위치 : 시례동292-4번지 •규모 : 부지 320㎡(임야 14,437㎡중 320㎡ - 사유지 무상임대), 지상1층 180㎡, 사업비 150,000천원 ○「신기경로당」 신축 •위치 : 매곡동 596-4번지 - 현 신기경로당(향후 기부채납 계획) •규모 : 부지 264㎡, 지상1층 150㎡, 사업비 156,000천원 ○「상연암경로당」 신축 •위치 : 연암동 209-64번지(임야 561㎡중 232㎡) •규모 : 부지 232㎡, 지상1층 100㎡, 사업비 144,000천원 ○「곡리경로당」 신축 •위치 : 송정동 256번지 •규모 : 부지 2,050㎡, 지상1층 100㎡, 사업비 148,000천원	2003.6.17 (제2차) 원안가결 (승인)
50	2003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03. 6. 5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66,864,302천원 - 일반회계 : 66,064,184천원 (증 10,122,332천원) - 특별회계 : 800,118천원 (증 169,507천원) - 심의기간 : 2003. 6.18 ~6.25(8일간) ○삭감내역 - 세 입 : 2건 14,655천원 - 세 출 : 42건 772,889천원 (일반 41건 772,325천원, 특별 1건 564천원) ○확정예산액 : 66,849,647천원 - 일반회계 : 66,049,529천원 - 특별회계 : 800,118천원	2003. 6.25 (제9차) 수정가결

11. 제64회제1차정례회 : 2003. 7. 7 ~ 7. 16 (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52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003.6.27 구 청 장	○시설정의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으로 정의 ○이용대상 : 북구 거주자로 하며 종류에 따라 정함 ○위탁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가능 ○사 용 료 : 강당, 식당 2시간 기준 30,000원 ○운 영 비 : 보조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운영	2003.7.8 (제2차) 원안가결
5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6.27 구 청 장	○200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 지출사업건수 : 공직선거경비 추가지급 외2건 - 지출결정액 : 222,749,000원 - 지 출 액 : 180,180,310원 - 잔 액 : 42,568,690원	2003.7.16 (제9차) 승인가결
5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6.27 구 청 장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75,501,048,560원 - 세출결산액 : 49,528,367,320원 - 세계잉여금 : 25,972,681,240원	2003.7.16 (제9차) 승인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55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동에 따른 결의안	2003.7.3 김대영외2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진(입)학의 3개영역을 폐기, 분리하여 시행토록 촉구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과 학생 인권 옹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행토록 촉구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교무학사 업무 추진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일선 학교의 NEIS 시행 강요를 즉각 중지 촉구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시스템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모든 학교의 NEIS 강행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NEIS이외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실시 촉구 ○조치사항 •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의문 이송	2003.7.7 (제1차) 원안가결

12. 제65회임시회 : 2003. 7. 23~7. 23(1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57	울산광역시북구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03.7.15 류재건외2명	○제안이유 • 북구 관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 관내 학교의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하고 • 학생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함	2003.7.23 (제1차) 심의보류 2004.2.13 (제2차) 부 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조성 ①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7년으로 함.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1.학교(초등학교)학생 급식비 2.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③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패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13. 제66회임시회 : 2003. 9. 25 ~ 9. 27 (3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58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7.28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가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이 2003. 7. 1부터 인상됨에 따라 86년도 신설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을 국가공무원의 인상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가·지방공무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기진작·처우 개선으로 이직의 방지 및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관련부분을 개정 •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 •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월 30만원 인상	2003. 9.26 (제2차) 원안가결
59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 7.28 구 청 장	○ 제안이유 • 염포동사무소 부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가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일반 지번으로 등록전환이 되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재지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140-1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08-23번지	2003.9.27 (제3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60	울산광역시북구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2003. 7.28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 (대통령령 제19003호, 2003.6.23)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조례 폐지	2003.9.27 (제3차) 원안가결
61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2003. 9. 5 구 청 장	• 포상금 지급대상 -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포상금의 지급기준 -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 포상금 지급한도 -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60만원으로 규정함 • 포상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사·의결을 받아 지급하도록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03. 9.26 (제2차) 부 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62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2003. 9. 5 구 청 장	○인감증명법에 의거 인감증명발급시 1통 500원, 다른증명청 1통 800원, 변경신고 회당 500원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1통 300원, 인감변경신고 1건 200원을 삭제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의 요액 점용료 1천분의 1(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을 삭제 ○공연자 등록신청 및 공연자등록증사항 변경등록을 공연장의 등록 및 공연장의 변경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	2003. 9.26 (제2차) 원안가결

14. 제67회임시회 : 2003. 10. 9 ~ 10. 18 (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 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특별위원장 : 이재경의원 •간 사 : 김대영의원 •위 원 : 김재근의원	2003.10. 9 (제1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64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03. 10. 2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72,382,110천원 • 일반회계 : 71,528,098천원 (증 5,478,569천원) • 특별회계 : 854,012천원 (증 53,894천원) • 심의기간 : 2003.10.10 ~ 10.18(9일간) ○삭감내역 • 세 입 : 1건 20,000천원 • 세 출 : 8건 281,000천원 (일반 7건 261,000천원, 특별 1건 20,000천원) ○확정예산액 : 72,362,110천원 • 일반회계 : 71,528,098천원 • 특별회계 : 834,012천원	2003.10.18 (제9차) 수정가결
6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003. 10. 2 구 청 장	○제안이유 • 현재 건립중인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과 노인지회사무실, 자원봉사센터 등을 한곳에 건립 종합복지타운 조성 ○주요내용 • 북구복지관 신축 - 취득재산 : 부지 1,278㎡ 중 220㎡, 건물 660㎡(지상3층,경량철골조), 사업비 700백만원 - 위 치 : 북구 호계동262-2	2003.10.10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66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2003.10. 2 김재근외2명	○민선3기 울산광역시북구 출범이후 최근 언론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코자 함. ○음식물자원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및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2003.10. 9 (제1차) 원안가결
68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003.10.16 의장제의	○감사기간 : 2003.11.26 ~ 12. 2(7일간) ○감사주체 : 본회의	2003.10.16 (제7차) 원안가결
6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003.10. 4 구 청 장	○화정마을주민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 • 취득재산 : 부지 255㎡(77평), 건물 165㎡ (2층50평), 사업비 150백만원 (공사비 150) • 위 치 : 북구 중산동 740번지	2003.10.10 (제2차) 부 결
7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003. 10. 4 구 청 장	○당사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적정성 • 취득재산 : 부지 182㎡(55평), 건물 자상1층 100㎡기준(30평) 사업비 200백만원 (토지매입 83, 공사비 117) • 위 치 : 북구 당사동 504-1번지	2003.10.10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71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 3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재경위원장	○조사기간 : 2003. 11. 3 ~ 11.14(12일간) ○조사대상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조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재경 • 간 사 : 김대영 • 위 원 : 김재근 • 전문위원 : 이상찬 • 사무직원 : 정미옥 ○조사범위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 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2003.10.17 (제8차) 원안가결

15. 제68회제2차정례회 : 2003. 11. 25 ~ 12. 19(2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3.11.25 구 청 장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2003~2007)	과거년도	기준년도	미래년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388,123	72,706	74,429	77,289	80,284	83,415	
일반회계	383,300	71,889	73,574	76,335	79,234	82,268	
특별회계	4,823	817	855	954	1,050	1,147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72</td><td>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 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보고의건</td><td>2003.11.18
이재경위원장</td><td>○조사기간 : 2003. 11. 3 ~ 11.14(12일간)
○조사범위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 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현장조사
• 2003. 11. 3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응시자 면담
• 2003. 11. 4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 법인 2개소
• 2003. 11. 4 ~ 5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 신청업체 (주)해창(경기도 이천시)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시정요구 사항
<table><tr><th>조사대상 부서</th><th>지적사항</th><th>건의사항</th><th>시정요구 사항</th></tr><tr><td>계</td><td>21</td><td>3</td><td>14</td></tr></table></td><td>2003.11.25
(제1차)
원안가결
(승인)</td></tr>
<tr><td></td><td>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td><td>2003. 12. 3
의장제의</td><td>○위원장 : 하인규의원, 간사: 류인목의원
○위 원 :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윤임지, 류재건</td><td>2003.12.3
(제2차)
원안가결</td></tr>
<tr><td>73</td><td>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3.11.20
구 청 장</td><td>○제안이유
• 직원의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7조의 제목 "(당직 및 비상근무)"를 → "(당직 및 비상근무 등)"으로 한다.
• 제7조 제4항 신설
- 평일 및 공휴일 일·숙직 : 3만원
- 토요일 숙직 : 3만 5천원</td><td>2003.12.3
(제2차)
원안가결</td></tr>
</table>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74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11.20 구 청 장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 재등록 근거 명시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공인처럼 공보에 공고 의무화 ○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의무화 명시 ○개정된 사무관리 시행규칙에 의거 문서의 구성요소 및 기안문서의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신청에 따른 서식변경	2003.12.3 (제2차) 원안가결
75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	2003.11.20 구 청 장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운영안 마련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타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운영기준 정비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도시계획조례로 지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도시계획법과의 통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지정	2003.12.3 (제2차) 원안가결
76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11.20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67,587,091천원 • 일반회계 : 66,753,288천원 • 특별회계 : 833,803천원 ○본회의심의내역 • 심의기간 : 2003.12.4~12.17(14일간) • 삭감내역 : 세입 감1,010,856천원 세출 감2,533,359천원 ○확정예산액 : 66,576,235천원 • 일반회계 : 65,742,432천원 • 특별회계 : 833,803천원	제69회임시회 2003.12.20 (제1차본회의) 수정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77</td><td>2004년도기금
운용계획의결
의건</td><td>2003.11.20
구 청 장</td><td>○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전심사(원안가결)
•심사기간 : 2003.12.4~12.17(14일간)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table><tr><th>기 금 명</th><th>금 액</th></tr><tr><td>계</td><td>653,992</td></tr><tr><td>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td><td>76,775</td></tr><tr><td>노인복지기금</td><td>115,038</td></tr><tr><td>식품진흥기금</td><td>102,032</td></tr><tr><td>재해대책기금</td><td>266,464</td></tr><tr><td>재난관리기금</td><td>93,683</td></tr></table></td><td>제69회임시회
2003.12.20
(제1차본회의)
원안가결</td></tr>
<tr><td>79</td><td>2004년도공유
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td><td>2003.11.21
구 청 장</td><td>○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 북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
- 북구천곡동 421-12번지 - 승인
• 상안체육공원 조성
- 북구 상안동 342번지일원 - 승인
• 국민체육센터 건립
- 북구 호계동 265-2번지 - 승인
•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
- 북구 연암동 1123-1번지일원 - 승인
• 이화경로당 신축 - 미정(건립부지는 중산동 주민들의 제공) - 수정승인
※ 부지미정 → 부지(중산동 679-4번지) 지정</td><td>2003.12.3
(제2차)
수정가결</td></tr>
</tabl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80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12.8 구 청 장	○제안이유 •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과세면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 연장 또는 조정함과 더불어 본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등	2003.12.18 (제3차) 원안가결
81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중개정조례안	2003.12.8 구 청 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률명 변경이 필요함	2003.12.18 (제3차) 원안가결
8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3.12.8 구 청 장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의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로 징수한다. ○증명발급수수료 등을 조정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범위와 대상을 확대 ▶치아홈메우기 수수료 신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적용) ▶제증명수수료 11종중 상향 7종, 삭제 1종, 미조정 3종 ※ 건강진단서외 5종 500 → 1,000원, 사체검안서 5,000원 → 10,000원, 성별및연령감정서 삭제 ▶기타이용수수료 신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 적용) ※ 건강검진비, 체력진단비, 체력단련실 이용료(30,000원/3개월)	2003.12.18 (제3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83</td><td>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3.12.11
구 청 장</td><td>○통장이 주민자율의사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통장으로 위촉하던 규정을 통장의 기본적인 자질검증을 거쳐 위촉 할 수 있도록 함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통장의 연임 규정을 제한함
○통장의 해촉사유와 임무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삭제와 행정환경 여건변화를 반영토록 함.</td><td>2003.12.18
(제3차)
원안가결</td></tr>
<tr><td></td><td>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td><td>2003.12.19
의장제의</td><td>○감사기간 : 2003.11.26~12.2(7일간)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table>
<tr><th>감사
대상
부서</th><th>감사
자료
제출
건수</th><th>증인
출석
인원</th><th>참고인
출 석
인 원</th><th>주요
감사
실시
건수</th></tr>
<tr><td>계</td><td>203</td><td>28</td><td>0</td><td>203</td></tr>
</table>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table>
<tr><th>감사대상
부 서</th><th>계</th><th>모범
사례</th><th>시정
요구
사항</th><th>건의
사항</th></tr>
<tr><td>계</td><td>52</td><td>1</td><td>32</td><td>19</td></tr>
</table></td><td>2003.12.19
(제4차)
원안가결</td></tr>
</table>

16. 제69회임시회 : 2003. 12. 20 ~ 12. 26 (7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84	2003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03. 12. 12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79,762,847천원 • 일반회계 : 78,954,396천원 (증 7,426,298천원) • 특별회계 : 808,451천원 (감 25,561천원) • 심의기간 : 2003.12.22 ~ 12.26(5일간) ○확정예산액 : 79,762,847천원 • 일반회계 : 78,954,396천원 • 특별회계 : 808,451천원	2003.12.26 (제5차) 원안가결

17. 제70회임시회 : 2004. 2. 12 ~ 2. 21 (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86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3.12.24 구 청 장	○제안이유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 공무원,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9인 - 기능 :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2004.2.13 (제2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 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 의무화 ※수정내용 • 안 제5조(지원범위)단서조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넘지 못한다"로 한다. • 안 제7조(신청 및 접수) 제①항 중 "규정에 따라"를 →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제③항 제2호 당연직 위원의 "지방의회의원"을 → "구의원" 으로 한다	
87	울산광역시북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2003.12.24 구 청 장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중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 우수농산물로의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료비 [식품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급식여건 개선사업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대상학생'의 지원·확대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2004.2.13 (제2차)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수정내용 • 안 제1조(목적)조항 중 "학교급식법 제3조·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은 →"학교급식법제3조·제8조제2항 및 제10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 제2조"으로, "울산광역시 북구비를" 은 → "울산광역시북구 예산을" 으로, "수급에 이바지함을" 은 → "공급으로, 농·수·축산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제4호 중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을 →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및 우리 농·수·축산물" 로 하고, "전통가공식품" 을 → "식품" 으로 한다. • 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①항 제1호 중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료비" 를 →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식재료 또는 식재료비" 로 한다. • 안 제12조(기능) 중 "①,②,③" 을 → "1, 2, 3" 으로 하고, "1, 2, 3, 4" 를 → "가, 나, 다, 라" 로 한다.	
88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1. 8 류인목외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004.2.13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로 조정하였음. • 의정활동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도 월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월11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지방의원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하였음.	
89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2004. 2. 3 김대영외2명	○제안이유 • 북구 관내 문화의 집은 모두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능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함에도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는 달리 근거 조례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그 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반면 문화의 집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용 주민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 있어 형평성 문제와 예산집행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2004 2.13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이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 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57	울산광역시북구 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03.7.15 류재건외2명	○ 제안이유 • 북구 관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 관내 학교의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하고 • 학생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을 설치. • 기금의 재원조성 ①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7년으로 함. •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1. 학교(초등학교)학생 급식비 2.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③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2003.7.23 (제1차) 심의보류 2004.2.13 (제2차) 부 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 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3.2.2 구 청 장	○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4.2.14 ~ 2.21 보 고

18. 제71회임시회 : 2004. 5. 10 ~ 5. 14 (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	2004. 5.10 구 청 장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2003~2007)	과거년도		기준년도	미래년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431,238	79,762	83,041	86,135	89,422	92,878	
일반회계	426,773	78,954	82,193	85,243	88,488	91,895	
특별회계	4,465	808	848	892	934	983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91</td><td>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4.4.30
구 청 장</td><td>○제안이유
• 문화정책의 입안과 문화예술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코자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는 규정을 전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td><td>2004. 5.11
(제2차)
원안가결</td></tr>
<tr><td>92</td><td>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td><td>2004.4.30
구 청 장</td><td>○청소년 체육활동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 마련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시설사용에 대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정내용
• 안 제3조(정의)제2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를 →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로 한다.
• 안 제9조(사용의 제한)제5호 중 "기타 단체생활이 부적절한자 등" 을 → "기타 구청장이 단체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자 등" 으로 한다.
• 청소년 체육활동장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단위: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사용자</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청소년</th><th>일반인</th></tr>
<tr><td rowspan="3">숙박시설</td><td>20인실</td><td>1일</td><td>25,000</td><td>35,000</td><td rowspan="4">1일은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를 말함</td></tr>
<tr><td>10인실</td><td>1일</td><td>15,000</td><td>20,000</td></tr>
<tr><td>가족실</td><td>1일</td><td colspan="2">15,000</td></tr>
<tr><td colspan="2">살내집회장</td><td>1일</td><td>20,000</td><td>30,000</td></tr>
<tr><td colspan="2">천연잔디 운동장</td><td>1회</td><td>20,000</td><td>30,000</td><td>체육경기시 1일1회 주2회 개방</td></tr>
</table></td><td>2004.5.11
(제2차)
수정가결</td></tr>
</tabl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93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4.30 구 청 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개정 ○시행규칙중 "제7조의2제2호"를 "제6조의2제2호"로 개정 ○ "영 제30조"를 "영 제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로 개정 ○매년 부과하고자 하는 지방세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와 납부절차로 분리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2004.5.11 (제2차) 원안가결
94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4.30 구 청 장	○제안이유 •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업에 대한 면허·허가·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17종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수산업법, 낚시어선업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의 수수료 조항이 신설, 개정,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유료제공 수수료 중 원가 및 수지미달 수수료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원가보상율 18퍼센트에서 44퍼센트로 인상하고, • 무료로 제공하던 관련사무를 유료화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산업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 삭제 또는 신설 - 신설 : 27종 • 삭제 : 7종	2004. 5.11 (제2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95</td><td>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4.4.30
구 청 장</td><td>○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자율을 현실성 있게 인하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활성화와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함.
• 이 율 : 연 5% → 3%,
• 연체이율 : 연 15% → 10%</td><td>2004.5.11
(제2차)
원안가결</td></tr>
<tr><td>96</td><td>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td><td>2004. 4.30
구 청 장</td><td>○피신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과태료를 부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감액 등</td><td>2004. 5.12
(제3차)
원안가결</td></tr>
<tr><td>97</td><td>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td><td>2004.4.30
구 청 장</td><td>○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식품진흥기금 경상사업 예산 편성 및 운용

○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2003
년도말
현재액
(A)</th><th colspan="4">2004운용계획</th><th rowspan="2">증감(B)</th><th rowspan="2">2004년
도말
현재액
(A+B)</th><th rowspan="2">비
고</th></tr>
<tr><th colspan="2">수 입</th><th colspan="2">지 출</th></tr>
<tr><th></th><th>당초</th><th>변경</th><th>당초</th><th>변경</th><th></th><th></th><th></th></tr>
<tr><td>80,529</td><td>21,503</td><td>41,503</td><td>0</td><td>20,000</td><td>21,503</td><td>102,032</td><td></td></tr>
</table></td><td>2004.5.12
(제3차)
원안가결
(승인)</td></tr>
</tabl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5.11 구 청 장	○대체에너지관련사업추진상황	2004.5.12 (제3차) 보 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5.11 구 청 장	○2004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현황	2004.5.13 (제4차) 보 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5.11 구 청 장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	2004.5.13 (제4차) 보 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5.11 구 청 장	○효문운동장조성사업추진상황	2004.5.13 (제4차) 보 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5.11 구 청 장	○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추진상황	2004.5.13 (제4차) 보 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5.11 구 청 장	○강동해안가꾸기사업추진상황	2004.5.14 (제5차) 보 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4.5.11 구 청 장	○폐타이어소각열이용하우스난방시설 보조금추진상황	2004.5.14 (제5차) 보 고

19. 제72회임시회 : 2004. 6. 10 ~ 6. 19 (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99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2004.5.31 구 청 장	○제안이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조직의 통·폐합과 신설 등 조직을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도시건설국】** • 당 초 가. 재난·재해관리 및 치수업무에 관한 사무 나. 건축, 주택행정, 광고물 등 도시미관업무에 관한 사무 • 개 정 가. 재난업무를 총무국 분장사무로 조정 나.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에 관한 사무를 도시건설국 분장사무로 조정 **【경제사회국】** • 개정 및 신설 가. 도시건설국 도시미관 업무를 경제사회국 분장사무로 조정 나. 120즉시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사무를 경제사회국 분장 사무로 신설	2004.6.11 (제2차) 심의보류
100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5.31 구 청 장	○제안이유 •중앙사무가 지방에 이양됨으로 인한 부족인력 보충 및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일부 조직의 통·폐합과 신설,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적정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	2004. 6.11 (제2차) 수정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 당 초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24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1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 변 경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6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4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 집행기관 정원 중 36명** ※수정내용 • 안 제2조 중 "460명"을 → "442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448명"을 → "430명"으로 한다.	
101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2004.5.31 구 청 장	○제안이유 •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 2004년 북구지부와의 단체협상 합의결과에 따라 당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상근무 토요일 일직 추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구청 토요일 당직근무를 숙직에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직원의 당직근무여건을 개선 • 2개조 편성에 따른 토요일 당직근무 수당을 숙직 3만5천원에서 일·숙직 3만원으로 조정 시행하고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004.6.11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02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5.31 구 청 장	• 새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증 용지관련 부분 개정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법 조항 추가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련 조항 삭제	2004. 6.12 (제3차) 원안가결
103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2004. 5.31 구 청 장	○ 제안이유 •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창의성 함양을 위해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에 건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기증하는 기적의 도서관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회의, 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도서관내의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설의 사용 및 변상책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04.6.11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04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 5. 31 구 청 장	○ 요구예산액 : 75,997,793천원 • 일반회계 : 75,108,261천원 (증 9,365,829천원) • 특별회계 : 889,532천원 (증 55,729천원) • 심의기간 : 2004. 6.12 ~ 6.19(8일간) ○ 삭감내역 • 세 입 : 3건 1,210,856천원 • 세 출 : 7건 1,261,156천원 (일반 5건 1,238,156천원, 특별 2건 23,000천원) ○ 확정예산액 : 74,786,937천원 • 일반회계 : 73,897,405천원 • 특별회계 : 889,532천원	2004. 6.19 (제9차) 수정가결
10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004. 5.31 구 청 장	○ 「북구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부지 및 건물)취득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04-1번지 • 규 모 : 부지 1,036㎡(313.4평), 건물 2,644㎡(800평) • 사업비 : 4,600백만원정도(부지매입비 600, 건축비 4,000) ○ 「구립농소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59외 3필지(매곡590-1, 596-2, 596-5) • 규 모 : 부지 992㎡(300평), ※잔여부지 225㎡(68평) 포함, 건물 400㎡(2층 121평) • 사업비 : 700백만원(토지매입 198, 공사비 484, 기타18)	2004. 6.11 (제2차) 원안가결 (승인)

20. 제73회임시회 : 2004. 6. 30 ~ 6. 30 (1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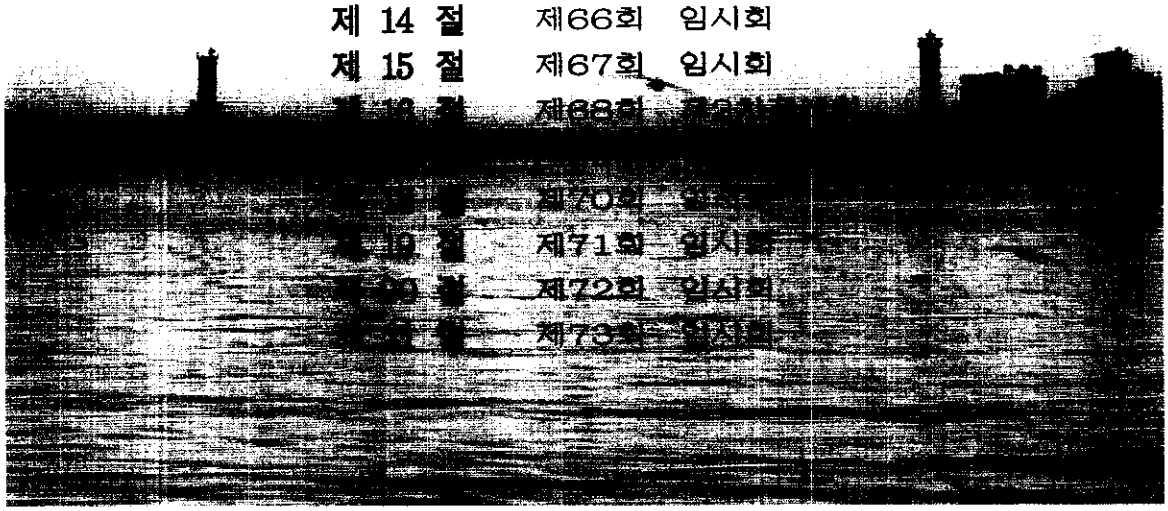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0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6.12 구 청 장	○토요일 휴무확대 시행을 위한 근거마련 ○핵가족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1일 → 3일)	2004. 6.30 (제1차) 원안가결
108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장춘시 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	2004. 6.22 구 청 장	○제안이유 • 중화인민공화국 장춘시 녹원구 손아명 구장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의자를 표명하여 교류협력 의향 합의 • 중화인민공화국 장춘시 녹원구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와 도농복합의 지역특성이 우리구와 비슷하여 상호 정책수립의 노하우와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 우리구에서도 울산-장춘시 10주년 기념행사와 맞추어 답방하여 자매결연 체결 ○주요내용 • 그간 추진경위 - 2003.10.31 : 중국 장춘시 녹원구에서 우리구와 자매(우호)도시 결연 제의 - 2003.11. 5 : 녹원구의 지역특성과 산업구조가 우리구와 유사성이 많고 상호교류시 공동의 이익이 기대되어 녹원구 측에 우호교류 의향 전달	2004. 6.30 (제1차) 원안가결 (승인)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2003.11.12 : 녹원구에서 우호교류 협의를 위해 손아명구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구 방문제의 - 2003.11.27 : 녹원구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2박3일의 일정으로 우리구의 현대자동차, 농소화훼단지, 경동도시가스를 방문하여, 많은 표명하고 향후 녹원구에 초청 제의 - 2003.11.28 : 양구의 우호교류 협력에 대한 상호이익이 기대되어 「우호교류 협력 의향서 체결」 - 2004. 1.15 : 녹원구에서 5~6월 우리구 답방 제의 • 향후계획 : 장춘시 녹원구 방문 및 자매결연체결 - 기 간 : 2004. 7. 1 ~ 7. 6 (5박6일) - 방 문 단 : 8명(집행부5, 의회3) - 주요내용 : 장춘시 녹원구와 자매결연체결(7.5) • 자매결연시 기대효과 - 자동차중심의 경제구조로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와의 교류추진 - 녹원구 지역개발 참여등 상호보완적인 경제 교류 기대 - 직원상호 파견 등 행정교류를 통한 자치단체 교류업무의 창구활용 - 각종문화행사 교류를 통한 민간차원 교류 추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의장선거의건	2004. 6.30 의장제의	○제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의 장 : 하인규의원 당선(1차투표)	2004. 6.30 선 거
	부의장선거의건	2004. 6.30 의장제의	○제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부의장 : 이재경의원 당선(1차투표)	2004. 6.30 선 거

제3장 제3대 개회상황

제 1 절 제53회 임시회
제 2 절 제54회 임시회
제 3 절 제55회 제1차정례회
제 4 절 제56회 임시회
제 5 절 제57회 임시회
제 6 절 제58회 제2차정례회
제 7 절 제59회 임시회
제 8 절 제60회 임시회
제 9 절 제61회 임시회
제 10 절 제62회 임시회
제 11 절 제63회 임시회
제 12 절 제64회 제1차정례회
제 13 절 제65회 임시회
제 14 절 제66회 임시회
제 15 절 제67회 임시회



강동 정자항 일출

제1절 제5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북구청장

나. 개회일시 : 2002. 7. 9 (화) 10:00

다. 회　　기 : 2002. 7. 9 (1일간)

라. 부의안건

○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 3대의회 개원식

2. 의사일정

제5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7.9(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7.9 (화) 10:00	1	1. 의장·부의장 선거 2. 제5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3. 제53회 울산광역시북구 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 원선임의건 4. 2002년제1차정례회집회 일자변경의건	본회의장
14:00		개원(개회)식	본회의장

3.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제1장 3대전반기의회원구성 참조

제2절 제54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집　　회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2. 7. 22 (월) 10:00

다. 회　　기 : 2002. 7. 22 ~ 7. 26 (5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대 북구의회를 개원한 이후 첫 집회인 제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우리 3대의원 대부분이 처음으로 구행정업무를 파악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3대 북구의회가 구민의 뜨거운 여망 속에 문을 열고, 힘찬 전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벅찬 가슴을 안고 시작하는 우리 의원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구가 가진 열악한 기반환경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의원 개개인을 선출해준 동민의 대표만은 아닙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을 뽑아준 동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북구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우리 국민이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거리에서나 운동장에서 다함께 한 목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이제 우리의원들도 13만 구민 모두의 중지를 하나로 결집하여, 북구발전의 원동으로 삼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3대 의회가 개원시작부터 의장단 구성문제로 인해 좋지 못한 인상을 내보인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우려의 시선과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구민으로부터 성원과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요즘 기상청에 따르면 계속되는 장마비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재난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남해안 일대의 낚시꾼들처럼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 등 재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7.22~7.26(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7.22 (월) 10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기획감사실 - 보건소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7.24 (수) 10 : 0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2002.7.25 (목) 10 : 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 허가과)	
2002.7.26 (금) 10 : 00	5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의회사무과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7. 25 (제54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1단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함
- ○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 ○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확대 등
- ○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 ○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 ○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저렴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조례안이 작성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자율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개정안과 같음) **(삭제)**

제3절 제55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2. 9. 6 (금) 10:00

다. 회　　기 : 2002. 9. 6 ~ 9. 14 (9일간)

라. 부의안건

- ○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재경의원 외 3명 발의)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오늘 제3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두 번째 회의인 2002년도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우리 3대 의회 의원들은 지금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다져온 자치기반을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꽃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점점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크게 다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다운 대표자로서 높은 덕망과 인격을 쌓아 나감은 물론 특히 개방화·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자치행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는 우리 의원 8명 모두가 지역정보센터에서 정보화교육 수강을 통해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북구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젊은 의원답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월초부터 연일 내린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에 걸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북구는 크고 작은 피해는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처가 그리 심각하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

리 지역에서도 농작물 중 낙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피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작물의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았다시피 8월 말과 9월에 올라오는 태풍이 우리 지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시작된 울산광역시 종합감사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례회와 중복되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임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2.9.6~9.14(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9.6 (금) 10 : 00		개 회 식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 직 후	1	1.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기획감사실(관련부서)	
2002.9.7 (토) 10 : 00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기획감사실소관 심의	
2002.9.8 (일)		(일 요 일)	
2002.9.9 (월) 10 : 00	3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총무국소관 심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2002.9.10 (화) 10 : 00	4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총무국소관 심의 (지방세과,민원봉사과)	
2002.9.11 (수) 10 : 00	5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경제사회국소관 심의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2.9.12 (목) 10 : 00	6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도시건설국소관 심의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 보건소소관 심의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9.13 (금) 10 : 00	7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환경위생과)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2.9.14 (토) 10 : 00	6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의회사무과소관 심의 ○ 종합의결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종합의결	원안승인 원안승인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8.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9. 13 (제55회정례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1. 9. 29부터 개정된 수도법의 시행으로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되어 통보됨에 따라,

○ 우리구의 정원조정을 통하여 원할한 업무추진 도모와 구민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원조정 : 증 1명

- 정원의 총수 : 374명 → 375명(증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362명 → 363명(증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변동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1항

○ 동규정 제21조에는 불가피한 증원요인 발생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구는 기획12200-50739(2001. 11. 7)호로 정원승인을 얻어 우리 구의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여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 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9. 7 (이재경의원 외 3명)

○ 심의일자 : 2002. 9. 13 (제55회 제1차정례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2002. 1. 4, 대통령령 제17484호)의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 현행 41,000원 → 조정 46,000원

○ 의원의 숙박비 : 현행 22,000원 → 조정 25,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 2002. 1. 4일 공무원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으로 이 조정비에 따라 숙박비 금액을 인상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제5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2. 10. 15 (화) 11:00

다. 회　　기 : 2002. 10. 15 ~ 10. 25 (11일간)

라. 부의 안건

- ○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점점 더해 가는 이 때에 오늘 우리는 제5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11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심의일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편성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배치 되었는지, 정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기 민선 구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주먹구구식이나 행정 편의적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동료의원들께서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현재는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테러 등의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증시 상황을 비롯하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은 지난 IMF체제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의 정치 현실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돌보아야 할 민생은 뒤로 미룬 채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연초부터 우리 농민들이 쏟은 땀과 정성이 이제 풍성한 결실로 이어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예년보다 작황이 좋아 풍년 농사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을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

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0.15~10.25(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0. 15 (화) 11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3.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2.10.16 (수) 10 : 00	2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허가과〉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총무과〉 4.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세입 ○총무국(지방세과, 관련부서) ▶세출 ○기획감사실	부 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0.17 (목) 10 : 00	3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2.10.18 (금) 10 : 00	4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2002.10.19 (토) 10 : 00	5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허가과)	
2002.10.20 (일)		(일 요 일)	
2002.10.21 (월) 10 : 00	6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2002.10.22 (화) 14 : 00	7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2002.10.23 (수) 10 : 00	8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일 시	처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0.24 (목) 10 : 00	9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2002.10.25 (금) 10 : 00	10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2. 10. 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0. 16 (제56회임시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이 가정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사업장용봉투 가격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공동주택봉투가격으로 단일화하여 주민편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은 세분화하여 쓰레기처리 시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쓰레기봉투 가격 단일화(3종 → 1종)

○ 쓰레기봉투 단일화 가격

○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세분화(36종 → 59종 : 23종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 구 내 농소, 강동지역의 공동주택은 가정용 단독주택의 봉투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타 동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및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

가 있어 단일화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현행 우리 구의 쓰레기 봉투자립도가 38.2%로 구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환경부 권고안은 쓰레기처리 수수료 자립도를 2003년까지 100%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일정 부분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일화함에 따라 단독주택은 세대당월 평균 520원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봉투 가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의안번호 제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0.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0. 16 (제5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효문운동장 조성사업」, 「양정생활체육공원 신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설치」에 따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① 효문운동장 조성 사업

구 분 / 위 치	변 경 전 연암동 산 101-1번지 일원	변 경 후 연암동 322-7번지 일원	비 고
조성면적	22,333㎡ 정도	18,400㎡ 정도	
사 업 비	1,800백만원 (국비 900, 시비 900)	좌 동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내용	축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관람석, 주차장, 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관람석,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사업기간	2002. 1 ~ 2003. 12	좌 동	

② 양정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2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26,013㎡(23필지) - 편입부지 토지조서 별첨

· 사 업 비 : 2,7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850, 구비 850)

· 사업내용 :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관람석, 화장실, 주민휴식 공간 등

· 사업기간 : 2002년 11월 ~ 2004년 12월

③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29번지

· 규 모

- 부 지 : 3,170㎡(959평)

- 건 물 : 지상2층 1,260㎡(381평)

- 사 업 비 : 2,770,000천원(토지 38,040천원, 건물 2,731,960천원)

- 사업기간 : 2002년 10월 ~ 2003년 9월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효문운동장조성사업(변경)과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가결

○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부결

제5절 제5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2. 11. 12 (화) 14:00

다. 회　　기 : 2002. 11. 12 ~ 11. 14 (3일간)

라. 부의안건

-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의장 제의)
-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 제의)
- 현장확인의건 - 강동채석장(농림수산과)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오늘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 및 의결의건 등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집행부 견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의사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5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1.12~11.14(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1.12 (화) 14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후	1	1. 제5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제5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현장확인의건 - 강동채석장(농림수산과)	
2002.11.13 (수) 10 : 00	2	1.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원안가결
2002.11.14 (목) 10 : 30	3	1.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원안가결

제6절 제58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집　　회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2. 11. 25 (월) 10:30

다. 회　　기 : 2002. 11. 25 ~ 12. 20 (26일간)

라. 부의 안건

- ○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의장 제의)
- ○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지나고 쌀쌀한 초겨울이 다가선 이 때에 우리는 오

늘 2002년도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동안 집행부가 수행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의 한해 살림살이 등을 심사하는 회기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기초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연수계획에서 탈피하고, 실속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계획한 의원특별 연수를 지난주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우리 젊은 3대 북구의회가 추구하는 의정방향에 부합하는 매우 뜻깊은 일정으로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참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원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워온 많은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활용하여 이번 회기가 더욱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는 역량과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구민의 혈세로 짜여진 새해 예산안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 되도록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숱한 사연과 월드컵 대회 등으로 우리 모두를 들뜨게 했던 올 한해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연말에는 목표했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선거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26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가 더욱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2.11.25-12.20(2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차 수
2002.11.25 (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구청장) - 3.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2.11.26(화) ~ 2002.12.2(월) 〈7일간〉		행정사무감사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2.3 (화) 10:00	2	1.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2.12.4(수) ~ 2002.12.17(화) 〈14일간〉	3 ~ 14	1.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심의	소회의실
2002.12.18 (수) 10:00	15	1.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2.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심의보류 원안가결
2002.12.19 (목)		(제16대 대통령선거일)	
2002.12.20 (금) 15:00	16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수정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제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8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3 (제58회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부 지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중산동 829	답	3,170㎡ (959평)	38,040,000원	소유자 : 재정경제부

○ 건 물 : 지상 2층 1,260㎡(381평)

○ 총사업비 : 2,770,000천원(부지 38,040천원, 건물 2,731,96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처리시설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제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3 (제58회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송정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나 송정동사무소의 건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송정동사무소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변경

○ 주요재산 현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위 치	화봉동 555번지	좌 동		
규 모	부지 1,650㎡(500평)	부지 1,650㎡(500평)		
	건물 728㎡(220평)	건물 1,091㎡(330평)	증 363㎡(110평)	
사업비	1,000백만원	1,337백만원	증 337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현재 송정동사무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국도 7호선에 접하고 있어 교통흐름 방해 및 주민들의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공간 부족으로 동사무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의안번호 제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3 (제58회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양정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여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양정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다. 주요재산 현황

○ 부　　지

소재지번	면　적	지　목	재산가액	비　고
양정동 488번지	1,650㎡ (500평)	필지	500백만원	소유자 : 울산광역시

○ 건　　물 : 지상 3층 1,091㎡(330평)

○ 총사업비 : 1,727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현 양정동사무소가 건물이 노후되고 잦은 보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불편이 심각하고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상수도사업소북부사업소 이전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북부사업소 부지를 취득하여 동사무소를 신축코자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의안번호 제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3 (제58회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지역 현황과 전망

○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 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 본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2. 11. 5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18 (제58회정례회 제1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간 노사문제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노사정의 책무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 노사정협의회의 기능 :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대부분의 광역시는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노사문제가 구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노사정협의회 설치로 우리구의 산업평화 정착과 노사정협력 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조례라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18 (제58회정례회 제1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공동주택 봉투 가격으로 단일화하여 주민 편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은 세분화하여 쓰레기처리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쓰레기봉투 가격 단일화(3종 → 1종)

○ 쓰레기봉투 단일화 가격

○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세분화(36종 → 59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우리 구 내 농소, 강동지역의 공동주택은 가정용 단독주택의 봉투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타 동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및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단일화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현행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자립도가 38.2%로 구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환경부 권고안은 쓰레기처리 수수료 자립도를 2003년까지 100%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일정 부분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5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2. 12. 21 (토) 12:00

다. 회 기 : 2002. 12. 21 ~ 12. 27 (7일간)

라. 부의 안건

-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오년 올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어제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02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총 정리하는 결산추경입니다. 동

료의원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도 매년 시정요구 된 사항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다반사였으며, 내년도 당초예산 안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되풀이되는 요구사항이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지적한 내용을 즉시 보완·시정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광역시가 출범한 이후 벌써 민선 2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세웠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말에는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여

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5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2.21-12.27(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2.21 (토) 12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5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제5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2.12.22. (일)		(일 요 일)	
2002.12.23. (월) 10:00	2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세입-총무국(지방세과,관련부서) ◈세출-기획감사실, 총무국	
2002.12.24. (화) 10:00	3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2002.12.25. (수)		(공 휴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2.26 (목) 10:00	4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 종합의결	수정가결
2002.12.27 (금) 15:00	5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27 (제5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군정보화 기능 보강 방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기반조성과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 인력의 한시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②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 동규정 19조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 울산광역시 기획12200-867(2002. 12. 14)호로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12. 27 (제59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의 동기능전환을 안정적으로 정착·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 및 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①항에 의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 동규정 ③항에 의하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울산광역시 자치13101-2418(2002. 12. 4)호로 한시기구에 대한 기한연장 승인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6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2. 12 (수) 10:00

다. 회　　기 : 2003. 2. 12 ~ 2. 20 (9일간)

라. 부의안건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난 2월의 중순에서 우리는 2003년도 첫 회기인 제60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계미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구의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정보화시대 속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투명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대북 송금 의혹과 주한 미군 문제, 그리고 농업 현실을 외면한 추곡가 인하 논란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의원들은 국가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도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는 동시에 국가 발전의 원천이 되는 지방경쟁력 확보에 더욱 더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 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더욱 가지고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으며, 북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데도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구정 시책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구정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시책들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 지 소관 업무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들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 시회가 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2.12~2.20(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2.12 (수) 10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기획감사실	
2003.2.13 (목) 10:0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2003.2.14 (금) 10:0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도시건설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2003.2.15 (토) 10: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허가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2.16 (일)		(일 요 일)	
2003.2.17 (월) 10:0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ㅇ총무국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2003.2.18 (화) 10:00	6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ㅇ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2003.2.19 (수) 10:00	7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ㅇ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ㅇ 보건소 ㅇ 의회사무과	
2003.2.20 (목) 10:00	8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과) 3.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환경위생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30호)

1) 심의경과

ㅇ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2. 6

ㅇ 심의일자 : 2003. 2. 20 (제60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 기금의 사업 (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관직 지정 (안 제6조, 제8조)

○ 기금운용의 심의 (안 제10조)

○ 기금의 융자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안 제5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2000.7.27일자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바, 타 지자체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통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할 수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제정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목적)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 **(융자금의 대하)**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 **(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 - - - - - - - - - - - - -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지원 및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제2조 단서조항 삭제)

제9절 제6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3. 31 (월) 10:08

다. 회　　기 : 2003. 3. 31 ~ 4. 3 (4일간)

라. 부의안건

- 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문(하인규의원외 2인 발의)
- 구정에관한질문:효문공단도로개설에따른안전대책등에관하여 (류재건의원)
-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2003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는 제6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이라크 전쟁중단 및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온 세계의 시선과 관심이 이라크 전쟁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분 없는 이번 전쟁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한층 가해지고 있으며,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도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라크의 밤하늘에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과 대형 폭탄을 보면서 미국이 내세우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말은 세계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그 설득력이 다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강대국으로서의 이익과 욕심만을 내세운 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번 전쟁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화 될 수 없는 이번 전쟁에 파병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도 국내의 반전 여론과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하여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파병 동의안도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으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고, 구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으며, 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데 우리 의원 모두가 다함께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3.31~4.3(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3.31 (월) 10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이라크전쟁중단요구및한국군파병반대결의문(하인규의원외2인발의) 5. 구정에관한질문(류재건의원) ○효문공단도로개설에따른안전대책등에관하여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4.1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 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자치행정과) 3.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 조례안(문화공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3.4.2 (수) 10:00	3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3.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총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3.4.3 (목) 10:00	4	1.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건설과)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총무과) 3. 2003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결의건 (환경위생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1 (제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처리가 증가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인터넷 시스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고 이용자의 게시자료 중 불건전한 내용은 삭제함. (안 제5조 및 제6조)

○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함.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안에는 그동안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 예를 들면 '구청에 바란다', '여론광장' 등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올라오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이 민원은 안 제10조의 전자민원창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 본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기준·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과정을 제시하지 않아 현실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조례제정의 목적 중 예측가능성과 예산반영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례를 보면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마당(예, 인터넷 검색대회)을 열어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준 사례 등을 감안, 추후라도 안 제12조에 이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1 (제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17867호, 2002. 12. 31)에 의거 인감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험의 가입(안 제3조)

○ 보험료의 지급(안 제4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안 제5조)

○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신설조항에 따른 조례제정안임.

○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하자는 없어 보이며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한 근거를 관련법규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1 (제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사용 경합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허가결정 하

여 시설사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사용을 시간기준으로 허가함으로써 시설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체육시설 사용허가심의위원회설치

○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시간산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2. 2. 20. 조례 제260호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전면개정안을 낸 것임.

○ 특히, 별표의 체육시설사용료에 있어 농소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며, 종전보다 시간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사용료가 인상되었지만 타 지자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이용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 3.(생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5조(손해배상) ①- **이에 상당한** - - - - - - - - - - - - - -. ②(개정안과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2 (제6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2002.12.30. 법률 제6838호)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변경 (안제5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2002. 12. 30 법률 제 68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의 징수방법과 납기와 관련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종전 매년 7월10일까지로 되었던 것을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위해 매년 7월31일까지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치로 본 조례 제50조 제2항을 개정안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2 (제6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2002.12.30. 법률 제6838호)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변경하고 감면세율을 세분화하여 조세 민원을 최소화하고 감면기간을 연장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율 세분화 (안 제8조2항)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법령명칭변경 (안 제15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연장(안 제24조제1항)

○ 감면기간 : 2002.12.31→2005.12.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세법 제9조

○ 개정안은 내용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며, 특히 안 제24조 제1항의 감면기간연장은 그동안 이 조례가 있어도 실효성이 낮았지만 향후 지방분권운동과 연계된 지방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2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2 (제6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요율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을 재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요율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조정안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3 (제61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제3조, 제5조, 제7조에 의한 도로굴착공사 원상복구시 굴착지 복구 부담금의 징수 및 굴착공사의 시행,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안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현실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현실정과 조례사항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안 제3조 제2항 및 안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조례안대로 현실에 맞게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를 하도록 하고, 이행확보수단으로 보증보험과 예외적인 경우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한 것은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제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2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3 (제61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의결

취득재산 : 부지 1,964㎡(594평), 건물 495㎡(150평),

사업비 5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은 2002. 9월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지원

되어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통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며, 건립위치주변 및 해당동의 주민들의 시설설치에 대한 이해부족(기피시설 등)이 없도록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제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2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4. 3 (제61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3 식품진흥기금 경상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003 식품위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예산 편성·운용코자 함.

나. 주요골자

○ 200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식품진흥기금 경상사업 예산 편성·운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지출계획은 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사업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6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5. 19 (월) 11:00

다. 회　　기 : 2003. 5. 19 (1일간)

라. 부의안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오늘 제6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배경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임이 될 의원께서는 2002회계연도북구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20일 동안 검사하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이지만 1년 동안 살아온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검사하셔서 미비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활성화 시켜 추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개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5.19(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5.19 (월) 11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 직 후	1	1. 제6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제6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의건(의장제의)	

제11절 제6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6. 16 (월) 10:00.

다. 회　　기 : 2003. 6. 16 ~ 6. 25 (10일간)

라. 부의안건

- 2003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록의 푸름이 더욱 짙어 가는 6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산적한 구정업무 추진 등 맡은 바 업무에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

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MBC 느낌표 방송에서 우리 북구가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것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북구 살림을 절약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 자치구로 거듭나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로 출범한 지금의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내에 행정과 재정, 인사권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방마다 지방분권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겨 나가는데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동료 의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2.12~2.20(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6.16 (월) 10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3.6.17 (화) 13:00	2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문화공보과) 4.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미화과)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총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6.18 (수) 10:00	3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속) - 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 - 보건소	
2003.6.19 (목) 10:00	4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총무국 (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2003.6.20 (금) 10:00	5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2003.6.21 (토) 10:00	6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2003.6.22 (일)		일 요 일	
2003.6.23 (월) 10:00	7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허가과)	
2003.6.24 (화) 10:00	8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03.6.25 (수) 14:00	9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6. 17 (제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이 기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인력진단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필요정원을 재조정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 당초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375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36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12명)

• 변경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24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1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표준정원의 증가는 광역시이후 자치구중 가장 적은 인력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온 북구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다만, 인력증원이 그동안 우리사회가 추진해 온 작은 정부구현 및 구조조정 개혁 등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표준정원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철저한 인력진단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6. 17 (제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문화생활 향상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비영리 법인·단체에 문화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북구문화정책위원회에 운영자문 및 운영실적 보고(안 제5조)

○ 문화회관운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회원제 운영(안 제6조)

○ 자원봉사자 운영 및 실비 보상(안 제7조)

○ 문화예술강좌를 위하여 강사 위촉 및 초빙(안 제8조)

○ 08:00~22:00까지 개방, 사용자 사용료 부담(안 제12조 및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과 함께 제정되는 본 조례는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4) 심의결과 : 수정가결(수정안에 '문화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6. 17 (제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상의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분리배출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 변경

○ 조례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안 제9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계약·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 (안 제10조제4항,제5항)

○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단독주택, 일반음식업소 분리배출에 따른 처리수수료 징수 방법 변경(안 제14조1항,별표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래 폐기물관리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라는 용어를 '폐기물'로 변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제9조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근거 추가신설은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3항과 연계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 안 별표4의 단독주택의 납부필증사용에 의한 처리수수료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일반음식업소의 수수료산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6. 17 (제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 공공도서관(기적의 도서관)』 건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센씨병 집단촌의 공동취사장 건물 신축과 신기경로당, 상연암경로당 곡리경로당 신축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북구 어린이 공공도서관』 신축 부지확보

규 모 : 부지 900㎡ , 토지매입비 110,000천원

○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신축

규 모 : 부지 320㎡ ,지상1층 180㎡, 사업비 150,000천원

(※부지 사유지 무상임대)

○ 『신기경로당』 신축

규 모 : 부지 264㎡, 지상1층 150㎡, 사업비156,000천원

(향후 기부채납 계획)

○ 『상연암경로당』 신축

규 모 : 부지 232㎡, 지상1층 100㎡, 사업비 144,000천원

○ 『곡리경로당』 신축

규 모 : 부지 2,050㎡, 지상1층 100㎡, 사업비 148,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북구 어린이 도서관』과 『성혜마을 공동 취사장』 부지매입은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각각 북구 청소년과 성혜마을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로당 건립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수요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계획성있는 건립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64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3. 7. 7 (월) 10:00

다. 회　　기 : 2003. 7. 7 ~ 7. 16 (10일간)

라. 부의안건

- 4분자유발언(이재경의원)
- 2002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결산검사대표위원)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결의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성하의 계절로 접어드는 이 때 우리는 지난 6월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저나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 때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문을 활짝 연 우리 3대 북구의회가 이번 달로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그동안 우리 3대 의원들에게 애정 어린 충고와 따끔한 질책,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7월 3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지나온 1년 동안 남다른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총11회 동안 회기를 열어 예산안 등 85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으며, 회기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중에도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오는 등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조용히 반성해 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여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그 동안 수없이 건의되어 왔던 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들이 하나 둘씩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분발하여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 건설에 다함께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이맘때부터 우리 지역에서도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내 재해 위험지구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대형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보건소 관계자께서도 현재 보건소장의 부재로 인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건행정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3.7.7-7.16(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7.7 (월) 10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 4분자유발언(이재경의원) 1.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 직 후	1	3. 2002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 〈결산검사대표위원〉 4.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 의원 선임의건 5.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파동에따른의결 (안)(김대영의원 외 2명 발의)	
2003.7.8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2.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실(관련부서)	원안가결 원안승인
2003.7.9 (수) 10:00	3	1.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기획감사실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	
2003.7.10 (목) 10:00	4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 ○총무국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2003.7.11 (금) 10:00	5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 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3.7.12 (토) 10:00	6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 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2003.7.13 (일)		일 요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7.14 (월) 10:00	7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 속〉 ○도시건설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2003.7.15 (화) 10:00	8	1. 2002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계 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2003.7.16 (수) 10:00	9	1.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 속〉 ○종합의결 2.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계 속〉 ○종합의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27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7. 8 (제6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중 동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단일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 설치시마다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관 관리·운영 및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정의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으로 정의(안 제2조)

○ 이용대상 : 북구 거주자로 하며 종류에 따라 정함(안 제4조)

○ 위탁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가능(안 제5조)

○ 사 용 료 : 강당, 식당 2시간 기준 30,000원(안 제9조, 별표 2)

○ 운 영 비 : 보조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운영(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우리구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복지시설의 사각지대였던 북구에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위탁에 대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위탁해지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규정(안 제5조)한 것은 바람직하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목적(안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할 사업 또는 기능 즉,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향후 이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절 제6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재건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7. 23 (수) 10:00

다. 회　　기 : 2003. 7. 23 (1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류재건의원 외 2인 발의)

2. 개회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열린 임시회와 정례회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제65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이 관내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과 초등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이유로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저나 동료의원께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지금이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지역의 교육발전에 보다 관심을 가져 나가는 것도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금의 재원 조성 등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역 재정을 감안한다면 큰 부담으로 작우될 수 있는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회 여러 단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북구에서 서둘러 처리함으로써 문제점은 없는지, 이처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

여 이번 조례안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우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7.23(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7.23 (수) 10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제6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심의보류

제14절 제6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9. 25 (목) 10:00

다. 회　　기 : 2003. 9. 25 ~ 9. 27 (3일간)

라. 부의안건

- ○ 4분자유발언(김재근부의장)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한층 더해 가는 9월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습 니다만, 다행히도 우리구는 타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

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지원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시 재해 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동료의원들께서는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 이번 조례가 조목조목 심도있게 검토되어 구민 복리증진 추구를 위한 기준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기 때마다 거론되고 지적되었던 불충분한 업무연찬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혼란을 가져왔던 사례들이 이번 임시회부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력 있고 설득력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만 구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한해의 살림살이를 미리 예상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평상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끼고 보았던 전반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분석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 등 각종 업무의 마무리 준비, 그리고 내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 업무 구상도 이제 서서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설계가 잘 되어야 모든 공사가 무리없이 잘 마무리되듯이 업무 또한

준비가 잘 되어져야 성공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구민 생활의 불편사항 해결과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의 발전도 함께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농사작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농작물을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도와 지원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림과 아울러 환절기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9.25~2003.9.27(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9.25 (목) 10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 4분자유발언(김재근부의장) 1.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6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9.26 (금)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2.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지방세과)	원안가결 부 결
2003.9.26 (금) 10:00	2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세과)	원안가결
2003.9.27 (토) 10:00	3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9. 26 (제6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8. 6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결과 징수포상금 부당지급 개선권고 수준이었으나, 당시 우리구는 체납세징수는 세무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논리에 떠밀려'98.12.31징수포상금조례를 폐지하였음(타 시도는 존치 운영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기존 폐지조례와는 달리,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객

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조문을 보완하고, 소극적 체납징수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계기마련 및 인센티브를 유공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 제정.

나. 주요골자

○ 2001. 9. 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되어 통보됨.

○ 정원조정 : 증 1명

○ 정원의 총수 : 374명 → 375명(증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98. 12. 31 폐지된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징수를 위하여 유공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행정의 본연의 책무라는 논리와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는 논리사이에 비교형량을 하여 결정될 사안이라 판단됨.

4) 심의결과 : 부 결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9. 5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9. 27 (제6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인감증명발급시 수수료를 자치단체조례로 징수토록 하던 것을 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인감증명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점용허가 수수료를 점용료의 1천분의 1을 징수하던 것을 신청자로부터 1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법이 '99. 2. 8(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종전의 공연자 등록·변경등록,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공연자의 폐업신고 등이 전면 폐지되고, 2001.12.31(법률 제6568호)로 공연장(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 금액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인감증명법에 의거 인감증명발급시 1통 500원, 다른증명청 1통 800원, 변경신고 회당 500원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1통 300원, 인감변경신고 1건 200원을 삭제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의 요액 점용료 1천분의1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을 삭제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공연자 등록신청 및 공연자등록증사항 변경등록을 공연장의 등록 및 공연장의 변경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3조제1항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인 본 조례의 구속력이 없는 관련사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5절 제6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10. 9 (목) 10:12

다. 회　　기 : 2003. 10. 9 ~ 10. 18 (10일간)

라. 부의안건

- ○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김재근의원 외 2인 발의)
- ○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 ○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의장 제의)
- ○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느끼게 하는 이 때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제67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

성협의 및 의결의건,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의결되면 그동안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세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으로 구성된 동료의원께서는 준비단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분야를 꼼꼼하게 조사하여 행정의 과실, 착오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차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위민봉사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집행부 견제기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혹, 주먹구구식이나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낭비성·선심성 예산편성이 있는지,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도 동료의원들께서는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 동안 우리 농민들이 피땀어린 정성을 모아 경작한 농사가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이 실의와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낌없는 행정지도와 지원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10.9~10.18(10일간)

일자	순번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0.9 (목) 10 : 3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 3.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4.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0.10 (금) 10:00	2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총무과) 북구복지관신축사업(의안번호65호) 화정마을주민쉼터 (의안번호69호) 당사경로당신축 (의안번호70호) 2.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2003.10.11 (토) 09:00	3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의회사무과	
2003.10.12 (일)		(일 요 일)	
2003.10.13 (월) 10:00	4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2003.10.14 (화) 10:00	5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3.10.15 (수) 10:00	6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0.16 (목) 10:00	7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 예산안〈계속〉 ㅇ도시건설국(농림수산과,허가과) 2.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3.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003.10.17 (금) 10:00	8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 예산안〈계 속〉 ㅇ보건소 ㅇ계수조정	
2003.10.18 (토) 10:00	9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 예산안〈계속〉 ㅇ 종합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제65호)

1) 심의경과

ㅇ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2 (구청장)

ㅇ 심의일자 : 2003. 10. 10 (제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ㅇ 현재 건립중인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과 노인지회사무실, 자원봉사센터 등을 한곳에 건립 종합복지타운 조성

ㅇ 종합사회복지관내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원 봉사 수혜자

와 봉사자를 쉽게 연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북구복지관 신축

○ 부　　지 : 1,278㎡중 220㎡,

○ 건　　물 : 660㎡(지상3층,경량철골조)

○ 사 업 비 : 7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보훈회관 등 북구복지관 신축사업은 2003. 5월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현재 건립중인 울산광역시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과 노인지회사무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일명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북구 관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보훈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를 한곳으로 결집시킴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내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 수혜자와 봉사자를 쉽게 연결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취득목적상 하자는 없어 보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제6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10. 10 (제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화정마을은 자연부락단위의 마을로 831세대 2,815명이 거주하는 APT 및 개인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체육 등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주민쉼터를 마련하여 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문화, 체육등 여가를 보낼수 있도록 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화정마을주민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적정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북구 중산동 화정마을은 북구청 및 농소2동사무소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을 주변에 문화, 체육시설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본 사업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민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예, 주민민원, 시급성, 기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보충설명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부 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의안번호 제7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10. 10 (제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당사마을은 자연부락단위의 어촌마을로 노인들이 다수를 점유(100세대70명)하고 있으나 마을단위 노인여가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여가를 집에서 소일을 해오며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노인들이 노후

를 마음편이 보낼 수 있도록 마을단위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함. 경로당 신축은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사업임.

나. 주요골자

○ 당사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적정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북구 강동동 당사마을은 자연부락단위의 어촌마을로 노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마을 단위 노인여가시설이 없어 노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오던 시점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지원받아 경로당을 신축하여 마을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임.

○ 본 사업예산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금으로 그 성격상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에서 충당하는 재원에 해당하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세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총액중 사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관점에 서 다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6절 제68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3. 11. 25 (화) 10:11

다. 회　　기 : 2003. 11. 25 ~ 12. 19 (25일간)

라. 부의안건

-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의장 제의)
-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때에 오늘 2003년도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동안 집행부가 수행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의 한해 살림살이 등을 심사하는 회기로써 그 어느 회기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심의할 새해 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만큼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도 세밀한 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3일부터 11월14일까지 12일간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 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파악·조사함으로써 앞으로 투명하고 진보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봄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라크 파병문제, NEIS파동, 태풍 '매미'로 인한 국민의 상실감,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뒷거래 등 이 모두가 국민들의 의식을 카오스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질 높은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청사 개소와 더불어 구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문화예술회관 개관, 문화원 개원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기적의 도서관, 장애인 공동작업장 등 내년에도 많은 새로운 시설들이 선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하나하나가 아무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어 훌륭한 모습으로 주민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25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가 어느 때보다 더욱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 2003.11.25~12.19(2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1.25 (화) 10 : 00		개 회 식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 직 후	1	1.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 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3.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 - 제 안 설 명(구청장) -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승 인
2003.11.26 (수)~ 2003.12.2 (화) 〈7일간〉		(행정사무감사)	
2003.12.3 (수) 10:00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총무과)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총무과) 4.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 5.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 (도시교통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3.12.4 (목)~ 2003.12.17 (수)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 예산안 심사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2.18 (목) 10:00	3	1.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3.12.19 (금) 10:00	4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종합심사의결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의안번호 제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12. 3 (제68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북구 공공도서관】

가. 제안이유

○ 13만 구민들의 최대 숙원인 권역별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

나. 주요골자

○ 도서관 신축사업

○ 취득재산 : 건축물(지상2층, 연면적 660㎡)

【상안체육공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상안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안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

○ 부　　지 : 3,000㎡(5필지)정도

【국민체육센터】

가. 제안이유

○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체육진흥 발전 물론 물론 다목적 종합체육공간 조성으로 구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지면적 : 1,983.48㎡(600평)

○ 건축연면적 : 2,310㎡(700평)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 】

가. 제안이유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확보하여 장래에 필요한 공공청사부지 및 구청사, 보건소, 문예회관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

나. 주요골자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래 필요한 공공청사 부지 및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

심의.

○ 부　　지 : 9,405㎡(2,845평)

○ 주차장조성 : 300대 정도

【이화경로당】

가. 제안이유

○ 이화경로당은 '94.10월에 건립되었으나 하천(실질적으로 도로)부지 상에 무허가로 건립되어 노인들의 불편은 물론 주민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축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화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화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

○ 부　　지 : 미 정

○ 건　　물 : 100㎡(지상1층 30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이며, 이화경로당 신축을 포함한 모든 계획이 의회 승인을 얻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북구 공공도서관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중 약 6억정도가 2004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음. 제목이 「북구 공공도서관」으로 표현되어있어 중기재정계획의 「북구 도서관 건립」과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권역별 작은도

서관」 취지에 맞는 제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는 농소2동 어린이 도서관에 이어 농소3동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농소권 지역에 도서관이 편중되어 타권역과의 형평성시비가 있을 수 있음.

○ 상안체육공원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미추진된 사업으로 5억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임. 계획예정지는 대단지 아파트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체육공원조성시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큰 역할을 할 것임.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5억 편성된 사업을 당초예산안에 3억만 편성한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계획성"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결론적으로 선반영되어야 할 사업예산을 추후 편성하겠다는것은 중기재정계획 취지에 맞지않다고 사료됨.

○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급팽창하는 농소지역 주민들 및 북구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소1동 호계지역에 설립되는 것은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큰 무리없어 보이며, 다만 부지매입을 위해 당초예산안에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확보 및 체육기금출연에 대한 명확한 확증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의 경우 북구청사, 보건소, 문예회관 공공청사가 한곳에 밀집되어 장래에 필요한 공공용 청사 부지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은 청사주변지역의 계획성 있는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특히,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증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취득시기가 중기재정계획에 2004년(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으로 오타로 추정됨)으로 총 25억여원을 투입

할 계획이나 당초예산안에는 3억원만 편성되어 있어 이 또한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안임.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여 연차계획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화경로당의 경우 기존 경로당이 무허가 건물로 지금까지 노인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문제의 소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북구공공도서관 : 원안가결

○ 상안체육공원 : 원안가결

○ 국민체육센터 : 원안가결

○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 : 원안가결

○ 이화경로당 : 수정가결(지번 삽입)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2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12. 3 (제68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지방이관,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따른 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안 제7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직원의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 비현실적인 당직근무수당을 직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인상단가가 타지자체 반영비율과 비교하여 대동소이한 인상액으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인 만큼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2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3. 12. 3 (제68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운영
-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운영기준 정비
- ○ 과태료의 징수절차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 조례안의 내용상 기존조례에서 추가 신설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과태료징수절차, 토지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하자는 없어 보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7절 제6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3. 12. 20 (토) 10:10

다. 회　　기 : 2003. 12. 20 ~ 12. 26 (7일간)

라. 부의안건

- ○ 4분자유발언(이재경의원)
- ○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정례회를 마치고, 오늘 200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69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어느덧 계미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장기간 동안 실시된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한해 살림살이를 총 결산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동료의원들께서는 올 한해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 었는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사무감사에도 매년 시정 요구된 사항들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 또한 편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즉시 보완·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정리 그리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도 서서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12.20~12.26(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2.20 (토) 10 : 00		개 회 식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직 후	1	1.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5.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건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3.12.21 (일)		(일 요 일)	
2003.12.22 (월) 10:00	2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 지방세과,민원봉사과)	
2003.12.23 (화) 10:00	3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 보건소	
2003.12.24 (수) 10:00	4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허가과)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3.12.25 (목)		(공 휴 일)	
2003.12.26 (금) 10:00	5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종합심의의결	원안가결

제18절 제7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윤임지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2. 12 (목) 10:10

다. 회　　기 : 2004. 2. 12 ~ 2. 21 (10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외 2인 발의)
-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대영의원외 2인 발의)
-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류재건의원외 2인 발의)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가 밝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004년도 첫 회기인 제70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북구 의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변화의 물결이 거센 격동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국내·외적 상황이 결코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경기는 침체되고 청년실업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노동자 등 자살한 사람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파병, NEIS 파동 문제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였으며, 정치권은 대통령 측근 비리, 불법 대선 자금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작년 한 해 우리 북구의회는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발로 뛰는 현장의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의욕으로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전 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 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구정 시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구정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소관 업무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들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70회울산광역시북의회(임시회) 2004.2.12~2.21(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2.12 (목) 10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7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7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04.2.13 (금)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감사실) 4.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자치행정과) 5.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 · 관리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부 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2.14 (토) 10:0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기획감사실	
04.2.15 (일)		(일 요 일)	
04.2.16 (월) 10: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04.2.17 (화) 10:0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총무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04.2.18 (수) 10:00	6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04.2.19 (목) 10:00	7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허가과)	
04.2.20 (금) 10:00	8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도시건설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04.2.21 (토) 10:00	9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보건소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 8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2. 13 (제7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2003. 7. 18 법률 제6927호)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1호)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로 조정하였음(안 제2조제1항)

○ 의정활동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도의회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에게도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월 11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안 제5조제1항)

○ 지방의원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하였음.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7호)으로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같은법시행령 개정(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1호)으로 기초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증액 및 보조활동비 신설 그리고 국외여비 인상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2. 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2. 13 (제7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 관내 문화의 집은 모두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능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함에도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는 달리 근거조례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 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반면 문화의 집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용 주민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 있어 형평성 문제와 예산집행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제1항 신설)

○ 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의2 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안이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현재 우리관내 농소2,3동 두곳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집 개설강좌프로그램이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수강료징수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고, 담당공무원의 예산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안 제8조의2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수강료 요율의 경우 자치센터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징수하게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다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보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2. 2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2. 13 (제7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3년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지원 상한액을 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임의 보조액을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정액 보조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

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예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안 제6조~안 제9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 제11조)

- 구성 : 공무원,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9인

- 기능 :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8조~안 제20조)

- 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 의무화.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과 관련 그간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을 문제삼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큰 하자는 없어 보이지만, 안 제7조제1조의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뒷부분 '~따라'표현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함이 표현상 좀 더 자연스러우며, 안 제10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을 "구의원" 또는 "기초의회의원"으로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 - -

□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2. 2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2. 13 (제7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 매곡동 422-2번지 현대파크 101동 508호. 정창윤(64. 1. 2)을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 우리구 주민 5,129명의 서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학교급식법제3조·제8조 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중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 우수농산물로의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료비 〔식품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급식여건 개선사업

○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대상학생' 의 지원·확대

○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대표자 정창윤 외 5,129명의 서명으로 조례청구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안 중 안 제1조의 경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신설(대통령령 제18188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만들어져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의 경우 서술형식 표현이 잘못되어 "항", "호"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각각 "호", "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래 도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이하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8조제2항·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5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예산**을 관할구역안에 있는 .....(이하 생략)
제12조(기능)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③ (생략)	제12조(기능)(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참고로, 2003년 7월 15일자 류재건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질의토론종결을 마친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성격의 안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학교급식법제3조·제8조제2항·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5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 - -**울산광역시북구예산**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으로 농·수·축산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생략) 4.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5.~6.(생략)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제정안과 같음) 4. -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및 우리 농·수·축산물**과 - - — - - - - - - - - - - - - **식품을** - - - - - — - -. 5.~6.(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①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중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우수농산물로의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료비** 2.(생략) ②(생략)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 - -

가. 제안이유

○ 북구 관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 관내 학교의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하고

○ 학생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을 설치.

○ 제3조(기금의 재원조성) ①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년도를 2007년으로 함.

○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1. 학교(초등학교)학생 급식비

2.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③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북구관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류재건의원 외 2인의 의안발의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교육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사무로 분류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그리고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52페이지에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3조의 기금을 조성하여 안 제4조의 용도에 지출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교육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조사해본 결과 과천시가 유일함. 과천시의 경우 기금조성액을 총 300억으로 하고 있어 우리구의 30억과는 큰 차이가 있음. 즉, 기금액수를 얼마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요구됨. 기타 조문의 형식이나 표기상의 하자는 없으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 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제19절 제7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김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5. 10 (월) 10:10

다. 회　　기 : 2004. 5. 10 ~ 5. 14 (5일간)

라. 부의안건

- ○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 ○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대체에너지관련사업추진상황

2. 개회사

존경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오월을 맞이하여 제71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적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구정업무 추진 등 맡은 바 업무에 수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계획되어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의견을 청취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가 어우러져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회기가 되고 우리 북구의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1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5.10~5.14(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5.10 (월) 10 : 00		개 회 식	
개 회 식 직 후	1	1.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제7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2004.5.11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문화공보과) 2.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 운영조례안(문화공보과)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 4.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지방세과) 5.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4.5.12 (수) 10:00	3	1.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 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환경미화과) 2.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 (환경위생과)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대체에너지관련사업추진상황(지역경제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5.13 (목) 10: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2004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현 (기획감사실) ○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 (문화공보과) ○ 효문운동장조성사업추진상황 (문화공보과) ○ 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추진상황 (문화공보과)	
2004.5.14 (금) 10:0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강동해안가꾸기사업추진상황 (농림수산과) ○ 폐타이어소각열이용하우스난방시설보조금 추진상황(농림수산과)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의건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5. 11 (제7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문화정책의 입안과 문화예술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코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을 전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안 제3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정책의 입안과 문화예술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증원하기 위한 안으로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증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 인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5. 11 (제7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 여가활동 및 심신수련을 위한 장소로 청소년 체육활동장 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이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 체육활동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 마련 (안 제6조)

○ 매주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안 제7조)

○ 시설사용에 대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 근거마련(안 제11조)

○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 여가활동 및 심신수련을 위하여 무룡동에 운영중인 청소년체육활동장 시설이용을 권장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이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이 조례안의 핵심사항중 하나인 사용료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슷한 요금으로 책정되어 별표의 사용료 요율산정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안 제3조의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청소년"의 용어정의가 법률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정의와 동일하게 정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인용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2.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일반인"이라 함은 **2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일반인"이라 함은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이 아닌** 25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 안 제9조의 경우 시설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로써 제1호 및 제2호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의 제한) 1.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단체생활이 부적절한 자** 등	제9조(사용의 제한) (삭제) (삭제)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단체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자** 등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1.---------- ----------. 2."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일반인"이라 함은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1.---------- ----------. 2."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일반인"이라 함은 **제3조제2호의 청소년이 아닌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의 제한) **1.전염병 환자** **2.정신질환자** 3.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기타 단체생활이 부적절한 자** 등	제9조(사용의 제한) 삭제 삭제 1.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기타 구청장이 단체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5. 11 (제7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개정
(안 제8조제2항)

○ 시행규칙중 "제7조의2제2호"를 "제6조의2제2호"로 개정(안 제10조)

○ "영 제30조"를 "영 제30조제1항및시행규칙 제16조"로 개정(안 제13조)

○ 매년 부과하고자 하는 지방세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6조의2)

○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와 납부절차로 분리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안 제50조)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에서 위원회 구성인원 증원뿐만 아니라 회의시 구성배분에 있어서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석하도록 명문화(제4항신설)하였으므로 이 조례시행규칙인 울산광역시북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93조 제2항에 의한 과반출석, 과반찬성 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개정이 필요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5. 11 (제7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단순 생계지원을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자활사업이 시행되면서 수급자들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이율 및 연체이율의 인하

○ 이 율 : 연 5% → 3%, ○연체이율 : 연 15% → 10%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자율을 현실성 있게 인하(연 3%이율에 연체요율 연 10%로 인하)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활성화와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개정(안 제4조) 제출된 안건으로 타 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하며 상대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5. 12 (제7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여 폐기물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피신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과태료를 부과(안 제9조제1항)

-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안 제9조제2항)
- ○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안 제9조제3항)
- ○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규제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
- ○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 ○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절차 등을 기술함.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 이 제정조례안은 내용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고,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포상금의 경우 제1차추가경정예산에서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20절 제7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재경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6. 10 (목) 10:10

다. 회　　기 : 2004. 6. 10 ~ 6. 19 (10일간)

라. 부의안건

-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구정에관한질문:감소하고있는강동동인구의증가및유입을위한방안및대책에대하여(윤임지의원)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 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72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그리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충분히 고려되고 편성의 불가피한 당위성이 확보된 가운데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의장의 중임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의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14만 구민과 집행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 모든 분들의 성원과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합되는 성숙된 모습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발전과 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올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게 되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달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반기 중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

고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6.10~6.19(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6.10 (목) 10 : 00		개 회 식	
개 회 식 직 후	1	1.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5. 구정에관한질문(윤임지의원) - 감소하고있는강동동인구의증가및유입을위한방안및대책에대하여	
04.6.11 (금) 10:00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총무과)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 조례안(문화공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6.11 (금) 10:00	2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심의보류 수정가결
2004.6.12 (토) 10:00	3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총무국(자치행정과)	원안가결
2004.6.13 (일)		일 요 일	
2004.6.14 (월) 10:00	4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무국 (총무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04.6.15 (금) 10:00	5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04.6.16 (금) 10:00	6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4.6.17 (금) 10:00	7	1.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기획감사실	
04.6.18 (금) 10:00	8	1.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04.6.19 (토) 10:00	9	1.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0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5. 3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6. 12 (제7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4년도 공유재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북구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주관부서 : 총무국 문화공보과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연암동 404-1번지, 대지
- 부지취득 : 1,036.3㎡(313.4평),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물취득 : 지하1층, 지상4층, 2,644㎡정도(800평)
- 추정가격 : 4,600,000천원정도
  (건축비 4,000,000, 부지매입 600,000)
- 사업기간 : 2004. 7 ~ 2006. 6

○ 건립재원 : 4,600,000천원
(국비800,000, 시비1,600,000, 구비2,200,000)

○ 취득사유 : 구민들의 지식·정보 획득이 용이토록 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구립 농소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처분〕

○ 주관부서 :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 사업개요

▷ 위 치 : 매곡동 795-59번지외 3필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취득할 재산 — 850,000천원

- 토　지
  - 매 입 : 매곡동 596-2번지외 2필지, 436.3㎡, 198,000천원
  - 교 환 : 매곡동 596-2번지외 2필지, 330.5㎡
    ※ 교환가액 : 150,000천원
- 건　물 : 지상2층, 400㎡정도(121평) — 502,000천원
  ※ 교환가액 : 150,000천원

▷ 추정가격 : 7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4. 7 ~ 2005. 2

▷ 건립재원 : 700,000천원 (국비 77,000, 시비 58,000,
특별교부금 100,000, 구비465,000)

○ 취득사유 : 구립 농소어린이집(정원85명, 연면적121평)이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해 2005. 2월(당초2004. 8월)철거 예정에 있으나 철거이후 원아들이 옮겨갈 시설이 없어 2004년도 내 조기 건립 추진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북구 공공도서관』 신축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2006년까지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부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구립농소어린이집』 신축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해 2005년 2월(당초2004. 8월)철거 예정에 따른 이전신축을 위한 것임.

○ 이전 신축부지는 진입로확장공사에 따른 잔여부지와 인접부지의 교환을 통한 처분 및 매입할 부지로써 이전위치가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5. 3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6. 11 (제7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2004년 북구지부와의 단체협상 합의결과에 따라 당직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정상근무 토요일 일직 추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구청 토요일 당직근무를 숙직에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직원의 당직근무여건을 개선

○ 2개조 편성에 따른 토요일 당직근무수당을 숙직 3만5천원에서 일·숙직 3만원으로 조정 시행하고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4항에 대하여 정상근무토요일 당직근무인 숙직근무를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모든 일·숙직수당을 동일하게 3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함과 아울러 단서조항에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5. 3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6. 11 (제7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창의성 함양을 위해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에서 건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기증하는 기적의 도서관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4조)

○ "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회의, 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도서관내의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

○ 시설의 사용 및 변상책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이 조례안중 안 제7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심의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부분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월권행위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생략) 1.(생략) 2.도서관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 변경, 교체에 관한 사항 4.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생략) 1.(생략) **2.제15조의 도서관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제16조의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수탁자 선정 및 변경·교체에 관한 사항** 5.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5. 3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6. 11 (제7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중앙사무가 지방에 이양됨으로 인한 부족인력 보충 및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한 일부 조직의 통·폐합과 신설, 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적정인력을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 당 초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24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1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 변 경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6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4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 집행기관 정원 증 36명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광역시 출범이후 2002년까지 375명의 정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2년 사이에 85명이 증원되어 기존인력대비 23%가까운 정원증가율을 보이는 바 이는 인력충원계획의 비계획성과 인력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예산의 비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사의 적체 등 또 다른 인력운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

○ 지금까지 중앙정부 통제에 의해 운영되어온 인력계획이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순차적인 「중·장기인력수급계획」에 의한 인원충원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6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48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 - - - - - - - **442명** - - - - - - - - - - - - - - - -

제21절 제7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하인규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4. 6. 30 (수) 10:10

다. 회　　기 : 2004. 6. 30 (1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구청장 제출)
- ○ 의장선거의건
- ○ 부의장선거의건

2. 개회사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4만 지역주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개원한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2년의 새로운 이정표를 준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우리 구의회 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구정의 감시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소임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지고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합되는 한 차원 더 성숙된 모습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기 중에는 제3대 북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재해의 교훈을 거울삼아 대형공사장과 주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4.6.30(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4.6.30 (수) 10 : 00		개 회 식	
개 회 식 직 후	1	1. 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7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직 후	1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 5.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총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6. 의장선거의건 7. 부의장선거의건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12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6. 30 (제7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토요일 휴무확대 시행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17조)

○ 핵가족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안 제17조 및 부칙에 토요휴무가 2004년 7월1일부터 격주휴무로 2005년 7월1일부터는 완전휴무로 전환되어 주5일근무제의 근거규정

을 마련한 것이고, 안 별표3의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사항으로써 근로조건개선 및 후생복지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구에서 5.20~6.4일 16일간 입법예고하였던 내용중 비밀엄수(안 제5조의2),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17까지근무)삭제(안 제13조제1항), 연가일수 1~2일 축소(안 제19조제1항) 등 3가지 사항이 울산광역시 북구노조지부(대표자 여재율)의 6. 1일 의견제출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배제됨.

○ 그러나, 2004년 6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위 3가지 사항이 의결됨으로써 공무원으로써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들이 사실상의 하위법령에 있는 본 조례에서 달리 규정·적용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한을 두고 있는 사안들은 기한내에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장춘시녹원구와자매결연체결안(의안번호 제1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6. 30 (구청장)

○ 심의일자 : 2004. 6. 30 (제7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중국 길림성 장춘시 녹원구 손아명 구장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의지를 표명하여 교류협력 의향 합의

○ 중국 장춘시 녹원구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와 도농복합의 지역특성이 우리구와 비슷하여 상호 정책수립의 노하우와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 우리구에서도 울산-장춘시 10주년 기념행사와 맞추어 답방하여 자매결연 체결

나. 주요골자

○ 향후계획 : 장춘시 녹원구 방문 및 자매결연체결

- 기　　간 : 2004. 7. 1 ~ 7. 6.(5박6일)
- 방 문 단 : 8명(집행부5, 의회3)
- 주요내용 : 장춘시 녹원구와 자매결연체결(7.5)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동의안으로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행정,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지원으로 兩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또다른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제교류의 사업목적 및 추진방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가칭 『울산광역시북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그 법적 뒷받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4 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 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 2 절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3 절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4 절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5 절 2003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6 절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7 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 8 절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9 절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10 절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11 절 2004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12 절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동 정자항 일출

제1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2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2. 9. 14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2. 9. 7 ~ 9. 14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73,823,630,190원
- 세출결산액 : 58,999,776,510원
- 세계잉여금 : 14,823,853,680원

○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15,637,040원
- 세출결산액 : 80,000,000원
- 세계잉여금 : 135,637,040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622,073,100원
- 세출결산액 : 2,569,193,000원
- 세계잉여금 : 52,880,100원

○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31,211,390원
- 세출결산액 : 67,000,000원

- 세계잉여금 : 64,211,390원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341,537,660원
- 세출결산액 : 212,249,900원
- 세계잉여금 : 129,287,76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세입에 있어

- 일부 세입예산 항목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매년 세입증가율을 참조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확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로 인한 세입예산이 실제 수납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순 세계잉여금도 전기에 비해 253,481,340원 증가한 3,462,123,910원이 되었으며,
- 종량제 봉투관리에 있어 재 주문 시점에서 재고 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예금의 이자는 자금의 입출금 시기와 이자율만 검토하면 대체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이자수입이 당초예산과 3차 추경 예산과의 차이가 50%정도인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세출에 있어

- 문예회관 건축설계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미 계상분을 도서구입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 하였는바 시상금 미 사용분은 추경예산 시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구입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심의결과 의견요지

○세출에 있어

- 우리 북구는 2002년도 당초예산규모가 전국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최하위 일만큼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데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됨.
- 집행부 공통사항으로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 2001년도 결산심의보고 시 일부 관계공무원은 결산보고서 내용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보고하는 등 불성실한 준비로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며,
- 주요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소동이 벌어져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결산자료 곳곳에 오류가 발견되어 심의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특히 일부 공무원은 결산은 이미 다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사후적 승인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충대충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연도에는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과 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도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이미 2001. 12. 21부터 27일까지 결산추경을 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구비사업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중에 백만원 이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함.
- 몇 가지 대표적인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 총무과의 경우 자체사업 시설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지난해 청사이전으로 구청사 철거비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 시 철거비가 너무 많다는 등의 논란이 많았지만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하여 준 건인데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한 이 것은 의회기능을 경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차후 예산심의 시 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치행정과 동정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불용액 과다 발생은 지난해 의원들이 틈만 나면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니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고 어떻게 하든 예산지원 조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였는데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조차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동과 구청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지방세과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중 107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추경 시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방치해 둔 것은 업무태만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당초부터 과다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심의 시 철저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1년도 결산서상 전체 예

산액 124,870천원 중 불용액이 57,870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6.3%가 불용처리 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지원에 대한 부진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 도시교통과의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과다 불용액 발생도 공통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결산추경이 12월말임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

5. 심의결과 : 승인가결

제2절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7. 2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2. 9. 14

(제5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2. 9. 6 ~ 9. 14

2. 주요골자

○일반회계

·예 산 액 : 985,340,000원

·지출결정액 : 128,838,000원

·지 출 액 : 123,613,870원

-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외 4건

·불 용 액 : 5,224,13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양정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및 옹벽균열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설치목적으로 설치된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므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의견요지

○2001년도 예비비는 총5건에 123,613,87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의 금액을 계상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에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을 두어 예비비 지출이 변칙사용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옹벽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 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마련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 기금조차도 공공시설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유지에 예비비를 사용함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용이며 또한 새마을아파트 입주자가 약800여 세대가 되는데도 자체 해결의 노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99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포함한 약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하여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에 또 절개지가 붕괴된 것은 얼마나 행정이 일관성과 원칙 없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형편에 어떻게 대응할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또한 구민의 세금이 특정 사유지에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함으로서 받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는지 매우 걱정스러우며,

○국고보조금 초과지출 반환에 예비비를 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보조금, 업무추진비등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 답변 시 추경예산편성 시 잘못 편성하여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예비비사용이며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함.

5. 심의결과 : 승인가결

제3절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0. 12(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2. 10. 15 ~ 25

다. 의결일자 : 2002. 10. 25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0차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예산액	기정예산액 (제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088,542**	**45,934,438**	**15,154,104**	**32.9%**
일 반 회 계	60,330,460	45,205,369	15,125,091	33.4%
특 별 회 계	752,082	729,069	29,013	3.9%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43,000	243,000	0	0%
의료보호기금	66,884	66,884	0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104,863	104,863	0	0%
주 차 장	343,335	314,322	29,013	9.2%

3.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61,088,542		168,500	0.27	768,157	936,657	61,088,542	1,832,656
일반회계		60,330,460		168,500	0.28	700,230	868,730	60,330,460	1,809,913
기타특별회계		758,082				67,927	67,927	758,082	22,742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43,000				41,812	41,812	243,000	7,290
	의료급여기금	66,884				-	-	66,884	2,00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104,863				4,652	4,652	104,863	3,146
	주차장	343,335				21,463	21,463	343,335	10,300

4. 심의사항

□ 세 입

○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액은 2002기정예산액 45,934,438천원 보다 15,154,104천원이 증가된 61,088,542천원 임.

○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1,208,000천원이 증액된 13,690,000천원으로 편성, 세외수입은 1,106,479천원이 증액된 9,613,573천원으로 편성, 지방교부세는 1,200,000천원이 증액된 1,230,000천원으로 편성, 조정교부금 5,614,896천원이 증가된 16,445,553천원으로 편성,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24,531천원, 시비보조금 5,000,198천원으로 6,024,729천원이 증액된 19,846,78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 출

○ 세출예산은 당초 45,934,438천원에서 15,154,104천원이 증가되어 총 61,088,54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 45,205,369천원에서 15,125,091천원이 증가되어 60,330,46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729,069천원에서 29,013천원이 증액된 758,08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심의의견

○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 신설이후 추경예산으로써는 최대규모인 기정예산액 대비 33%가 증가한 금액이며,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형평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예산임.

○ 더구나 1개월 전 제55회 임시회시 의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참여예산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아무런 사전 정보도 제공치 않아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을 보면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 등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이며,

○ 강동 어촌마을 6개 정주항 보강공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공사를 6개 정주항으로 분산해서 추진함은 장기적인 안목과 능률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 사례이며,

○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은 2002. 3. 5일 구청장이 사업신청을 하고 4. 16일 사업확정 공문이 시달되어 6. 10일 공사 착공하고 9.17일 공사를 준공하면서까지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승인 요청한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예산편성임으로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며,

○ 또한, 문화회관 건립공사 사업비 중 예산과목내의 세목예산은 집행부에서 세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고,

○ 동별 숙원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동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것은 수혜를 받은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 할수 있는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에는 같은 북구 주민으로서 동민들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산편성시 구민의 땀과 피의 형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열린행정, 투명행정, 책임행정 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제4절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2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2. 12. 26

(제5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2. 12. 21 ~ 12. 27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예산액	기정 예산액 (제3회 추경안)	증 감	
			금 액	비 율(%)
계	**64,555,521**	**64,484,717**	**70,804**	**0.10%**
일 반 회 계	63,797,439	63,726,635	70,804	0.11%
특 별 회 계	758,082	758,082	-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43,000	243,000	-	-
의료보호기금	66,884	66,88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104,863	104,863	-	-
주 차 장	343,335	343,335	-	-

3.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64,555,521	-	3,000		2,312,473	2,315,473	64,555,521	1,936,665
일반회계		63,797,439	-	3,000		2,244,546	2,247,546	63,797,439	1,913,923
기타특별회계		758,082	-			67,927	67,927	758,082	22,743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43,000	-	-		41,812	41,812	243,000	7,090
	의료보호기금	66,884	-	-		-	-	66,884	2,00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104,863	-	-		4,652	4,652	104,863	3,146
	주차장	343,335	-			21,463	21,463	343,335	10,300

제5절 2003년도 당초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0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2. 12. 20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제14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2. 12. 4 ~ 12. 17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액	전연도예산액 (2002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 율(%)
계	**60,471,090**	**39,675,861**	**20,795,229**	**52.41%**
일 반 회 계	59,840,479	39,098,963	20,741,516	53.04%
특 별 회 계	630,611	576,898	53,713	9.31%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36,000	243,000	-7,000	-2.88%
의료보호기금	21,750	14,000	7,750	55.3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6,756	104,863	-38,107	-36.33%
주 차 장	306,105	215,035	91,070	42.35%

3.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67,587,091	1,010,856	2,833,359	4.2	1,134,912	2,957,415	66,576,235	1,997,287
일반회계		66,753,288	1,010,856	2,833,359	4.2	1,036,341	2,858,844	65,742,432	1,972,273
기타특별회계		833,803	-	-		98,571	98,571	833,803	25,014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32,000	-	-		82,000	82,000	232,000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41,000	-	-		-	-	41,000	
기타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43,695	-	-		3,495	3,495	43,695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517,108	-			13,076	13,076	517,108	

4. 심의결과 의견요지

□ 세 입

○ 세입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약 50%이상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이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그 동안 불합리했던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대부분이 신 개발지역으로서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 할 것이므로 지속이며 다각적인 재정확충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 세 출

○ 2002년도 당초예산기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그 규모가 최하위이던 예산이 2003년도에는 52.41%가 증가된 약600여억원이 되면서 주민숙원사업 등 그 동안 시급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 퍽 다행으로 생각되나 전반적으로 갑자기 재정상태가 나아지면서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함.

○ 총무과의 퇴직공무원 행사경비 예산편성과 관련 하여는 환경미화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그 동안 비록 정규직 공무원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낮은 보수와 어려운 작업환경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퇴직 할 때마저도 차별을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미화원 퇴직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 예산편성시는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어긋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간부 공무원은 예산편성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불

명확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예산심사에 혼란을 주기도 하였음.

○ 또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례 답습적이며 삭감을 예상하여 과다 편성, 같은 사업임에도 내용을 분산하여 이중적 편성, 일부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에 예산 과다편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원 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계속하여 편성 의결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으로 북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6절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5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3. 6. 25

(제6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9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3. 6. 16 ~ 6. 25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액	기정예산액 (2003 당초)	증 감	
			금 액	비 율(%)
계	**66,849,647**	**56,572,463**	**10,277,184**	**18.2%**
일 반 회 계	66,049,529	55,941,852	10,107,677	18.1%
특 별 회 계	800,118	630,611	169,507	26.9%
새마을소득 별지원사업	236,000	236,000	-	-
의료급여기금	29,817	21,750	8,067	37.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6,756	66,756	-	-
주 차 장	467,545	306,105	161,440	52.7%

3.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66,864,302	14,655	772,889	1.1	1,195,979	1,954,213	66,849,647	2,005,489
일반회계		66,064,184	14,655	772,325	1.1	1,002,425	1,760,095	66,049,529	1,981,486
기타특별회계		800,118		564		193,554	194,118	800,118	24,003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36,000				35,280	35,280	236,000	7,080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29,817				400	400	29,817	895
기타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66,756				6,533	6,533	66,756	2,002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467,545		564		151,341	151,905	467,545	14,026

4. 심의결과 의견요지

□ 세 입

○ 세입부분에 있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6,849,647천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277,18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 1,700,016천원, 특별교부금 750,000천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3,712,629천원, 시비보조금 3,805,62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위와 같이 세입 증가액 중 80%정도가 의존재원임을 볼 때 담당 공무원이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여겨지나,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액이 제1회 추경시 삭감되어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 앞으로 개발수요는 무한한 반면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구의 지역여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세 출

○ 세출부분에 있어 추경예산 편성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복지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소모성·행정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편성에 과다한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음.

○ 특히,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연례적으로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고,

○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개관 및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0배정도가 증가한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 구체적인 검토 없이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그리고, 일부 간부 공무원은 예산편성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심의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제7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27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3. 7. 16

(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제9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3. 7. 7 ~ 7. 16

라. 심의결과 : 승인의결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75,501,048,560원
- 세출결산액 : 49,528,367,320원
- 세계잉여금 : 25,972,681,240원

○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98,005,470원
- 세출결산액 : 40,360,000원
- 세계잉여금 : 157,645,470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74,124,640원
- 세출결산액 : 59,214,050원
- 세계잉여금 : 0원

○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01,335,220원

- 세출결산액 : 61,000,000원
- 세계잉여금 : 40,335,220원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액 : 504,536,930원
- 세출결산액 : 311,096,070원
- 세계잉여금 : 193,440,86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 입

○ 잡수입 계정의 경우 징수결의서와 세외수입 장부기재 시 착오 및 누락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수개월이 경과된 후 수정하였고, 또한, 장부내용을 검산한 결과 잘못 기록된 사례가 있었음.

○ 세외수입의 기록의 경우 항목의 세분화 단계가 너무 많아 장부기록에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오고 있었으며, 심지어 세분화 단계가 최대 5단계까지 구분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는 동일한 내용을 다섯 번이나 기록해야 하는 부담과 장부기록의 부실원인이 되고 있어 과감히 통합하여 장부관리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과연도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과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고질적 체납자 등 미수납 원인별 징수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세 출

○ 보조금의 경우 구민 혜택을 위한 최대한의 집행으로 집행 잔액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전세계약금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민간경상보조금 목에 4천만원을 증액한 후 다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사례는 예산편성 시 목 구분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산전용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자금배정의 경우 실과와 동에 배정된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계속 배정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배정계획 수립 운용하여 자금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4,555,52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754,941,760원, 수납액은 75,501,048,560원으로써 9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체납액은 총 6,511,658,000원으로써 이중 구세가 894,290,000원, 시세가 5,617,368,000원임.

○ 이는 당해연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다고 여겨지므로 이후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북구는 지역특성상 재정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전 실·과·소에서는 자체재원 이외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세 출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을 확정적인 계수로써 표

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사업비, 경상비 등 예산편성 시 사전 충분한 조사도 없이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예산전액을 불용시키는 사례도 있는 등 이는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차후,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을 집행하고 국비 164,608,000원과 시비 164,194,000원 등 총 328,802,000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구민 복지에 최대한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까운 예산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됨

○ 그리고,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과 관련한 음식물 수거 인부 8명에 대하여는 음식물 수거 업무의 성격상 1년 내내 사역하여야 하나, 현재 280일까지 사역할 수 있는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하고 있어 음식물수거 인부 사역목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1년 내내 사역 가능한 상용인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함

○ 대부분의 공사가 사업예산 편성 후 공사 준비 단계시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규모가 큰 공사는 거의 대부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므로 예산이 성

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그리고, 결산 각목명세서의 부서별 누계 미기재로 인하여 결산 심의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다음연도부터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의 보완을 촉구함.

○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전세계약금의 경우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시 민간경상보조금 목에 4천만원을 증액한 후 다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사례는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편성으로 여겨지므로 보다 세밀한 주의를 촉구하며, 차후, 예산전용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것이며,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 신청만 하면 주는 그런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실제 사업의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하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함.

제8절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27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3. 7. 14

(제6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제9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3. 7. 7 ~ 7. 16

라. 심의결과 : 승인의결

2.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예 산 액 : 2,247,546,000원
- 지출결정액 : 222,749,000원
- 지 출 액 : 180,180,310원
  - 공직선거경비 추가지급외 2건
- 지 출 잔 액 : 42,568,690원

3.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므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의견 요지

○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47,546,000원으로써 공직

선거경비 추가 지급외 2건에 222,74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0,180,310원을 지출하고 42,568,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피해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해당부서의 안일한 사고로 인한 미온적인 대처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 또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필요 이상의 소요사업비를 산출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음.

○ 차후, 예비비 집행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사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함

제9절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4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3. 10. 18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9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3. 10. 9 ~ 10. 18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액	기정예산액 (제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2,382,110	66,849,647	5,532,463	8.3%
일 반 회 계	71,528,098	66,049,529	5,478,569	8.3%
특 별 회 계	854,012	800,118	53,894	6.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36,000	236,000	0	-
의료급여기금	50,967	29,817	21,150	70.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6,756	66,756	0	-
주 차 장	500,289	467,545	32,744	7.0%

3.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72,382,110	20,000	281,000	0.3	1,175,357	1,416,357	72,362,110	2,710,864
일반회계		71,528,098	0	261,000		953,395	1,214,395	71,528,098	2,145,843
기타특별회계		854,012	20,000	20,000 (예비비)		221,962	201,962	834,012	25,021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36,000	0			35,280	35,280	236,000	7,080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50,967	0			400	400	50,967	1,529
기타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66,756	0			6,533	6,533	66,756	2,003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500,289	20,000	20,000		179,749	159,749	480,289	14,409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세입부문에 있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6,849,647천원보다 5,512,463천원이 증가된 72,362,11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 정확한 세수추계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비로 조기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세입추계로 인하여 수개월간 사업예산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이월금은 결산 후 익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2회 추경에서조차 편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순 세계 잉여금이 결산금액 보다 추가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의 원칙과 질서가 무시되어 있음.

○ 계속적인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 공무원은 예산편성 내용을 사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들은 소관업무만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여 의원들의 질의 시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세 출

○ 세출예산은 총 8건에 281,000천원이 삭감된 72,362,110원이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와 같음.

○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재해복구비 그리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필수불가피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편성의 목적과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절차와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 예산의 부기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은 물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고, 특히 일부사업은 의견수렴과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로 편성하는 자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업무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연구도 없이 처리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 재정이 13만 북구 구민의 혈세임을 인식하여 사전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 또한, 날로 증대하는 주민의 욕구를 열악한 구 재정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이고 형평성 있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있고 소신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임.

제10절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2. 12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3. 12. 26

(제6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3. 12. 20 ~ 12. 26

라.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액	기정예산액 (제2회추경안)	증 감	
			금 액	비율(%)
계	79,762,847	72,362,110	7,400,737	0.10%
일 반 회 계	78,954,396	71,528,098	7,426,298	0.11%
특 별 회 계	808,451	834,012	△25,561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08,896	236,000	△27,104	-
의료보호기금	50,967	50,967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68,299	66,756	1,543	-
주 차 장	480,289	480,289	-	-

3.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79,762,847	-	-		2,214,094	2,214,094	79,762,847	2,392,886
일반회계		78,954,396	-	-		1,927,693	1,927,693	78,954,396	2,368,632
기타특별회계		808,451	-	-		286,401	286,401	808,451	24,254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08,896	-	-		118,176	118,176	208,896	6,267
	의료보호기금	50,967	-	-		400	400	50,967	1,52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68,299	-	-		8,076	8,076	68,299	2,049
	주차장	480,289	-	-		159,749	159,749	480,289	14,409

4. 심의결과 의견요지

○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도시교통과의 경우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액 32,155천원은 2002년도 세출결산서상의 수치 29,452천원과 2,703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담당공무원이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 정산과정에서 비율에 맞지 않게 정산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곤란하며,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판단되니 향후 보조금사업 시행시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준과 원칙을 준수함은 물론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예산안이 반드시 일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또한, 부서별 계획된 사업이 시행조차 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예산과, 과다한 추계로 인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 등에 대해서는 결산추경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산출근거와 계획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제11절 2004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20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3. 12. 20

(제6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3. 12. 4 ~ 12. 17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4예산액	전연도예산액 (2003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7,587,091	56,572,463	11,014,628	19.47%
일 반 회 계	66,753,288	55,941,852	10,811,436	19.32%
특 별 회 계	833,803	630,611	203,192	32.2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32,000	236,000	△4,000	△1.69%
의료보호기금	41,000	21,750	19,250	88.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43,695	66,756	△23,061	△34.54%
주 차 장	517,108	306,105	211,003	68.93%

3.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67,587,091	1,010,856	2,833,359	4.2	1,134,912	2,957,415	66,576,235	1,997,287
일반회계		66,753,288	1,010,856	2,833,359	4.2	1,036,341	2,858,844	65,742,432	1,972,273
기타특별회계		833,803	-	-		98,571	98,571	833,803	25,014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32,000	-	-		82,000	82,000	232,000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41,000	-	-		-	-	41,000	
기타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43,695	-	-		3,495	3,495	43,695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517,108	-			13,076	13,076	517,108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4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56,572,463천원보다 11,014,628천원이 증액된 67,587,091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음.

○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액은 지방세수입 1,918,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001,705천원 국시비보조금이 7,001,716천원이 증가되었음

○ 이중 국·시비보조금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2.5%가 증가되어 부족한 자체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의존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좋은 사례이나,

○ 한편 그간 북구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많은 주민편익 사무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앞으로 또한 많은 사업이 시행될 것을 감안하였을 때 확보된 예산집행 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이 사장되거나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간부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시행 시 구비부담으로 재정운영이 경직화 될 우려가 있으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사업을 시행하길 바람.

□ 세 출

○ 2004년도 당초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예산액은 11,014,628천원이 증액되어, 이중 경상예산은 총 증액된 248,576천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 예산 편성안은 전반적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비 투자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경상경비 편성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한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통·리·반장보상금 인상 등으로 법적·경직성 경비의 불가피한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전 신축시설비에 포함되어야 할 시설예산이 추가로 요구되었음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세세한 장비나 물품구입비까지 계상하는 등 구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방만하게 편성되었으며,

○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특정단체에게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여야 함에도, 연례적으로 지원했던 일회성 행사경비와 친목도모의 실효성 없는 사업비 지원금을 편법적으로 편성요구하는 등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였음.

○ 또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 없이 수립되어 예산편성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동별 나눠먹기식 사업예산편성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단일연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책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 각종 단위업무별 소요예산을 편성하고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시 사업추진내용이 즉흥적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과 근본취지를 간파하지 못하는 등 계속적인 의회의 지적에도 간부공무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숙지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업무에 대한 불명확한 답변으로 예산이 추가 삭감되는데

대한 책임성을 느껴야 할 것임.

○ 환경미화과의 재활용수집운반 및 선별 대행료 민간위탁금 예산은 그동안 수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체계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요구 했음에도 전혀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아 5개월간의 예산만 의결하였음을 깊이 인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또한, 지역경제과의 노동자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비수혜 계층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집행에 있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2004년도에 야심 있게 추진코자 제시한 각 부서별 특수시책이 시책으로써 채택되기까지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거쳤는지 의심이 갈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으로, 예산이 확보된 시책이라도 실효성이 없는 시책은 과감하게 지양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력운용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함.

○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복리증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현상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된 목표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바람.

제12절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5. 31 (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4. 6. 19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9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2004. 6. 10 ~ 6. 19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4예산액	기정예산액 (2004 당초)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5,997,793	66,576,235	9,421,558	14.2%
일 반 회 계	75,108,261	65,742,432	9,365,829	14.2%
특 별 회 계	889,532	833,803	55,729	6.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62,402	232,000	-69,598	-30.0%
의료급여기금	51,303	41,000	10,303	25.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37,708	43,695	-5,987	-13.7%
주 차 장	638,119	517,108	121,011	23.4%

3.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사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75,997,793	1,210,856	1,261,156	1.6	1,533,529	1,583,829	74,786,937	2,243,608
일반회계		75,108,261	1,210,856	1,238,156	1.6	1,376,678	1,403,978	73,897,405	2,216,922
기타특별회계		889,532		23,000		156,851	179,851	889,532	26,686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62,402				112,402	112,402	162,402	4,872
	의료보호기금	51,303				400	400	51,303	1,53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37,708				2,508	2,508	37,708	1,131
	주차장	638,119		23,000		41,541	64,541	638,119	19,144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66,576,235천원 보다 9,421,558천원이 증가된 75,997,79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1,000,000천원, 세외수입 2,661,386천원, 지방교부세 99,000천원, 지방양여금 -108,842천원, 조정교부금 2,085,227천원, 국·시비보조금 3,684,78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편성의 경우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의 추계를 해야 함에도,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16억을 증액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사업별 담당 공무원이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액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러우며, 향후 세밀한 검토·분석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세 출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계속사업의 부족분,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례도 있었음.

○ 그리고, 행사예산의 경우 실효성 없는 내용의 지원 불필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성·선심성 등 낭비적인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반드시 지양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 및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연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 어느 정도 자생능력이 되면 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숙지 소홀 및 사전 답변준비 부족으로 예산 심의 때 마다 의원들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러우며, 사전 간부 공무원들이 담당업무 연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족이 아쉬운 실정임.

○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과다 반납하는 사례는 향후,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 잔액 반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무룡산 헌수운동 기념동산 조성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무룡산 개발계획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솔라 2004 프로젝트 태양광 및 태양열사업, 지열에너지 사업』은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에너지절약 정책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수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행정사무감사 제 5 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 1 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 2 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 3 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 4 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 5 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 6 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 7 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 8 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강동 정자항 일출

제1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감사의 기간 : 2002. 11. 26 ~ 2002. 12. 2 (7일간)

다. 감사의 주체 : 본 회의

○ 의　　장 : 김 진 영
○ 부 의 장 : 김 재 근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김 찬 수
○ 사무직원 : 이 석 원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장	이상범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강한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총무국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건축과장	박기봉		
	○보건소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 동	농소1동장	조충래		
		농소2동장	최효원		
		농소3동장	김지호		
		강동 동장	성낙화		
		효문 동장	조계현		
		송정 동장	김영식		
		양정 동장	김현옥		
		염포 동장	김덕룡		

3.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제출요구 현황(제57회 임시회, 2002. 11. 14.)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14건	17	22	58	45	55	14	3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행정사무감사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부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02. 11. 26 (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 민원봉사과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2. 11. 27 (수)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지방세과	
2002. 11. 27 (목)	10 : 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2002. 11. 28 (금)	10 : 00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2000. 11. 29 (토)	10 : 00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허 가 과	
2000. 11. 30 (일)	10 : 00	〃	○현장확인	
2000. 12. 1 (월)	10 : 00	〃	○보 건 소 ○의회사무과 ○전부서 부문별	

※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실·국·소·과장·동장 합동 실시 - 27명

(국장3명, 소장1명, 실·과장15명, 동장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라. 기타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2. 11. 26 ~ 2002. 12. 2(7일간)

- 출석장소 : 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 외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감사지적사항 당일 제출

○ 현장확인 활동

- 현장확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반준비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제2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2. 11. 26 ~ 2002. 12. 2 (7일간)

다.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총 무 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의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김 진 영	김 재 근	이 재 경 김 대 영 윤 임 지 류 재 건 류 인 목 하 인 규	김 찬 수	이 석 원

나.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2002.11.26 (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 민원봉사과	
2002.11.27 (수)	10 : 00	〃	○총 무 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지방세과	
2002.11.28 (목)	10 : 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2002.11.29 (금)	10 : 00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2002.11.29 (금)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2002.11.30 (토)	10 : 00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허 가 과	
2002.12.1 (일)	10 : 00		○현장확인	
2002.12.2 (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전부서 부문별	

다.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14**	**31**	**1**	**214**
공 통 사 항	17			17
기 획 감 사 실	22	1		22
총 무 국	58	14		58
경 제 사 회 국	45	7	1	45
도 시 건 설 국	55	7		55
보 건 소	14	1		14
의 회 사 무 과	3	1		3

마. 감사결과 모범사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 부서	계	모범사례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41**	1	**17**	**23**
공 통 사 항	1		1	
기 획 감 사 실	2			2
총 무 국	15	1	7	7
경 제 사 회 국	10		4	6
도 시 개 발 국	12		5	7
보 건 소	1			1

바. 현장확인 감사

□ 농소3동사무소, 매곡천

○ 일 시 : 2002. 12. 1(일) 14:00

○ 내 용 : 동사무소 신축 현장 및 매곡천 정비현장 확인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총무과, 건설과(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 보건소 및 문예회관

○ 일 시 : 2002. 12. 2(월) 10:00

○ 내 용 : 보건소 및 문예회관 신축 현장 확인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총무과, 문화공보과

3. 주요감사실시 내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4">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1. 예산집행현황(일반. 특별회계 구분작성)
<table><tr><th>항목</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잔액</th><th>미집행사유</th><th>추경증감사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 rowspan="4">※항목은 세항,세세항,목 기재</td></tr>
<tr><td>2.분기별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
<table><tr><th rowspan="2">분기
목별</th><th colspan="2">계</th><th colspan="2">2001
11,12월</th><th colspan="2">2002
1/4</th><th colspan="2">2/4</th><th colspan="2">3/4</th><th colspan="2">4/4</th></tr><tr><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
3.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원인</th><th>민원내용</th><th>처리내용</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치</th><th>사업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정산내역(정산서 사본첨부)
- 2001.11. 1 ~ 2002. 10. 31
6.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
7.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
8.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현금 카드 지급 내역) (203-01)
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현금 카드 지급 내역) (203-03)
11. 각종기금 출연금 관리 및 운영현황
1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 내역
(2001년11월 1일 - 2002년 10월 31일 현재)
13. 각종 모니터요원 현황 및 실적(예산내역 있으면 현황)
14. 2002행정법규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5. 2001년예산 2002년도 이월사업(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16.집단민원 처리현황
17.공사금액 5천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tr><td>공사내용</td><td>변경사유</td><td>공사금액
증 가 액</td><td>설계변경
요 청 자</td><td>설계자</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td></tr>
<tr><td>기획감사실</td><td>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3. 풀(pool)보조금 집행내역
4.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5. 예비비 지출내역
6.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서류제출〉
7. 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
8.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현황
9.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10.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감사기간,지적사항,조치사항,징계처분사항)
※수범사례 및 모범공무원 발굴
11.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결과 및 조치사항
12. 대형 공사장 기동 감찰반 운영사항
13. 구정 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일자, 개최시간, 회의록 등)
14. 각종 통계조사 결과 및 활용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광공업통계조사, 사회지표 조사, 농어업총조사 - 구분작성</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기획감사실</td><td>15.법제심사현황
16.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17.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현황
18.지역정보센타 운영 및 이용현황
19.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감찰 현황
20.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21.일시사역 인부 운영실태(전부서 취합)
22.대학유치사업 추진현황</td><td></td></tr>
<tr><td>총 무 국
총 무 과</td><td>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2000, 2001)
2.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국·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2001. 11. 1 ~ 2002. 10. 31현재)
4. 불용물품(자재)현황 및 매각현황
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6. 각종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7. 하도급 계약(변경) 현황
8.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 구청재산현황(토지, 건물, 차량, 장비, 비품 등)</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총 무 국
총 무 과</td><td>
<table>
<tr><th>품 명</th><th>구입일시</th><th>취득가격</th><th>현잔존
가 액</th><th>폐 기
예정일시</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0. 소방도로 발주업체 하도급 실태현황
11. 구청대회의실 사용현황
12. 무인경보시스템
① 입찰내역(견적포함)
② 실적
13. 직원한마음 한뜻되기 예산내역
① 2000년 집행내역
② 2002년 계획
</td><td></td></tr>
<tr><td>자치행정과</td><td>
1. 민간인(단체) 포상자 내역
(2001.11.1 - 2002.10.31)
2. 동별 예산 집행현황
(2001. 11. 1 ~ 2002. 10. 31)
3.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실적
4.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과제별, 추진내용, 추진결과, 효과)
5. 민방위 시설물 현황 및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6. 120기동대 운영 실적
7.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
8. 동향보고 현황
<table>
<tr><th>일 시</th><th>건 명</th><th>주요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공보과	1. 체육지원관련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내역 2. 동네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현황 3.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4. 도서구입비 내역 및 공공도서실 운영현황 5. 노래방 및 청소년다중 이용시설점검 내역과 단속 실적 6. 무룡문화예술원 운영 현황 7.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8. 구 주관 체육, 문화행사 개최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부서) 9. 북구 사격팀 운영 현황 및 실적(운영비등) 10. 청소년관련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행사 및 지원 현황 및 정산서 11. 게임장 허가일 및 법규위반 업체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12. 구정홍보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13. 농소운동장 사용실태 ① 월별 신청단체 현황 14.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자료	
지방세과	1.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재산압류, 채권 확보내역 (건당 50만원이상) 2. 수입증지 제작 및 판매현황 3. 체납자 거소불명 현황내역(10만원이상) 4.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및 재부과한 건수 내용(건수, 금액, 사유)(10만원이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지방세과	5.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6. 조세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7.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 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9.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처리과정 및 내역 (시효소멸, 불납결손액 10만원이상) 10. 과년도 체납세 세목별 현황과 징수실적 (시세, 구세 구분) 11.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2001. 11. 1 - 2002. 10. 31) 1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실적 13. 세입목표(세목별)대 실적현황 14. 비과세, 면세, 세액감면현황(2001. 11. 1 - 현재) 15.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16.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 체납세징수 추진현황 및 대책 17. 이자수입 운영현황(통장사본 첨부)	
민원봉사과	1.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전산화추진실적〈도면제출〉 2.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 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4.구청 내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 (실과별 취합) 5.민원1회 방문처리제 현황 6.민원후견인제 추진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 - 배달업위주 (관내 행정처분 내역) 2. 가스업소 관리현황 3. 가스 집단공급시설 현황 4.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5. 지역중소기업 제품판로 촉진, 지원실적 6. 2001. 11. 1~2002. 10. 31까지 취업알선현황 7.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8. 업체별, 국별 외국인 취업현황 9.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2001년, 2002년)	
사회복지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현황 3.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관리현황 4. 아동, 복지지원 사업현황 (결식학생현황 및 소년, 소녀가장 지원실적 현황) 5. 의료대불금 내역 및 결손처분 현황 6. 경노당지원 및 북구 노인회운영 현황 (지원금현황 및 운영실적) 7. 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금 및 운영실적 ① 국·시·구비 년간 지원비 ② 예산현황 ③ 집행현황, food bank 등 기타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추진현황, 개선방안	

소관부서	세부요구자료내용	비 고
사회복지과	9. 사회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현황 10.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① 국·시·구비 년간 지원비 ② 현(現) 사업현황 ③ 년간 수익 ④ 수익금 집행내역 ⑤ 수익잔액 11. 청소년 자활관 현황 12. 어린이집 운영실태(5개소) ① 국·시·구비 지원현황 ② 집행현황	
환경위생과	1. 각 마을 공공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현황 및 관계서류 사본(우물, 약수터) 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불법영업(2001. 11. 1~2002. 10. 31) 단속실적 및 불법퇴폐업소 단속실적, 지적사항처리 관계서류 〈점검일지제출〉 (불법퇴폐업소단속실적, 지도내역)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사항〈서류제출〉 4.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사항 및 현황 5.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6. 오염물질 검사의뢰 단속건수 및 결과 조치내역 7.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화장실 청소 인력운영현황 (체육공원, 근린공원, 정자해변)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환경위생과</td><td>8. 해양오염물질, 유출현황 및 행정처분사항(해양경찰서 소관 2003년도에는 삭제 할 것)
9.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10.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11. 간이 상수도시설 업무추진현황(보수기준 및 예산집행현황, 현 실태 및 문제점 등 포함)
12. 2002년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신축 및 운영 관리현황</td><td></td></tr>
<tr><td>환경미화과</td><td>1.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관련 현황
- 위탁관리비용
- 위탁업체 미화원현황, 봉급지급내역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1, 2002) 및 담당구역현황
5.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6. 세탁업소, 자동차 경·정비 업소, 세차장 폐기물 처리 현황
7.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8. 쓰레기처리 관련 용역현황
9. 분리수거 추진실태
10.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11.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① 매출실적
② 국·시·구비 년간 지원비
12.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가구별 지급현황</td><td></td></tr>
<tr><td>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td><td>1.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동별현황)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자 조치사항
3. 호계·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척내역 및 문제점 등 업무추진현황
4. G.B해제 관련추진현황
5.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6. 공영 유료주차장 사업실태 현황
<table>
<tr><th>위 치</th><th>사업자</th><th>주차공간
(대수)</th><th>납입금액</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상안교 연결도로 대책
8.호계구획정리내 하수구관리 문제점 및 침수대책
9.효문국가공단
10.도시계획관련 용역업무 추진현황
11. 화물차 차고지 현황
<table>
<tr><th>사업주</th><th>차 고 지</th><th>허가대수</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12.농소1동사무소앞 기존도로 도시계획 변경내역
13.도시계획수립후 장기미집행 소방도로, 공원의 동별계획 내역 및 대책</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건 설 과</td><td>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하천부지 점 사용허가현황 및 내역
3.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4. 긴급도로 복구비 사용내역
5. 북구관내 가로등 전기료 월별현황
6. 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7. 침수예상지역 하수구 정비실적
8. 가로등 보수업체 보수실적 및 계약자료
<table><tr><th>민원접수 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r></table>9. 가로등, 보안등 전산관리 추진현황
10. 농소 구국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용역업무 추진 현황(문제점 및 대책)
11. 매곡천 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공사 내역
12. 신천천 다리 밑 도로개설 현황
13. 새마을아파트 지원예산 집행현황</td><td></td></tr>
<tr><td>농림수산과</td><td>1.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2. 수산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3. 농지무단전용현황 및 처리결과
(2001. 11. 1 - 2002. 10. 31)
4. 농지거래허가신청 및 자격취득 발급현황
5. 방치 폐어선, 무등록 어선등 범칙어선현황 및 행정처분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농림수산과	1.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2. 수산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3. 농지무단전용현황 및 처리결과 (2001. 11. 1 - 2002. 10. 31) 4. 농지거래허가신청 및 자격취득 발급현황 5. 방치 폐어선, 무등록 어선등 범칙어선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6.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7.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8. 가로수관리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현황 (근린공원포함) 9. 구 보유 양수기 및 기타 영농장비 보유 관리현황 10. 임도 개설·보수 현황 및 업체계약내역 11. 육림 및 조림사업 현황 1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및 내역 13. 공유수면 매립지임대 현황 과 현 임대료산출근거 14. 2002 한해대책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15. 전복 치패사업 투자현황 및 실적분석 (2001. 11. 1 ~ 2002. 10. 31) 16. 강동 석산허가 관련자료 및 사후관리 사항 17. 미곡처리장 예산지원 내역 (구청 개청후 ~ 현재까지) 18. 친환경농업축사관련 추진현황 19.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 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허 가 과	1. 무허가건물 단속 및 조치내역 2.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3. 건축허가 미준공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4.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내역 5.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현황 6.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내역 7. 재해위험건물현황과 행정지원 대책 8. 농지전용현황 및 처리결과 9.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현황 10.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현황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전염병 예방활동 내역 및 법정 전염병환자 관리 실태(1, 2, 3종) 3.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4. 약국·병의원 현황 및 의료기관 관리현황 (개소 및 폐업사항 등) 5.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6. 보건소 진료이용자 거주별 현황 및 동별 진료순회 운영실적(월별현황) 7. 주요약품 구입내역(단가) 및 관리현황 8. 의료장비 관리실태 현황 9.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보 건 소</td><td>10.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환자 관리실태
11.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백신구입현황 및 예방접종 실적
12.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13. 의약분업에 따른 지도점검현황
14. 동별 간호방문 현황
(방문일수)
<table>
<tr><th>월
동별</th><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r>
<tr><td>농소1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2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3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강동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효문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송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양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염포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r><td>의회사무과</td><td>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td><td></td></tr>
</table>

제3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의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02.11.26~12.2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임위원회가 없어 본회의에서 구정 전 업무를 감사함으로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었으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정확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매년 감사지적사항인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여 각종자료의 내용 및 수치 특히 똑같은 사항인데도 자료마다 숫자가 틀린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실·과 관계공무원의 업무파악 미흡으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았음.

○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는 각종 안건 심사시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 지방세과의 항공기 정치장 유치로 연간 약 5천여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킨 사례는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모범사례로서 널리 귀감

이 되는 일이며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속에서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행정여건이 타구에 비해 몹시 열악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공무원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 각종 문제점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소홀 과 예산집행 부적절 등 시정요구 17건과 건의사항 23건으로 총4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결과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 · 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40	36	4		17	15	2		23	21	2	
공 통		1	1			1	1						
기 획 감사실		2	2							2	2		
총무국	계	14	13	1		7	7			7	6	1	
	총무과	6	5	1		3	3			3	2	1	
	자 치 행정과	2	2			2	2						
	문 화 공보과	3	3			1	1			2	2		
	지방세과	1	1							1	1		
	민 원 봉사과	2	2			1	1			1	1		
경제사회국	계	10	10			4	4			6	6		
	지 역 경제과	2	2							2	2		
	사 회 복지과	2	2			1	1			1	1		
	환 경 위생과	3	3			1	1			2	2		
	환 경 미화과	3	3			2	2			1	1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도시건설국	계	12	9	3		5	3	2		7	6	1	
	도시교통과	4	2	2		2		2		2	2		
	건설과	3	3			2	2			1	1		
	농림수산과	2	1	1		1	1			1		1	
	허가과	3	3							3	3		
보건소		1	1							1	1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공통사항 (시 정)	1.감사자료 작성 소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2년 11월 16일 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현황, 추진상황, 근거서류 등을 빠짐 없이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각종 사업 및 통계 자료 등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과의 경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감사자료의 공사금액 수치가 상의하거나 수치자체가 잘못 기록되어 확인소동이 벌어지는 등 매년 같은	○직원교육 실시 등 • 일시 : 2002. 12. 27 • 대상 : 실·과·소별 주무담당 차석(15명) • 교관 : 기획감사실장 • 장소 : 감사장 • 내용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 추진상황, 결과 근거서류 등 작성 및 제출에 철저 - 각종사업정산 및 통계자료 등의 수치가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할 것이며, 특히, 건설과 등 사업부서에서는 보고내용과 공사금액 수치가 상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과 특단을 강구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항에 대한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므로 이후로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 할 것을 요구함.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시에는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감사자료가 작성·제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작성방법에 대하여 담당팀별 차석 전체 직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 획 감사실 (건 의)	1. 중복감사 지양 ○2002년도에 자체, 울산광역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함으로서 감사준비 및 수감으로 인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사기저하는 물론 동일업무에 대한 중복감사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전에도 이에 대한	○중복감사 지양을 위한 감사 방법 개선건의 • 일시 : 2003. 1. 16 • 건의 :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 건의내용 기초자치단체의 중복 감사 수감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지방자치사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방법 개선 건의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던 바 상급기관에 건의 등으로 중복감사 지양을 건의함.	○금후 추진계획 • 상부기관의 중복감사 지양을 위한 지속적 협의 실시	
기 획 감 사 실	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목적이 소규모이면서 시급한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의 탄력적인 예산운용임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기 바라며, 농림수산과의 공중화장실 주변 조경공사와 같이 시급한 주민생활민원이 아닌 것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은 추경예산편성 기간동안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나 주민불편 사항중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할 것이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완 결
총 무 과 (시 정)	1. 보건소 신축 부실시공 ○구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약 60여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중인 보건소	○2002.11.21:구조안전진단 의뢰 -(주) O.S구조 엔지니어링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가 부실 시공으로 2002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되어 구민에게 염려를 끼친건에 대하여 첫째, 1층과 지하층 2개의 기둥이 불일치하고 둘째, 지하층 벽보높이가 10㎝ 부족하며 셋째, 지하층 램프하단부의 보 생략으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첫째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둘째 이 문제와 관련된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가려 징계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기 바라며 셋째 차후 집행부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2002.11.29 :구조안전 검토보고서 제출 -벽보높이 10cm부족부분 및 지하층램프 보 생략부분은 구조안전에 이상없음 -1층기둥과 지하층기둥 불일치부분은 보의 내력부족으로 기둥 보강 필요 ○ 2002.12.02 : 구조안전 검토 결과서의 보강 방안대로 보강토록 지시 ○ 2002.12.30 :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보강공사 완료 ○ 2002.12.27 :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4규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 -금미건설(주), 현장소장, 엠케이산업 현장대리인 : 부실벌점 2점 -도원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건축감리원 : 부실벌점 3점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차후 책임감리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총 무 과 (시 정)	2. 농소3동사무소 신축 보완 ○농소3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청사 2층 북쪽 창문을 유리블록 내지는 문화의 집 인테리어 공사로 차폐시켜 민원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를 식재하여 시야를 차단시키고자 한 것은 이중시공으로 예산낭비임을 지적하고 청사진입로 구배가 지나치게 높아 차량 진·출입이 불편하므로 개선하기 바라며 조경공사를 형식적이고 조잡스럽게 마무리한 부분과 조경설계에도	○청사진입로는 재시공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구배를 조정하였으며, ○청사전면 옹벽 상단에는 장미 및 사철나무, 산수유, 잔디를 보완시공 하였고, ○청사마당 산벽에 대하여는 주목 및 소나무 일부는 제거하였고, 동백은 생육상태 등을 관찰하여 추후 조치할 계획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없는 소나무와 동백을 식재한 것에 대하여 시정 요구함.		
총 무 과 (건 의)	3. 공유재산 무상지원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이나 보전재산은 지방재정법상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무상으로 대부, 양여, 사용·수익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청사내 일부 사무실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상임대 사용토록 함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 요구함.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이전 공문발송 - 2003. 1. 14	완 결
총 무 과 (건 의)	1. 국·공유지중 농지 임대 ○국·공유지중 농지를 임대할 시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국·공유재산 중 농경지는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 하여야 함. ○현재 경작이 가능한 농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경지는 대부자가 있으며 규정상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가 가능하므로 기존 경작자가 대부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특정인(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신규 대부는 어려움. ○기존 대부자가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생활이 어려운 자가 원할 경우 우선 대부를 검토하겠음.	
총 무 과 (건 의)	2. 청사내 주차장 대책 ○청사내 주차선 외에 주차를 함으로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라며, 현재 청사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소와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주차문제는 더욱	○현재 설치되어있는 청사뒤 주차장 중 직각으로 되어 있는 주차선을 60도 경사지게 설치하고 청사 뒤쪽 건물벽과의 사이에는 평형주차선을 그어 주차면 추가 확보계획 (11면 증가)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총 무 과 (건 의)	3. 농소3동사무소 신축관련 민원해결 ○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김용우씨 소유의 북구 상안동 833번지 일원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박재환씨가 자신의 소유인 북구 상안동 380번지 일원의 1,650㎡을 무상기부채납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신축부지를 변경함으로서 김용우씨는 신축부지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농소3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선정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손실보상대상이 아님.	완 결
자 치 행 정 과 (시 정)	1. 민방위급수시설 일반가정집 급수 시정 ○ 민방위급수시설은 비상시 급수를 위한 공공시설임	○ 2002.11.20부로 수도관로를 이용한 급수는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에도 신천동 633-1번지에 위치한 민방위 급수시설은 인근주민 48세대에 식수를 공급토록 함으로서 평상시에 공공시설인 민방위 급수시설을 특정지역주민에게 사용토록 함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시정요구 함.	중단하였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설치 건의 ○아파트내 지하수 1개소 추가 개발하여 생활용수 해결	
자치행정과(시정)	2.제2건국위원회 실적미비 및 자료 제출 부실 ○제2건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는데도 2002년도 제2건국위원회의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이 전혀 없음은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증거이며 또한 이런 여론이 많으므로 위원회의 폐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가 당초	○2002년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임원등은 행위제한 대상자로 활동실적 미비 ○2003년도에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문 화 공 보 과 (시 정)	1.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 ○보조금은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전체 구민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북구볼링협회에는 제3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와 제3회 북구생체회장기 볼링대회에 각각 지원해 주므로서 이중지원은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임으로 시정 요구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책무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구청장배 대회와 구 생활 체육협의회장배대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는 종목별 구청장배대회만 보조 지원하고 구 생활체육협의회장배대회는 별도 보조금 지원 없이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율 판단 추진 토록할 계획임.	완 결
문 화 공 보 과 (건 의)	1.무룡문화예술원 용도변경 제고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현 무룡문화예술원을 현재 신축중인 북구문예회관으로 이전 한 후 청소년수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람.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시 주변 여건을 최대한 고려토록하겠으며, 사후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화 공 보 과 (건 의)	2. 생활체육 각 종목별대회 일원화 ○생활체육의 종목별 대회를 매년 2회이상 분산 개최함으로서 보조금 등 행정지원의 이중 등 많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일원화하여 통합개최 등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봄·가을 중 적정한 날짜를 선정하여 1일 3~4개 종목을 통합개최토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임.	완 결
지방세과 (건 의)	1. 세입목표의 정확한 추계 ○세입목표 산정시 당초목표와 수정목표액의 차이가 큼으로 좀더 정확한 세입목표를 추계하여	○세입변동의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정해진 것은 추계의 근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예산이 적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 용이함. ○그러나 사업소세나 법인세할주민세, 취·등록세 등은 경기활성여부, 부동산경기에 따라 격차가 많이 날수 있는 세목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흐름 파악은 물론 최근 3년간의 평균실적 분석등을 통하여 추계를 내고 있으나 특수요인이 발생시는 세입변동이 큰 점을 감안하여, 관내 대형사업장에 대한 매출실적등 세수 관련 자료 분석, 아파트 신규 등 대형건설 경기 파악을 비롯하여 세수와 관련한 경기현황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음	
민원봉사과(건의)	1. 친절한 민원안내 ○민원실은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청의	○직원 정신교육 -일시 : 2002. 12. 5 외 1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얼굴로서 친절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민원 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불친절과 최근 민원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내용 : 매월 직원, 일용, 공익요원 정신 교육 실시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 -일시 : 2003. 1월부터 매월 1회 -내용 : 담당부서를 통한 정신교육 실시협조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주 의)	2. 민원실 직원 타과 행사에 동원 지양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과의 행사에 동원되어 민원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다소 문제가 됨으로 지양하기 바람.	○업무시간내 타 과의 행사 등 동원시 민원창구 직원외 동원지원 ○필요 불가결한 인원동원시 업무대행자의 완벽한 업무처리	완 결
지역경제과 (건 의)	1. 석유류 제품 판매업소 단속 강화 ○정용 백등유 등 석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업소에서 유류량을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일반판매소의 법정계량용기 (전량눈새김탱크) 사용·배달 • 판매여부 일제단속 실시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여론이 있어 직접 20ℓ (1말)을 주문하여 측정해 본 결과 약 16ℓ 정도 밖에 안되어 유류량을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음이 사실이므로 석유류 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 단속횟수 : 3회 • 단속결과 - 적발업소 : 보경석유 - 적발내용 : 비법정 계량용기 사용·배달·판매 - 조치한 사항 : 고발조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말 유류 주문시 주문한 양이 정량인지의 여부는 현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말" 은 비법정 계량단위임므로 소비자는 법정계량단위인 "ℓ"를 사용하여 주문하여야 함. (1말의 법적부피량 : 18.039ℓ)	
지 역 경 제 과 (건 의)	2. 외국인 근로자 지원 ○우리북구 관내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사례 등이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지원책(처우개선책)으로 무료 진료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음 • 대상 : 관내 중소기업체 내 외국인 근로자 전원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심화되고 있으므로 설사 불법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사업내용 -관내 중소기업체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 진료증을 발행하여 북구보건소 무료 진료 • 추진실적 : 27개업체 120매(명)배부 ※진료 : 61명 (내과 25, 치과 36)	
사 회 복 지 과 (시 정)	1. 자활후견기관 관리소홀 ○자활후견기관은 국·시비, 구비등 막대한 공공예산을 운영비 및 자활근로자 인건비 등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현 사업현황 및 수익금 집행내역 등을 제출토록하였으나 각종 회계관련 서류 및 정산서류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금	○직원 교육실시 (2002.12.29) • 각종 회계서류 및 정산서류의 미비점 보완지시 • 사업수익금 지출장부작성 및 관리 철저 지시 •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 제출 ○2003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자활 후견기관에 대하여 업무지도 점검을 하는 등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집행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각종 회계관련 서류 및 정산서류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금 지출의 불명확 등 감사자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되어 감사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자활후견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 요구함.		
사 회 복 지 과 (주 의)	2. 모자세대 전세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모자세대의 지원을 위하여 모자세대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적이 1건으로서 이용자가 너무 적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필요한 모자세대가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이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및 홍보계획 통보 (2003. 1.15) ○동별 주민 만남의 날을 통한 홍보 및 안내 ○2003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 및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 동별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 생 과 (시 정)	1.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 ○ 송정동 화산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은 탱크에 물이 가득 차면 계속 물이 넘쳐 낭비되고 있으므로 자동 잠금 장치 설치 등 시정 요구함.	○ 대리간이상수도 수위조절장치 설치계획 - 설치시기 : 2003년 3월경 - 소요예산 : 약 100만원 - 시설물 : 부력 정수위 밸브	완 결
환 경 위 생 과 (건 의)	1. 간이상수도 시설 ○ 현재의 간이상수도 시설들은 설치 된지 오래 되어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질 문제 등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간이상수도를 줄이고 시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 바람.	○ 우리구내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은 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시 상수도로 전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완 결
환 경 위 생 과 (건 의)	2. 환경오염 사범 단속강화 ○ 농소 1, 2동 경계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폐기물 무단 방치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으므로	○ 농소, 매곡동 일원의 중소재활용업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에서 침출수 발생 및 처리상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기 바라고 오·폐수 오염사범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는 물론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 불법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정상 처리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기 바람	시설 설치. 가동 여부 기타 환경오염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오염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과 근절에 노력하겠음.	
환경미화과(시정)	1.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수료 면제 부적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수료징수와 관련 수수료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아파트주민의 집단민원을 처리하면서 9월분 수수료를 관련 조례 제15조 제3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준 것은 수수료를 면제해줄 사유가 없음에도 조례를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확대해석 적용한 것임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함	○직원교육실시 (2003.1.9)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 검토 및 업무처리 철저 ○이후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 없으며, - 현재 40세대 이상 전체 공동 주택 음식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 화 과 (주 의)	2.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발효 흙 공급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590세대에 5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효 흙을 공급하였으나 완전 발효 불가, 구더기와 파리 등 해충 및 냄새 발생 등으로 주부들이 기피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실패한 사업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발효 흙을 구입한 수량과 지급한 수량이 맞지 않고 관리도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실시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	○직원교육실시 (2003.1.9) - 사업 추진시 충분한 자료수집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업무추진 - 단독주택에 대한 물품 수불 관리의 어려움이 많으나 철저한 대비책 마련 (통반장을 통한 각 세대 수불부 기록 관리 등) - 물품 수불기록 관리 철저	완 결
환 경 미 화 과 (주 의)	1. 공동주택 쓰레기통 관리 철저 ○공동주택에 있는 쓰레기통이 파손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관내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파손원인은 대부분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쓰레기 수거시 파손되는 경우임으로 현황조사 후 책임소재를 가려 보수 및 교체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업체(4개업체)와 200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시 이를 명시를 하였으며, 각 업체에 대하여 공문으로 시달하였음. (제11조 14항)	
도 시 교 통 과 (시 정)	1. 주·정차단속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및 표적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있음으로 단속은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지역 및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계도중심의 단속은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잠시동안의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해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많고, 만약 5분정도 계도시간을 준다고 해도 똑 같은 위반에 대해 5분은 단속이 안되고 1~2분차이로 단속이 된 다면 법규적용상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함. ○현장상황에 따라 교통흐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것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시 정)	2. 화물자동차 주·정차 단속 강화 ○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허가시 반드시 차고지를 두어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서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때 승용, 화물 구별 없이 모든 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단속시 불법주차한 화물차량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할 것임. ○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주차 한 대형화물차량은 단속법규가 없어 단속이 불가하며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화물차등록기관인 울산시에 건의하고 있음.	완 결
도 시 교 통 과 (건 의)	1.신상안교 접속도로 관련 ○ 호계구획정리지구와 신상안교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도로가 없어짐으로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크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며 국도7호선과 농소 시가지를 연결하는 철도횡단도로로 사용중이었으나, 철도 건널목이 이설되어 차량의 철도 통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된 것으로 철도 이전구간은 존치토록 하고 신상안교 접속도로 개설시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완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건 의)	2. 도시계획도로 변경 ○농소1동사무소 옆 소1-10호선 소방도로 도시계획결정이 농소1동 사무소에서 중3-97호선 도로까지 직선도로가 불과 몇 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현재 개설된 우회도로 형태대로 결정되어 도로가 기형화 된 것은 사업추진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잘못 결정된 것이므로 직선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변경하여 주기 바람.	○소로1류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소1-10호선은 2000.7.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1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존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검토기준에 따르면 미 개설구간은 폐지검토 대상이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존치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해줄 것을 울산광역시에 건의하겠으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도시 계획위원회의 권한사항 임.	완 결
건 설 과 (시 정)	1. 감사자료 부실 ○매곡천 정비 및 수지천 정비에 관한 감사자료를	○직원교육 실시 (`03. 1. 15)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제출하면서 공사금액 등 각종 수치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가 서로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공사 금액 등의 숫자를 잘못 기입함으로서 감사에 혼란을 주는 등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였음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 함.	- 향후 자료 제출시 각종 수치 나 오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	
건 설 과 (시 정)	2. 매곡천 정비공사 ○ 매곡천을 정비하면서 비록 건천이라 하지만 하천위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발상자체가 잘못이며 공원 조성도 현장확인에서 여러군데 부실시공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공원의 흙이 마사로서 비에 잘 씻겨갈 뿐만 아니라 지난번 43㎜의 강우량에도 곳곳에 흙이 유실되어 있고 공원 가장자리의 석축 및 일부나무 식재를 엉성하게 시공하는 등 현장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 매곡천 정비공사는 인근 주민의 부족한 여가활용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고자 시행했으며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02. 12. 20 보완시공조치 완료하였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완시공 및 하자보수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건 설 과 (건 의)	1. 각종공사 설계변경 지양 ○ 설계변경은 반드시 공사비가 증액되는 만큼 각종 사업 추진시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 검토 와 현실,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가능한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부득불 설계 변경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공사설계시 현장조사 측량을 보다 면밀히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설계시 공사감독 철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직무교육실시. (담당공무원 수시 교육실시)	완 결
농 림 수 산 과 (시 정)	1. 감사자료 부실 ○ 어물방파제 공사 등 각종 공사에 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사금액 등 각종 수치가 맞지 않고 오타가 많아 감사에 혼란을 주는 등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였음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함.	○ 차후 자료 제출시 각종 수치나 오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주의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건 의)	1. 청사 내 기념식수 관리에 만전 ○청사내에 있는 각급 단위의 기념식수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념식수는 청사준공 등 을 기념하기 위해 식수한 의미있는 나무로서 고사목은 같은 수종의 교체 식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1본 교체식재 - 수 종 : 주목→소나무 - 교체사유 : 토양배수 불량 및 기후조건 악화로 고사됨 ○배수기반 조성실시 - 광역시장 기념식수 외 1본 ○광역시장기념식수교체 식재 (3월중)	완 결
허 가 과 (건 의)	1. 공동주택허가 관리에 만전 ○달천철장 부지의 공동주택 허가는 현행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사업주가 공공시설 부지확보를 피하기 위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서 이 지역에 앞으로 학교 신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공동주택 허가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현재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새마을아파트재건축」, 「대안동 다세대주택200세대」 건에 대하여 각종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달천동의 그린카운티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허 가 과 (건 의)	2. 미준공 건물 관리철저 ○관내에 미준공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청소년 탈선장소 등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공사도중 사업자 부도등으로 인해 중단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공사완료되었으나 위법시공 및 이해관계인의 소송 등으로 인해 미준공된 건축물로 구분하여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및 조속히 공사재개토록 지시하고, 건축주사정으로 인해 미준공된 건축물은 조속히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독려하겠음. (분기별 점검계획수립 후 실시)	완 결
허 가 과 (건 의)	3. 농소3동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련 ○선은복지재단에서 허가를 신청한 농소3동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건립반대 민원이 충분히 예견되었음	○혐오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반발 등 민원발생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바, 장래 법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피해등 민원최소화 방안 등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에도 대책 없이 허가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판단되며 차후 지역주민에게 민감한 사안은 사전 민원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허가하여 주기 바람	대책수립 후 건축허가 하도록 하겠음.	
보 건 소 (건 의)	1. 방역철저 ○ 보건소는 보건예방행정이 중요하므로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요즈음은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실질적으로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역을 하여 주기 바람.	○ 겨울철 방역 소독기간을 자체 설정하여 11~12월에는 하수구 등 관내 방역취약지 33개소를 대상으로 동별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월에는 주로 겨울철 모기 서식처(복개천등) 및 주민들의 모기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방역소독 요청지역을 중심으로 모기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음	완 결

제5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2003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의 기간 : 2003. 11. 26 ~ 2003. 12. 2(7일간)

다. 감사의 주체 : 본 회의

○ 의　　장 : 김 진 영
○ 부 의 장 : 김 재 근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이 상 찬
○ 사무직원 : 정 미 옥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장	이상범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이상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무국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성낙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최효원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건축과장	박기봉		
	○보건소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 동	농소1동장	김경재		
		농소2동장	박민수		
		농소3동장	서강수		
		강동동장	이상헌		
		효문동장	구일우		
		송정동장	송태호		
		양정동장	김덕룡		
		염포동장	김현옥		

3.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03건	14	20	58	47	50	11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감사실시방법 및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부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3. 11. 26 (수)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 실 • 국 • 소 • 과 • 동장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 민원봉사과	
2003. 11. 27 (목)	10 : 00	〃	○총 무 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지방세과	
2003. 11. 28 (금)	10: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2003. 11. 29 (토)	10:00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허가과	
2003. 11. 30 (일)	10:00	(대상사무 현장확인)	○현장확인	
2003. 12. 1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설과	
2003. 12. 2 (화)	10:00	〃	○보건소 ○의회사무과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실·국·소·과장·동장 합동 실시 - 27명
(국장3명, 소장1명, 실·과장15명, 동장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라. 기타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2003. 11. 26 ~ 2003. 12. 2(7일간)

○출석장소 : 소회의실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외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감사지적사항 당일 제출

○현장확인 활동

- 현장확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반준비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제6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의 목적

○2003년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3. 11. 26 ~ 2003. 12. 2 (7일간)

다.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총 무 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의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김 진 영	김 재 근	이 재 경 김 대 영 윤 임 지 류 재 건 류 인 목 하 인 규	이 상 찬	정 미 옥

나.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장 소	감사대상 기관	비 고
2003.11.26 (수)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 민원봉사과	
2003.11.27 (목)	10 : 00	〃	○총 무 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지방세과	
2003.11.28 (금)	10 : 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2003.11.30 (금)	10 : 00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허 가 과	

일 자	시 간	감 사 장 소	감사대상 기관	비 고
2003.12.01 (토)	10 : 00		○현장확인	
2003.12.02 (일)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2003.12.03 (월)	10 : 00	〃	○보 건 소 ○의회사무과	

다.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 · 국 · 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 · 과 · 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 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03	28	1	203
공 통 사 항	14			14
기 획 감 사 실	20	1		20
총 무 국	58	15		58
경 제 사 회 국	47	5	1	47
도 시 건 설 국	50	5		50
보 건 소	11	1		11
의 회 사 무 과	3	1		3

마. 감사결과 모범사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모범사례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52	1	32	19
공 통 사 항	4		2	2
기 획 감 사 실	6		3	3
총 무 국	12	1	6	5
경 제 사 회 국	13		10	3
도 시 개 발 국	14		9	5
보 건 소	3		2	1

바. 현장확인 감사

□ 하수구 뚜껑 교체공사 현장 확인

○ 일 시 : 2003. 11. 29(토) 14:00

○ 장 소 : 양정동 및 염포동 일원

○ 내 용 : 하수구 뚜껑 공사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가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 참 석

- 의　　회 : 전 의원, 사무직원
- 담당부서 : 건설과(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준비)

3. 주요감사실시내용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작성)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colspan="4">예산액</th><th rowspan="2">집행액</th><th rowspan="2">잔 액</th><th rowspan="2">미집행
사유</th></tr>
<tr><th>합계</th><th>당초</th><th>1회
추경</th><th>2회
추경</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 rowspan="6">※항목은 세항,세세항,목기재</td></tr>
<tr><td>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
일자</th><th>처리
일자</th><th>민원인</th><th>민원
내용</th><th>처리
결과</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3.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사업
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td><td>
4.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현황
<table>
<tr><th rowspan="2">일시</th><th rowspan="2">장소</th><th colspan="2">참석인원</th><th rowspan="2">제목
(건명)</th><th rowspan="2">주요사항
처리결과</th></tr>
<tr><th>대상</th><th>참석</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
종류</th><th>용역비</th><th>착수
일자</th><th>완료
일자</th><th>용역
결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예산액</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반납내역</th><th rowspan="2">반납
사유</th></tr>
<tr><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서식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서식 1」
10.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1. 200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2. 2002년 예산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
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13. 공사금액 5천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4.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정산서 사본 첨부)
① 2003년도 사업계획서
② 국시구비 년간지원비
③ 2003년도 사업추진현황(실적)
④ 년간 총 수익금
⑤ 수익금 집행 내역
⑥ 수익 잔액</td><td></td></tr>
<tr><td>기획감사실</td><td>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 대학유치사업 추진현황
3.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위원명단 첨부)
: 전부서 취합
<table>
<tr><th>위원회명</th><th>설치근거</th><th>설치목적</th><th>위원장
(부위원장)</th><th>운영횟수</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일시사역인부 운영실태(전부서 취합)
<table>
<tr><th>부서명</th><th>성명</th><th>사역목적</th><th>사역기간</th><th>단가</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able>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5. 풀(pool)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서식 2」 6.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7.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현황 8. 추경반영 신규사업 현황(1,000만원 이상) 9. 2003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10. 주민참여제 추진실적 및 예산반영 내역 11.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12.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민사)수행사항 13.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사건별) 14. 규제개혁 실적 15.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16.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7. 대형 공사 구민감시관제 추진실적 18. 주요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9. 지역정보센타 운영 및 이용현황 20. 전실·과·동 월별 통신요금 납부 내역	
총 무 국 총 무 과	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2002, 2003) 2.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연수목적, 근무부서 등) 3.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2,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총무과</td><td>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5. 각종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6. 공사지체상금 징수 현황
7.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실적
8.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 직원 후생복지 추진 계획 및 실적
10.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① 국·공유재산 현황(하천부지 포함)
② 임대현황
③ 임대료 체납현황
④ 매각현황
11. 구청 재산현황(토지,건물)
<table>
<tr><th>품명</th><th>구입일</th><th>구입방법</th><th>취득가격</th><th>현잔존가액</th><th>폐기(매각)예정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2.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td><td></td></tr>
<tr><td>자치행정과</td><td>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2. 동별 예산 집행현황
(2002. 11. 1 ~ 2003. 10. 31)
4. 민방위 시설물 현황,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td><td></td></tr>
</table>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자치행정과	5.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교육내용, 강사 포함) 6.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 ②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 8.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동별) 9. 통장 근속 현황(동별) 10. 새마을금고 관리현황 ①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현황 ② 금고의 정관 변경현황 ③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문화공보과	1. 체육지원관련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내역 2. 동네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현황 3.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4. 노래방 및 청소년다중 이용시설점검 내역과 단속 실적 5. 구 주관 체육, 문화행사 개최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부서) 6. 게임장 허가일 및 법규위반 업체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7. 구정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8. 구정소식지 발간 및 배포내역 9. 농소운동장 사용실태 및 사용료징수 현황 (정비실적 포함)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문화공보과	10. 민간단체 주관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11. 어린이(기적의) 도서관 추진 상황 12. 북구문화예술회관 운영 실태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13.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 14. 생활체육협의회운영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서 사본첨부) ① 연간 지원비 ② 2003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③ 연간 총 수익금 ④ 수익금 집행 내역 ⑤ 수익 잔액	
지방세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 고액 체납자 조서 및 조치내역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10만원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조세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6.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 7.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처리과정 및 내역 (시효소멸, 불납결손액 10만원이상) 8. 지방세 중과세 부과징수 현황 9.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2002. 11. 1 - 2003. 10. 31)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지방세과	10. 세입목표대 실적현황(세목별) 11. 비과세, 면세, 세액감면현황 (2002. 11. 1 - 2003. 10. 31) 12.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13. 압류부동산 중 무배당금 내역 14. 이자수입 운영현황(통장사본 첨부)	
민원봉사과	1.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4. 재택전자민원 신청 및 처리실적 5.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및 주민만족도 조사 내역 6. 민원후견인제 추진실적 7.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실적 8.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실적	
지역경제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 (행정처분 내역) 2. 가스업소 관리현황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 결과 4.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실적 5.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 6. 고용촉진 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 내역 포함) 7.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8. 업체별, 국별 외국인 취업현황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9.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2003년, 2004년) 10. 달천농공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실적 11.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실적	
사회복지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현황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4. 아동, 노인, 여성복지 지원사업 현황 5. 의료대불금 내역 및 결손처분 현황 6. 경로당 및 북구노인회 지원 현황(실적) 7. 종합사회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 8. 노인의 달 및 가정의 달 행사 개최 내용 9.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10.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11. 경로당 개·보수 내역 12.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배부현황 13.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 운영실태 14.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① 2003년도 사업계획서 ② 국시구비 년간 지원비 ③ 2003년도 사업현황(실적) ④ 연간 총 수익금 ⑤ 수익금 집행내역 ⑥ 수익잔액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사회복지과</td><td>15. 태연재활원 운영 현황(임·직원 명단포함)
① 2003년도 사업계획서
② 국시구비 년간 지원비
③ 2003년도 사업현황(실적)
④ 연간 총 수익금
⑤ 수익금 집행잔액
⑥ 수익잔액</td><td></td></tr>
<tr><td>환경위생과</td><td>1. 각 마을 공공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현황
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 업소 단속실적
3. 북구 구남마을 상수도관 파열 복구결과 및 대책
4.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5.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6.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7.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화장실 청소 인력운영 현황 (체육공원,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9.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10. 간이상수도 긴급 보수비 집행 내역</td><td></td></tr>
</table>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관련 현황 - 위탁관리비용 - 위탁업체 미화원현황, 봉급지급내역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2, 2003) 및 담당구역 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쓰레기처리 관련 용역현황 7. 분리수거 추진실태 8.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9.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① 매출실적 ② 국·시·구비 연간 지원비 ③ 연간 수익 ④ 수익금 집행내역 및 잔액 10.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결과 및 문제점, 대책 등 11.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추진 상황	
도시교통과	1.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3.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4.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5. 공영 유료주차장 사업실태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도시교통과</td><td>
<table>
<tr><th>위 치</th><th>사업자</th><th>주차공간(대수)</th><th>납입금액</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도시계획관련 용역업무 추진현황
7.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8. 화물차 차고지 현황
<table>
<tr><th>사 업 주</th><th>차 고 지</th><th>허가대수</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9.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실적
10.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반응 및 대책</td><td></td></tr>
<tr><td>건 설 과</td><td>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하천부지 점 사용허가현황 및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3.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4. 긴급도로 복구비 사용내역
5. 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6. 침수예상지역 하수구 정비실적
7.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table>
<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8.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9. 하천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td><td></td></tr>
</table>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0. 불량도로 재포장 공사 내역 11. 재난·재해 관리기금 조성액 및 집행 현황 12.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13.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14. 태풍 "매미"피해복구 및 추진실적(총괄) 15. 2003년 하수구 맨홀 발주 현황 (시방서, 설계도면 첨부)	
농림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집행내역(동별) 3. 휴경농지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9. 임도 개설·보수 현황 및 업체계약내역 10.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11. 전복 치패사업 투자현황 및 실적분석 (2002. 11. 1 ~ 2003. 10. 31) 12.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3. 관내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실적	
허 가 과	1.무허가건물 단속 및 조치내역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허 가 과	2.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등) 3.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4.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현황 5.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내역 6.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현황 7.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현황 8.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9. 준공검사 후 불법확장 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10.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2002. 11. 1 ~ 2003. 10. 31) 11.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현황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구입내역 및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0.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보 건 소</td><td>11. 동별 간호방문 현황
(방문일수)
<table>
<tr><th>월별
동별</th><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h>12</th></tr>
<tr><td>농소1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2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소3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강동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효문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송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양정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염포동</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r><td>의회사무과</td><td>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td><td></td></tr>
</table>

제7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3. 11.26~12.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과 전 부서에서의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혀 엉뚱한 자료가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이송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이번 감사때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 및 감시감독의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간 떼우기식의 감사로 생각하는 사고와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였음.

○ 감사결과 전 부서별 각종 민간위탁업무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업목표와 운영방법을 수립하고 수탁업체와 접목하여 본래 취지와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모든 위탁사무를 수탁업체에 위임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업무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지도감독의 책임마저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계기로 전 부서의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업무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추후 의회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위탁업무에 대한 추진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민간위탁업무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서라도 바로 잡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

○ 또한, 『호계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및 『북구재활용선별장』 등 동일한 업무에 관련부서가 2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않아 사업지연은 물론 무분별한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소홀 등 많은 문제

점이 야기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단체장의 책임하에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전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의 『120민원기동대』는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한 좋은 시책으로 추가 예산확보의 부담이 따르더라도 좋은 시책은 활성화 시키고 유명무실한 시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업무추진의 탄력성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 감사결과 감사자료 부실 및 위탁업무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사항 32건과 건의사항 19건 등 총51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니 조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2004년 1월 31일까지 결과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시정 · 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51	36	14	1	32	21	10	1	19	14	5	
공 통		4	4			2	2			2	2		
기 획 감사실		6	3	3		3	1	2		3	2	1	
총무국	계	11	6	5		6	4	2		5	2	3	
	총무과	3	3			1	1			2	2		
	자 치 행정과	2		2		1		1		1		1	
	문 화 공보과	4	2	2		3	2	1		1		1	
	지방세과	1	1			1	1						
	민 원 봉사과	1		1						1		1	
경제사회국	계	13	8	4	1	10	5	4	1	3	2	1	
	지 역 경제과	4	3	1		3	1	2		1	1		
	사 회 복지과	3	1	1	1	3	1	1	1				
	환 경 위생과	1	1			1	1						
	환 경 미화과	5	3	2		3	2	1		2	1	1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도시건설국	계	14	12	2		9	7	2		5	5		
	도시교통과	4	4			2	2			2	2		
	건설과	3	1	2		3	1	2					
	농림수산과	5	5			3	3			2	2		
	허가과	2	2			1	1			1	1		
보건소		3	3			2	2			1	1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체적 부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시 의결 후 10월 2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6일간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여유를 주었음에도 전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자료가 총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장시간 감사중지 사태가 발생하였음. ○또한, 사전에 잘못 작성된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감사에 임하여 의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임.	《공통사항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일 시 : 2003. 1. 26 ○장 소 : 기획감사실 ○대 상 : 실과소 주무담당 차석(15명) ○교육내용 -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공통지적사항(시정·건의)에 대한 직무교육실시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체적 부실 관련 교육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제출시 감사자료에 대한 성의 부족과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인한 장시간 감사중지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과소장 책임하에 특별직무 교육 실시.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 정)	○매번 의회의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 제출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간 때우기식 감사로 생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봄. ○향후 구청장 책임아래 전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담당팀별 전체직원에 대하여 감사자료작성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작성 되도록 하겠음.	
	2. 민간위탁 업무 추진 철저 ○현재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및 「북구재활용선별장」을 비롯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업무를 민간이나 특정단체에 위탁하게 될 것인데, 감사결과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민간위탁 관련 부서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완 결

처리부서	지적·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에서 전혀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무분별한 예산지원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공통사항 (건 의)	1.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통지 협조 ○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이 당초 예산심의나 의회 업무보고 사항과는 다르게 변경되어 추진하면서 지역의원이나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후 모든 사업에 대해 당초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체계를 갖추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주민간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당부함	○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심의 등의 내용이 당초와는 달리 변경 추진될 시 의회와의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전보고 등을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해소에 주력.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건 의)	2. 공사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 점검 철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내 실시한 '하자 점검결과'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하자보증 기간 내에 실시되는 하자점검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하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통해 즉시 보수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또한 보증기간이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서 보수비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함	○공사 시행시 하자보증기간내 하자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하자발생 즉시 시공업체를 통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케 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완 결
기 획 감 사 실 (시 정)	1. 위원회 운영 철저 ○현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41개의 위원회 중 1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15개(36%), 단 1회 개최된 위원회가 11개(27%)등	○위원회 설치 현황 - 41개 위원회 (법령 35, 지침2, 조례 규칙4) ○위원회 운영 실태 - 우리구의 위원회중 지침 및 조례·규칙으로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 · 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 사 실 (시 정)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전체의 63%인 26개나 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법령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의 사전절차를 밟아서라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여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기바람.	설치된 위원회는 6개 위원회이며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에 의한 것임. - 지침 및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위원회 정비 계획 - 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없으나 통·폐합 여부 등 위원회 정비를 법령 검토 및 해당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2. 임의단체 풀(pool) 보조금 형평성 확보 및 사후관리 철저 ○임의단체 보조금 풀(pool)예산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 기존 정액보조금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 사 실 (시 정)	편성한 예산인데도 사회복지과 및 문화공보과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3개 단체에 추가로 총 7,000천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준도 없이 지급하였고 사후 지원액에 대한 정산내역도 확인하지 않는등 풀보조금 예산이 무분별하게 관리·운영되었음. ○앞으로 풀 보조금 예산은 편성목적에 맞게 형평성있게 지원하여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원된 풀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으로 지원하던 정액사회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상한제를 도입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지원하도록 제도개선 되었음. ○우리구는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지난12. 26일 의회상정 하였음.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집행에 있어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예산집행 사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집행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table>
<tr><th>처리부서</th><th>시정·건의요구사항</th><th>처 리 내 용</th><th>처리결과</th></tr>
<tr><td>기 획
감사실
(시 정)</td><td>정산 등 사후관리에 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td><td>정산실시토록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분기별 사업부서의 정산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음.</td><td></td></tr>
<tr><td></td><td>3.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철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나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등의 제재만을 가하고 사후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앞으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td><td>3. 수감기간중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감사지적사항 현황
<table>
<tr><th>계</th><th>감사원</th><th>행자부</th><th>울산시</th><th>자체</th><th>사법기관</th><th>타 자치단체</th></tr>
<tr><td>211건</td><td>3</td><td>1</td><td>84</td><td>117</td><td>5</td><td>1</td></tr>
</table>
○ 처분 내역
<table>
<tr><th colspan="2">행정상</th><th colspan="4">재정상(단위 : 천원)</th><th colspan="2">신분상</th><th rowspan="2">불문</th></tr>
<tr><th>시정</th><th>주의</th><th>회수</th><th>추징</th><th>반납</th><th>감액</th><th>경고</th><th>징계</th></tr>
<tr><td>111</td><td>90</td><td>19건
152,389</td><td>21건
96,194</td><td>1건
16,637</td><td>20건
43,185</td><td>89</td><td>7</td><td>1</td></tr>
</table>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병행처분으로 감사지적건수와 처분내역은 불일치 함
○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table>
<tr><th rowspan="2">지적건수</th><th colspan="4">처리결과</th></tr>
<tr><th>계</th><th>완결</th><th>추진중</th><th>처리불가</th></tr>
<tr><td>211건</td><td>211건</td><td>210건</td><td></td><td>1건</td></tr>
</table></td><td>완 결</td></tr>
</table>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 정)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예방감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범위 및 양정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 - 행정상 처분 지시된 시정 및 주의건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이행여부 및 시정여부 현장 확행 - 재정상 처분 지시된 추징, 회수, 감액, 반납건은 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필히 확인 조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유가 불가능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징계등 신분상 문책 강화	
기 획 감사실 (건 의)	1.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방법 개선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긴급을 요하는	○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편성 취지는 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 의)	소규모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03년도 집행내역 중 3건의 사업비 집행액이 각각 40,000천원 이상임. ○구 재정상 40,000천원 공사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봄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집행시 편성 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하기 바람	긴급을 요할시 기관장의 재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3천만원이상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2. 예산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예산승인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이 심의과정에서 수치가 맞지 않거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및전출의 제한) 규정상 예산담당자에 대한 전보제한은 없으나 예산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 의)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 집행현황의 수치가 맞지 않게 작성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권한 확대는 물론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예산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의 예외를 두든지,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년 이하인 경우 전보는 억제하도록 할 것이며, 예산관련 각종 교육, 연찬회를 통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예산편성으로 의회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예산부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자 예산편성지침상 「참여형예산편성제도」를 보급 정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이 예산편성 및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에 시민이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 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음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방안 - 주민만남의날행사, 동순회간담회, 사랑방좌담회, 홈페이지(예산편성에바란다)를 통한 다양한 경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예산집행 평가과정의 주민참여 방안 - 명예구민감시관제,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를 통한 집행과정의 주민참여 방안 활성화, 투자사업 자체평가(연2회)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 실현 ○향후계획 -타 자치단체의 참여예산 모범운영 사례 벤치마킹 - 자체 연구모임을 구성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시 정)	1. 국공유재산 임대방법 개선 및 관리철저 ○국공유재산 임대방법에 있어 특정 개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도 관행적으로 기존 점유자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임 ○임대방법을 공개입찰 방법 등을 통한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제공토록 업무처리방식개선요망. ○국공유재산현황 자료가 의회 제출시 마다 상이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 관리 바람.	○국공유재산 대부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관행적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 하는 것임.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연2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완 결
총 무 과 (건 의)	1. 관용차량 경차 확보방안 적극 검토 ○예산편성지침상 관용차량의 50%는 경차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음. 단순이동 목적차량에 대해 경차 대체방안 적극 검토	○향후 단순이동용 등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구입 적극 검토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건 의)	2.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집행방법 개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운동복 구입예산 집행과정을 보면 공개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한 것은 정당한 행정절차이나 결과적으로 운동복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과정상 예산절감과 실질적 활용 못함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한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봄. ○추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집행시 사전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반영바람.	○직원운동복 구매 설문조사 실시 • 기간 : 2003. 3. 19 ~ 3.20 • 방법 : 6개제품 중 선호도 조사 • 결과 : 총250명 참여 선호도 높은 제품 선택 ○물품구매 입찰공고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최저가낙찰 • 현품설명 : 2003. 4. 2 ○운동복 입찰결과 • 입찰일시 : 2003. 4. 14 • 참여업체 : 4개업체 ○향후계획 • 직원 사기진작 경비 집행시 충분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시 정)	1. 정액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 매년 정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할 뿐아니라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면 대부분이 현수막·홍보물제작등 일회성 경비 및 인건비등의 경상경비로 집행되었음. ○ 앞으로는 보조금지원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현실적이고 생색내기식 행사는 과감히 지양시켜야 할 것이며, 정산검사시 산출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된 예산은 반납조치케 하는 등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하여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정산검토 철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사업추진시 예산집행의 목적 부합여부검토 및 지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검사시 계획과 일치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토 강화 • 지원단체와의 업무연찬 간담회 개최 : 3월중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건 의)	1.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철저 ○ 민방위급수시설은 비상사태시 주민들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하해 관리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약수로 이용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음. 민방위급수시설이 특정개인에게 사용되거나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본래의 목적인 비상시를 대비한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보급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비상시에 준한 철저한 관리도모 • 비상급수시설 명예관리자 위촉 : 시설당 2명씩 (2004. 2월중) • 정기점검강화 : 분기1회(7개소) • 시설물 유지보수 등	추진중
문 화 공보과 (시 정)	1.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도방법 개선 ○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민·관 합동지도단속이나 비행예방 선도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니 청소년지도위원 및 지도단속 요원 또한	○ 현 황 •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단속 활동은1월, 11월, 12월(3개월) 동안 동별 10명이 2인1도를 편성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제반 여건에 따라 5인 내지 6인이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 보 과 (시 정)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입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를 편성2~3일 간격으로 순찰하고 있음. • 민관합동 지도단속은 실질적 단속효과보다는 캠페인에 치중하고 있음 ○문 제 점 • 회원의 잦은 변동과 심야 순찰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 민간인 참여로 인한 사전 정보유출로 실질적 단속 효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실정임. ○ 대책 및 개선방안 •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단속 활동은 2인 1조의 조편성 및 매일 순찰이 되도록 지도협의회와 의견을 조정하며. •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1회씩 회의를 겸한 교육실시로 전문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함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 민관합동단속은 사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민간인과 함께 캠페인 활동 후 불시 단속으로 캠페인 활동과 단속활동을 분리하여 실시하고자 함.	
문 화 공 보 과 (시 정)	2. 내실 있는 문화행사 운영 방안 강구 ○ 2003. 8. 21일 북구성균관유도회주관으로 실시된 "어머니 예절교실 운영"에 구비 2,500천원을 지원하고도 행사운영 미숙으로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예산 낭비와 주민불편 초래의 이중적인 손실을 겪었음. ○ 앞으로는 민·관이 행하는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2003. 8. 21일 북구성균관유도회 주관으로 실시된 "어머니예절교실 운영" 당초 취지는 최근 비행 청소년 급증과 우리사회의 사라져 가는 예를 재정립하기 위해 가정에서 예의 근본으로 삼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강사의 능력부족, 교육운영 미숙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2003. 8.26일 향후 구비보조금 지급을 중단 결정하였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 보 과 (시 정)		○향후 문화예술행사시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행사는 보조금 지급을 억제할 것임.	
	3. 청소년체육활동장 사용 활성화 방안 강구 ○구 무룡분교를 개·보수한 "청소년체육활동장" 운영계획을 보면 청소년들의 장소제공을 제외하고는 활용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청소년체육활동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청소년수련원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계획도 연계해서 검토하기 바람	○현 황 • 청소년 체육활동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27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잔디구장 1면, 숙박시설, 4실, 실내집회실 1실, 사무실 1실, 휴게실 1실, 화장실 및 샤워실 1실, 관리실 1실을 갖추고 있음. ○활성화 방안 • 청소년 및 북구주민의 체육활동장으로 활용 • 학생, 근로자, 공무원의 합숙 공간으로 활용 • 북구 청소년 상담시설 및 가족 상담 시설로 활용 • 가족단위 휴양소로 활용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 보 과 (건 의)	1.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설 건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이나 수능시험 후 여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방학이나 연초에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람.	○문화예술회관뿐 아니라 여타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은, 중학교이상 진학하게되면 개인의 취미나 소양위주의 프로그램보다 학과위주의 학습을 추구하게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간혹,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설했을 시에도 개강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못 미쳐 개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강좌(예:힙합댄스)를 개설할 경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강하게 나타나며 반대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어학(예:토익)강좌를 개설 할 경우 관내 외국어학원의 민원이 야기됨.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 보 과 (건 의)		○청소년들의 정서와 인성 발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교육이라고 사료되나, 학과위주의 학원이나 과외만 시키려고 하는 사회적 실정에 있음. ○향후 북구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는 학부모와 청소년의 상반된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 계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지방세과 (시 정)	1. 고지서 발송료 예산 절감 방안 강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고지서 전달분에 대해 통장이나 일반우편으로 대체가능해도 징수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 강구	□ 현 고지서 송달체계 - 10만원 이상 : 등기우편 - 10만원 미만 : 일반우편 ※ 2003년 지출액 : 83,167천원 ○ 사 유 • 지방세법 제51조의 2 • 체납처분(송달)근거 확보 - 신속한 채권확보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시 정)		• 우편송달 원칙 계획에 의거 고지서 봉합기 확보 - 예산 1,650만원 □ 타구청 송달체계 ○ 중 구 • 등기 : 30만원이상 관외거주자 • 일반 : 30만원미만 관외거주자 • 직접 : 관내거주자 (건당250원) ※ 2003 소요금액 : 100,624천원 ○ 동 구 • 등기 : 10만원이상 관외거주자 • 일반 : 10만원미만 관외거주자 • 직접 : 관내 거주자 (건당300원) ※ 2003 소요금액 : 115,246천원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시 정)		□ 예산절감 방안 ○통장을 통한 직접교부는 일반 우편료 보다 높은 비용(건당300원) 이고, 송달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존재함으로 현 우편발송 체제 유지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30만원(기존 10만원)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 발송하고, 그 이하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발송함으로써, ○등기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민 원 봉 사 과 (건 의)	1. 개발부담금 징수철저 ○체납된 개발부담금중 징수가능분은 적극징수, 징수불능분은 감액조치로 탄력적 업무추진, 향후 탈루세원 미발생위한 사전 채권확보 및 자료관리 노력 당부	○체납된 징수가능분은 적극 징수,징수불능분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24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4년도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봉 사 과 (건 의)		하반기 감액조치하고,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탈루 세원 미발생을 위해 사전 채권 확보 및 자료 관리를 통한 징수활동에 적극적인 노력	
지 역 경 제 과 (건 의)	1.호계 공설시장 진입로(소방도로)개설공사 적극추진 ○호계 공설시장 진입로(소방도로)개설공사는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공사 미 이행으로 인한 주민여론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상된 가구에 새로이 영세민들이 주거하는 등 또 다른 공사지연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사업개요 • 위 치 : 호계동 678-3번지 일원 • 사업량 : L=81.6m, B=8m • 기 간 : 2002. 10월 ~ 2004. 7월 • 총사업비 : 925백만원 (특별교부세 700, 시비 87, 구비 138) • 추진내용- - 2004. 1월 현재 토지 10필지, 건물4동 보상완료 - 2003. 7. 2 건설공사 착공 - 2003. 8. 28. 폐기물처리착공 - 2003. 12. 23.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추진계획 - 미보상 물건에 대해 공사 추진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소유자 면담과 설득을 계속 추진하여 보상 완료토록 적극 노력 - 보상이 안될 시 3~4월경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 신청하여 추진예정 - 사업 착공·시행시 공사감독 철저히 하여 적기(6월 말)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지 역 경 제 과 (시 정)	1.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방안 적극 강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타가 개소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북구관내 비정규직에 대한 기초자료조사가 없고 사업의 주된 방향도 제시되지않는 등 향후 비정규직센타운영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는 전국에서 조사된바가 없는 사항으로 북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지역전체에 대하여 조사되어야 된다고 보며, 구청 또는 센타에서 직접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 제 과 (시 정)		자료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전문용역기관에 조사의뢰하는 방법과 대학연구프로젝트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관내 비정규직실태조사는 조사방법 등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2. 『모범근로자 자녀 한마음캠프』 행사 졸속 추진 ○모범노동자 자녀 한마음 캠프행사시 관내 760개업체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해야함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16개 업체에만 발송하였고, 추천 받은 결과, 1가구 2명이 참가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타구 거주가자 참가하는 등 사업계획과 운영에 치밀하지 못하였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2004년 한마음캠프는 관내 유적지견학 또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계획이며, 선정방식으로는 1가구 1자녀원칙 및 북구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겠음. ○2004년 모범노동자자녀 한마음 캠프는 관내 노동조합 및 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 제 과 (건 의)	1.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 석유제품 단속결과 행정법규 위반내역이 9건이나 위반사유가 "유사휘발유 취급 및 판매"임. 단속이 정기적, 예고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니 불시단속 등 단속활동 강화로 가짜휘발유 및 유사휘발유 주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강화 바람.	□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시단속 실시 ○ 대 상 : 주유소 20개소 ○ 방 법 : 야간단속 ○ 단속결과 - 적발업소 : 대경주유소 - 적발내용 : 유사석유제품판매 (차량용 경유에 등유 10% 혼합) - 조치사항 •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 • 고발조치(5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심야를 이용한 단속 강화	완 결
사 회 복 지 과 (시 정)	1. 북구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총체적 부실 및 지도감독 소홀 ○ 「북구자활후견기관」이 본래 설립의 취지를 상실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전혀	○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자활근로사업단을 교육·훈련하여 수익금을 적립, 시장진출을 위한 자립준비적립금을 조성토록 함.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 지 과 (시 정)	지도감독을 하지 않음은 물론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감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음.	2004년 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에 자활공동체 인정계획 및 자립준비금 적립을 위한 방안마련 대책 등 수립, 시행	
	○북구자활후견기관의 운영경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환경미화과의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분류되나 총 수익금에 따른 지출내역에 대한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등 회계처리가 문란함.	○후견기관회계는 여러 사업장과 참여자, 직원, 차량건물임대료, 각종 유지비등 총무 1인이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함. 2003. 12월 회계시스템을 도입, 2004년도부터 모든 회계처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함.	완 결
	○북구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 본래 취지는 기초수급자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의 수익금을 적립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한 후 독립시켜야 함에도 한번 채용된 인원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월별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본래취지를 왜곡하였음	○후견기관은 매년1회 정기점검, 후견기관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의회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제출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04. 2월 정기 점검 계획중임.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 지 과 (시 정)	○설립목적의 위배, 회계처리 문란, 지도감독 의무소홀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완 결
	2. 공립보육시설 운영 철저 ○허가기준을 일탈, 영아모집을 기피 등 시설장의 편의주의식으로 운영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립보육시설이므로 분명히 설립목적과 기준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	○구립 숲속어린이집을 영아전담보육시설지정기준에 따라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2세미만반(24개월미만 영아)과 2세반(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을 동일비율(1 : 1)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2004년도 원아모집시부터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되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 지 과 (시 정)	3. 아파트 경로당 지원근거 마련 ○구청에서 지금까지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제외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쌍용아진 1차 아파트 경로당 보일러 교체비』로 800천원이 지급되었음 법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제한규정이 없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 자연마을경로당 뿐 아니라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불가피하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불 가
환 경 위 생 과 (시 정)	3.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시책 방향 재검토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의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개 하천에 19개 단체가 참가하였음. 북구에 소재하는 5개 하천은 대부분이	○1사 1하천 가꾸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천과 지정단체를 2003년도에 재정비 • 12개 하천 32개 단체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시정)	건천으로 하천살리기 시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극히 희박할 뿐 아니라, 참가단체 중 경기악화로 경제난을 격고 있는 기업체를 무조건적으로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실효성 없는 시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5개 하천 19단체 • 지정하천 및 정비구간 설정운영으로 참여단체(기업체,자생단체, 학교 등) 자율 참여 유도 - 참여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격려 (분기 1회) - 정화활동 시 집게, 장갑 등 정화활동 장비와 빵, 우유 등 간식 제공 • 북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조 학생봉사활동 참여시 지정하천 정비 • 참여 우수단체 연말 표창 실시	
환경미화과(시정)	1. 예산집행 철저 ○ 과다한 예산집행잔액 발생은 당초 예산편성시 추계미비와 월별 집행계획의 미 준수이므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 요구	○ 2004년도 예산편성은 정확한 추계로 편성하였으며, 월별 집행계획에 의거 균형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음	완 결
	2. 재활용사업 활성화방안 강구 ○ 재활용선별장 및 교환판매장의지도점검 미실시로 위탁업체의 관리가	○ 의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04.1월 갱신계약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 화 과 (시 정)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 업무에 대한 소신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천되도록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수익금의 활용방안 등 재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강구	체결을 위한 특별점검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갱신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04. 6월까지로 하고 운영상태 점검 후 계약체결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음 ○매월 위탁금 정산을 통한 운영상태 점검 후 위탁금 지급 조치하겠으며 ○'04. 6월 전반적인 운영상태 점검을 통한 위탁사무 처리의 위법여부 확인 후 시정조치 강구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판매대금은 당해 주민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며, 구청 재산으로 세입 할 수 없음 (감사원 지적사항)	
	3.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철저 ○민간위탁업체의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업체의 "약속미이행"에 대한	○2004년부터 업체별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구역을 재조정하고, 연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업체의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자율적 경쟁 및 주민불편 최소화 유도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 화 과 (시 정)	제재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		
환 경 미 화 과 (건의사항)	1. 헌옷 수거함 효율적 관리 방안 강구 ○ 헌옷 수거함이 "쓰레기처리장"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 장애인협회 및 민간단체가 설치해 놓은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도 검검을 실시하고 ○ 관리부실 적발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음	추진중
	1.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 ○ 2003년도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없는 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 결과로 판단되므로 실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2003. 12월 폐기물관리 위반 업소 5개소에 10,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증원된 인력만큼 상시 점검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단속차량을 이용한 순찰활동으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시 정)	1. 「효문 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방안 적극 강구 ○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출·퇴근시 병목현상 및 우수시 침수현상 등)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강구	○ 효문공단도로는 낙후된 공단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물동량 수송원활과 공단내 거주하는 효문동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차원에서 L = 1,240m, B = 20m로 개설 중에 있는 공사로 1차 L = 730m는 2003. 3. 20 부분개통되고 나머지구간 L = 510m는 시공중에 있으며, ○ 공사 시행중에 비산먼지, 소음, 교통불편 등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관 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에 무선 및 유선(공문)등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구 건설과 및120기동대 등과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이 발생시 즉시 계도 및 시행 부서에 시정 요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시 정)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구 자체 대책마련 ○ 호수·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시행전 문제점 발견 및 사전개선	○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조합구성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특정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자금조달등은 체비지 매각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게 노력하고 있으나, ○ 시공건설업체의 부실로 인해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호수 지구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으나, 조합측에서 재착공을 위해 부단히 조합회의를 통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 2003년 12월에는 특정업체가 사업인수를 하고자 협의중에 있으며 ○ 또한 호계지역 주변 구획정리사업과의 사업성을 비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추진경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 협조 할 계획에 있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진장·명촌지구의 경우는 산업로보다 3m정도 높게 조성되므로 인해 효문사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을 빚고 있으나, 진장·명촌지구내는 자체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로 유입되는 우수는 거의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우수 및 상류지역의 배수로를 통해 효문사거리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배수로의 단면 부족 및 명촌교까지의 배수 유로 연장이 길어서 일시적으로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매년 발생되고 있어, ○울산광역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2003. 4. 10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85억원의 예산으로 2003. 10 ~ 2004. 6까지 침수예방 배수시설공사를 하고자 2004. 2. 20까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배수시설이 설치되면 효문사거리 주변의 침수는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은 타구획정리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시 정)		사업지구의 시행착오와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구 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으로 부족한 택지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어 북구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도 시 교 통 과 (건 의)	1. 택시승강장 설치건의 ○택시승강장 설치장소가 한군데도 없어 콜밴이나 택시등이 일반차선을 차지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대형마트 등 주민왕래가 많은 곳은 택시승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니 전 구역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설치방안을 강구바람	○택시정류소는 5개소가 있으며 연암동 벽산아파트앞,농소3동쌍용아진3차앞,매곡동 매곡농협옆 등 3개소는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으며, 화봉동 동아청구사거리 경남은행앞, 아람마트앞 등 2개소는 2003년 1회추경에 예산확보하여 2003. 11월 사업비 450만원으로 승강장 설치완료 하였음. ○메가마트 앞에는 자체에서 승강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건 의)		○2004년에 쌍용아진3차앞에 당초예산 500만원 확보하여 설치계획 에 있음.	
	2.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버스베이가 야간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버스베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람	○버스베이는 염포로, 화봉지구내, 7호국도변을 위주로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03.12말까지 2개반 13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12:00~19:00까지 변형근무를 실시하여 버스베이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였으며, ○'04.1월 현재 주차단속 공익요원증원으로 주간(09:00~17:00)3개반 19명, 변형근무(13:00~21:00) 2개반 12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버스베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음.	완 결
건 설 과 (시 정)	1.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 ○송정동 동아APT학	○2개의 과속 방지턱중 1개를 철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시 정)	설치기준에 위배되며 주민불편 및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및 예산 낭비 우려됨으로 시정조치		
	2. 관내 하수구 뚜껑 설치 공사 철저 ○양정동 및 염포동일원 하수구 뚜껑 교체공사 현장을 실제 확인한 결과 바닥과의 부착이 견고하도록 시멘트로 시공처리한 부분이 설계도면상과 상이하여 보행시 하수구 뚜껑이 바닥과 분리되어 소음과 안전에 위험함으로 교체토록 하고, 향후 시공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20개소로 확인되어 10개소 조치완료 ○나머지 10개소는 2004. 2월초까지 조치완료 계획임.	추진중
	3. 호계공설시장 진입로(소방도로) 개설공사 조속 추진 ○호계공설시장 진입로(소방도로)개설공사는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공사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주민여론이 좋지 않을 뿐	○현재 보상완료 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 설득 및 독려 ○시공사인 나남종합건설(주)에 세입자 독려 및 설득과 함께 우선 토지 보상지에 대한 공사추진을 통보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아니라 보상된 가구에 새로이 영세민들이 주거하는등 또다른 공사지연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단, 현재 동절기임을 감안 2004년 3월경 추진)	
농 림 수 산 과 (시 정)	1. 유사 임의단체에 대한 통·폐합 방안 검토 ○「북구농촌지도자회」「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북구생활개선회」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임의단체에 대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개 단체의 기능과 사업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는 방안강구.	○북구 농업인 3개 단체는 서로 유사한 단체이나,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다르므로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및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2004년부터 3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 북구 농업인 한마당 축제행사로 통합하여 예산지원 할 것임.	완 결
	2. 산불감시초소 조속 설치 ○제2회 추경시 산불감사초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현재가지 산불감시 초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아 산불감시원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하고 있으므로	○ 2003.12.12~12.16 : 산불감시초소 12개 설치 완료 ○ 2004. 1.14 : 산불감시초소 6개 설치 완료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시 정)	3. 관내 공원 시설물 관리 철저 ○화봉제2공원내 음수대가 수개월째 방치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원내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03. 12. 20 녹지작업단 5명 동원하여 화봉 제2공원 음수대 철거 완료	완 결
농 림 수 산 과 (건 의)	1. 「농·축산물 불법 유통 단속」의 탄력적 운용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결과에 의하면 국내산 및 중국산의 구분없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위반처분이 일률적이므로 국산 및 중국산에 대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바람.	○2004년도부터는 농·축·수산물의 불법유통 단속 시 대형유통업체와 수산물 판매장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산지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불법유통 적발 시 적용 가능한 법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음.	완 결
	2. 공원 조성 시 「주민참여제」 도입 방안 검토 ○공원조성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공원관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효과가	○2004년부터 조성되는 관내 공원조성 시 지역구의원 및 동장,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대되므로 「주민참여제도」 도입검토	주민의견 수렴 한 후 공사 설계 실시, 공원 조성 착수 할 계획임.	
허 가 과 (시 정)	1. 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학교법인 현대법인(이사장:정몽준)은 당초 농업용 소류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자연학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현장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음. 행정기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담보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평소 현장행정 강화로 불법행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도시교통과)에 개발제한구역 감시청경 순찰강화 협조 ○현대학원 허가사항 준수 당부 및 위법행위시 처벌 안내 공문발송 ○불법사항 사전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및 수시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함.	완 결
허 가 과 (건 의)	1. 숙박업소 허가시 민원최소화 방안 강구 ○숙박업소 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법령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하는 것이	○'02. 5. 3 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 상업지역내 도시기반시설이 30%이상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타당하나, 현재로는 수요가 불가피하지도 않고 도시기형적인 발전을 부추기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숙박업소 허가건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가조건이 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항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될 때까지 건축허가 제한 방침 결정 ○'02. 2 ~ 현재까지 건축법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향후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시 인근 주민들의 주거·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처리토록 할 것임	
보건소(시정)	1. 행정사무감사 준비부족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의료장비 구입 및 실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의료장비 및 수량에 관한 자료가 있을 뿐 구입내역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감사 과정에서 약품구입 현황 중 수의계약의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와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작성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보건소장 책임하에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각종 보고서 작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보 건 소 (시 정)	자료 및 업무파악이 미진하였으므로 즉시 시정하기 바람.	하겠음.	
	2. 동 방역 활성화 방안 강구 ○하절기 동별 방역인부를 사역하여 실시하는 방역이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방역을 요청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므로 동 방역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자생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계약도 불가하다는 국립보건원 질의회신(2003. 7. 22)결과 자생단체 위탁체결이 불가하여, ○동 방역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동 자율방역단 운영활성화 및 방역인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방역장비 보강 등으로 방역업무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민원발생시 상시 대기중인 방역기동반의 신속한 대처로 구민 불편해소.	완 결
보 건 소 (건 의)	1. 청소년을 위한 보건사업 실시 ○보건소가 새롭게 개소함으로 인하여 전 구민들이 건강보건업무에	○보건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금연홍보물배부, 성교육,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대한 기대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청소년 대상 보건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 등을 추가 개설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비디오 대여등 각종 보건교육을 각 학교별로 실시해 왔으나, ○2004년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윤리관과 성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성상담실』 운영 및 이를 위한 성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또한 교육청, 학교와 연계한 각종 성교육 프로그램(성교육, 성교육책자 배부, 설문조사, 홍보물 배부, 성교육 비디오 대여등)을 추진토록 하겠음.	

행정사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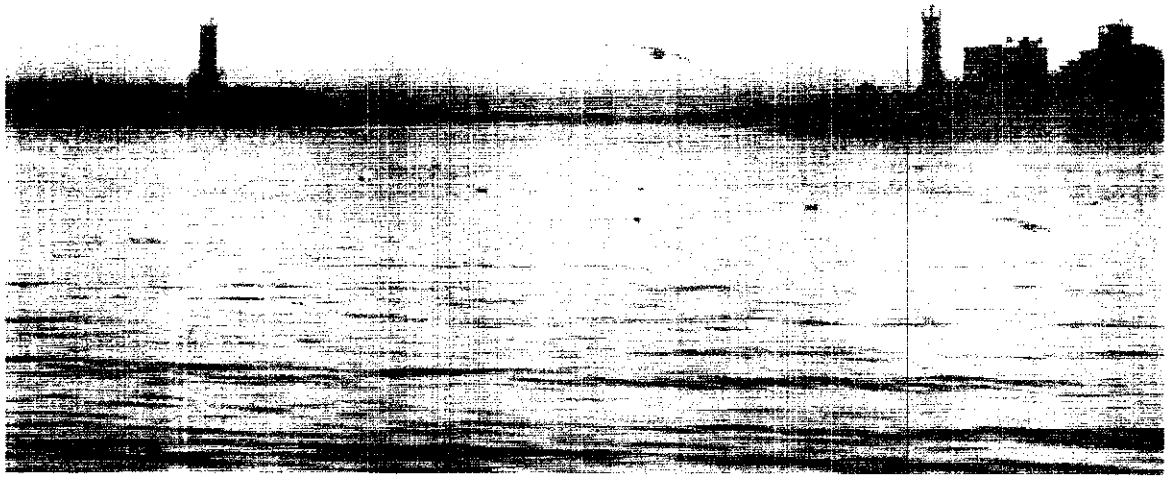
제 6 장

제 1 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 계획

제 2 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 경과

제 3 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 결과

제 4 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 결과 처리내역



강동 정자항 일출

제1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계획

1. 조사개요

가. 조사의 목적

○민선3기 울산광역시북구 출범이후 최근 언론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코자 함 ○음식물자원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및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나. 조사의 기간 : 2003. 11. 3 ~ 2003. 11. 14(12일간)

다. 조사대상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명칭	위원장	간사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 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경	김대영	김재근	이상찬	정미옥

마. 조사범위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 과정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2. 조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조사대상기관	조사대상부서	출석요구공무원		조사대상무
		직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 청 장	이 상 범	요구자료참고
		부 구청장	이 상 수	
	총무국	총 무 국 장	김 종 기	
		총 무 과 장	성 낙 화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안 강 원	
		지역경제과장	정 기 원	
		사회복지과장	이 동 훈	
		환경미화과장	김 영 식	

3. 조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 조사자료 제출 현황 : 별첨
- ○ 제출 부수 : 8부
- ○ 제출 기한 : 2003. 10. 27일 한

4. 조 사 일 정

일 시	장소	조사대상부서	비 고
2003. 11. 3 ~ 11. 4 (2일)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국·과장) ○총무국 총무과	
2003. 11. 5 ~ 11. 6 (2일)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현장확인
2003. 11. 7 ~ 11.10 (4일)	〃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
2003. 11.11 ~ 11.14 (4일)	〃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

5. 조 사 방 법

○ 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

○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 기타 실증적 조사 등

【 별 첨 】

주요감사실시 내용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문화예술회관 계약직 공무원 선정 과정〉 1.계약직 공무원 응시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자 포함) 4.선정 결과	
지역경제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타 수탁자 선정 과정〉 1.수탁자 신청 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자 포함) 4.선정 결과 5.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6.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지도·감독 실적 7.예산지원 현황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과정〉 1.종합사회복지관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수탁자 신청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심사자 포함) 5.선정 결과 6.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1.음식물자원화시설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신청 업체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심사자 포함) 5.선정 결과 6.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제2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 경과

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가. 목적

○민선3기 울산광역시북구 출범이후 최근 언론보도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코자 함 ○음식물자원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및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나.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일 시 : 2003. 10. 17(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 명 칭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외 3건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재경
- 위 원 : 김대영(간사), 김재근

2. 조사실시 경과

가.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3. 11. 3 ~ 11. 4(12일간)
- 조사대상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사범위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과정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 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나. 조사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소	조사대상부서	비 고
2003. 11. 3 ~11. 5	대상사무 현장확인	○현장확인 및 참고인 면담	
2003. 11. 6 ~11.7	〃	○증인선서(국장·과장) ○총무국 총무과	
2003. 11. 8	〃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2003. 11. 10 ~11. 11	〃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2003. 11. 12	〃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2003. 11. 13	〃	○조사대상 전 부서	
2003. 11. 14	〃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다. 현장조사 실시

○ 2003. 11. 3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응시자 면담

○ 2003. 11. 4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 법인 2개소

○ 2003. 11. 4 ~ 5 :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 신청업체
(주)해창 (경기도 이천시 소재)

라. 조사 방법

○ 조사선언(위원장)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증인선서

○ 업무보고(청취) : 국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조사 결과 강평 및 조사종료

마. 증인출석 및 조사실시 내용

○ 증인 출석 : 10명

(구청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환경미화과장, 음식물처리담당)

○ 조사실시 내용

소 관 부 서	주요 조사 실시 내용	비고
총 무 과	〈문화예술회관 계약직 공무원 선정 과정〉 1.계약직 공무원 응시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자 포함) 4.선정 결과	
지역경제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타 수탁자 선정 과정〉 1.수탁자 신청 현황 2.선정 기준 3.선정 과정(심사위원 포함) 4.선정 결과 5.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6.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지도·감독 실적 7.예산지원 현황	

소 관 부 서	주요 조사 실시 내용	비고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과정〉 1.종합사회복지관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수탁자 신청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 (위원회 개최 내용 및 심사위원 구성 등) 5.선정 결과 6.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1.음식물자원화시설 기본현황 및 운영계획 2.신청 업체 현황 3.선정 기준 4.선정 과정 (위원회 개최 내용 및 심사위원 현황 등) 5.선정 업체 6.수탁자 변경 사유 7.수탁자 선정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조사현장확인활동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울산지부 방문



▲ 사회복지법인 수연복지재단 방문

음식물자원화시설기술공모업체방문



▲(주) 해창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방문



▲(주) 해창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방문

행정사무조사실시



▲ 행정사무조사 진행



▲ 행정사무조사 실시 방청

제3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 결과

1. 지적사항 및 건의·시정요구 사항 (총괄)

조사대상부서	지적사항	건의사항	시정요구사항
계	21	3	14
공 통 사 항	3		2
총무국 총무과	4	2	2
지역경제과	3		3
사회복지과	7	1	5
환경미화과	4		2

2. 조치사항

가. 공통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내용

〈 지적사항 〉

○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성에 중점을 둔 반면 음식물처리업체 선정과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일괄적이지 못한 행정을 집행하여 주민들과 신청업체에 대단히 큰 혼란을 초래하였음

○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과별·국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등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추진 과정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무원들이 위탁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첨부해야할 서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절차도 없었으며, 심사위원에게 심의를 돕기위해 요약된 요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심사위원의 심사에 지대한 혼선을 주었다고 생각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단히 실망스러움

〈 시정 요구사항 〉

○ 북구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대원칙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 북구청 내부에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최고 책임자가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즉시 시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나. 분야별 지적사항 및 건의 · 시정요구 내용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 】

〈 지적사항 〉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모집 공고가 행자부 및 북구 홈페이지 그리고 북구 게시판 3개로 한정된 것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력을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였음

○ 심사위원 총4명 중 2명이 집행부 간부공무원이고 나머지 2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점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모집기간 중 응시한 ○○○는 당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쟁의부장으로 울산시와 복직 투쟁 중이었던 시기임에도 북구 계약직공무원 모집에 응시하고 합격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개연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기획·전시·공연 분야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기획에 대한 이력서 상의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

○ 문화의 불모지인 북구에서 처음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북구 구민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만큼 직원채용에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수한 많은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도록 노력 바람

○ 심사위원구성면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및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 건의사항 〉

○ 기획·전시·공연 분야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기획에 대한 이력서상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이 되었으니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을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하고, 많은 구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여 주길 당부함

○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로 알게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길 바람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과정 】

〈 지적사항 〉

○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개소하여 2003. 5. 19일 위탁운영을 승인하고 2003. 5. 23일 위탁운영계약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점은 지정위탁업체인 민주노총의 대표자가 공석이었고 업무대행자도 지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시기였음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대표자,즉 최소한의 책임이 수반되는 자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대표자로서의 권한(또는 업무대행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위탁에 대한 사업운영 방향과 총괄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소속 직원과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기관의 직원과 업무를 진행한 점

○ 또한 행정기관과 수탁단체간 체결한 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수탁단체의 직인이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듬

〈 시정요구사항 〉

○ 행정기관에서 외부 단체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공적인 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업무협의를 하는 직원이 그 단체에서 어떠한 직위가 있는지에 대한 절차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 판단되니,

실무자는 물론 간부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청 나름대로의 사업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접목시켜서 조례제정 본래의 목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모든 업무를 위탁단체에서 전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담당공무원은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정되어 위탁업무를 시작한 본질적인 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해 수탁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조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과정 】

〈 지적사항 〉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신청시 건물과표확인서는 공식적으로 발급할수 없는 서류임에도 신청서상의 첨부서류로 표기되어 신청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고

어울림복지재단의 경우는 꼭 구비되어야 할 서류인 2001년도 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실무부서에는 추가로 요구하지도 않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신청접수 마감일이 7월 28일이었고 심사위원들에게 각 법인의 신청서류가 7월 29일날 배부되었는데 배부된 신청서류의 방대함을 감안했을 때 2일 동안 심사위원들이 4개 신청법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 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요약서를 작성하여 심사당일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한 요약서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바 허위기재 된 요약서에 의한 심사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히 결여됨

○ 요약서의 잘못된 부분을 열거하면

- 「법인의 설립일자」를 수연복지재단의 경우 95년 12월 6일로 기재해야 하나 허가증 갱신일자인 2003년 7월 22일로 허위 기재되어 있으며
- 「법인기구및복지관운영부서」에 대해서는 수연복지재단은 신청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페이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 요약서상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표기를 생략하여 타법인과의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신청자료에 수연복지재단은 43개 프로 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8개사업 대단위 사업만 표기하고 일부 법인은 소 단위 사업까지 표기하는 등 요약서 작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있음
- 「운영체현황의 자체운영체」부분의 표기에도 어울림복지재단은 2개소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6개소를 운영하는 것으

로 잘못 표기하였음

- 「연간자부담계획의 연간 자부담계획금액」을 타 3개 법인은 경비부담 사용승낙서 상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 반면, 어울림복지재단의 경우는 후원금과 출연금이 포함된 연간 수입액을 기재하여 실제보다 더 많이 자부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공무원이 정확한 개념과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어울림 복지재단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사위원 중 4명을 참여연대 및 어울림복지재단과 산학협약이 체결된 울산대 사회학부 교수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했는데 본 특위에서 이런 연관성을 밝힌데 대하여 결과적으로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심사결과를 열람 한 결과 심사위원들이 각 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담당 부서에서 배부한 요약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평가 기준과 다르게 '지역성'에 배점기준상 가중치를 두었다면 지역업체 순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순위결과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개인별 채점표와 평가심의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에서 ① 개인별 채점표는 비공개 사항이며, 의회에서 법적 요구기한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② 회의록 미작성 등 을 이유로 서류 열람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열람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행태이며, 특히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진행사항을 기록하여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

은 가장 행정의 기본사항임에도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선정과정의 의혹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집행부 스스로 만든 것임

위탁사업설명회 자료중 「울산광역시북구종합사회복지관및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협약서(안)」의 내용이 장애인복지증진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직원이 타 기관들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협약서를 다운받아서 복합적으로 편집하던 과정 중 발생한 오타라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한 점과 37억 2천여 만원의 대단위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사업설명회 자료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이 전체적인 내용검토와 오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 건의사항 〉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로 발의되어 북구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8차 본회의에서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출석요구 공무원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의회에 사전 통보나 동의도 없이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교육 출장으로 조사에 불출석하여 조사진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성실할 뿐 아니라 견제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임.

또한, 매번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의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와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임해주기 바람

〈 시정요구사항 〉

○ 위탁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을 때 구비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며 또한 신청서류로서 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주기 바람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심사에 심의를 돕기 위한 요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법인이 애써 노력하여 만든 실적이나 현황을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작성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잘못 기재되고 일부는 누락이 된 것은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짓는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진행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은 반드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시정을 요구함

○ 심사위원은 위탁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심사위원구성에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사전 심사위원과 신청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구성한 것 또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위탁업체 선정심사에서 탈락된 업체에서 공개토론회 요구를 한데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속하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바람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 지적사항 〉

○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공모 심의결과 (주)해창이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기술공모서상의 채택한 지렁이 사육 및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고, 특히 지렁이 사육관련 운영실적이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건설기술응모 평가기준 (Ⅲ.평가기준및방법 제5호)에 따라 사업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음

지렁이 사육 및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당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평가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충분히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봄

○ 또한 허위실적증명서는 당초 신청구비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서류도 아니었고 신청업체에서 심사평가시 가점을 받기 위한 참고서류에 제출된 허위실적증명서 하나만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배제하고 순위를 발주 기관에서 임의로 바꾼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서 미비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적격심사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심사평가를 진행한 것 은 명백히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실적증명서의 실적」을 실제 운영한 (주)청강이 확인을 해 준 것은 (주)해창과 청강이 나름대로의 협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순위를 바꾼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함

만약 위 북구청에서 허위실적증명서 만으로 선정 업체를 변경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었으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절차인데도

허위실적 증명서로 확인을 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북구청과 (주)해창 간의 상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시정요구사항 〉

- ○ 북구청에서 업체선정결과 변경된 사유가 적절한 조치인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 ○ 「허위실적증명서」가 기술공모제안서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과오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요구됨

【 조사결과 종합 의견 】

-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실시한 결과
- ○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및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됨
- ○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의견

을 무시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회신도 없이 행정을 일방적 으로 집행한다는 점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북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마인드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감독 하는 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임

- 국민의 혈세로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 참가자격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탁이나 외압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충분한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위탁업무나 공무원 채용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야 할것임
-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항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소신있는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의 흠집내기식의 조사가 아니라 어떤경로든 주민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알려 투명하고 진보적인 북구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사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2004년 1월 31일한 통보해 주길 바람
-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방자치법의 조사권의 한계로 인해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제4절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결과 처리내역

1. 공통 지적사항 처리 내역

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 3건의 진상조사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담당자 교육실시

○ 일 시 : 2004. 1. 26.

○ 대 상 : 실·과·소별 주무담당 차석(15명)

○ 장 소 : 소회의실

○ 교육내용 :

- 우리구의 인력 채용시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한 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조치
- 업무처리과정상 국·과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협조를 받도록 하고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하여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시
- 향후 이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과소장 책임하에 직무교육 실시하고 소속직원의 직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나. 분야별 지적사항 처리 내역

【 문화예술회관계약직공무원채용과정】

○ 문화예술회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홈페이지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 계획공고와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2003. 7. 25)한바 있으며, 본 과정에서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시간적·재정적 부족으로 이러한 결

과가 발생 된 것으로 앞으로 계약직 채용시 보다 다양하고 많은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음.

○ 계약직 채용 면접 심사위원 구성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채용기관이 우리구로 한정됨에 따라 다소 비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추후 심사위원 구성시 전문적인 기술인, 대학교수 등을 확보하여 심사위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현재 채용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구가 문화불모지가 아닌 앞서가는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향후 계약직 채용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 채용 시에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과정 】

○ 2003. 5. 2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계약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체결건에 대하여는 민주노총울산지역 본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담당업무가 전필원(현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었으며, 전화확인 결과 비정규직지원센터 업무 위임자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서확인으로 업무처리 하겠음.

○ `03. 3. 3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타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직영운영하기에는 노동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주노총을 위탁운영자로 지정계약체결하였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업무체계가 미흡하였으나, 향후 자료수집을 통하여 센타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음.

○ 매월 운영위원회 및 수시 출장시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지도하였으며, 또한 지도 방문시 내실 있는 운영계획수립 및 현금출납장부 비치 등 회계처리를 철저히 정리하도록 지도하였음.

【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과정 】

○ 복지관 위탁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침서가 없음으로 인해 다른 시·구의 사례를 참조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복지기관 또는 시설 위탁시 정확한 업무지침이 시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향후 각종 보고서 등 작성에 유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우리구 감사부서의 문책이나 향후 있을 각종 감사시 담당자의 업무 실수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임.

○ 향후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음.

○ 담당부서에서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에만 초점을 두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그들의 성향 내지 신청법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파악에 소홀한 점이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음.

○ 사이버상에서의 공개토론 필요성을 제기하신 분은 있었지만 복지관위탁을 신청한 4곳(위탁선정법인 포함)중 정식으로 공개토론회를 요청한 곳은 없었으며, 언제라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절차를 밟아 즉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음식물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 】

○ 우리 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짓고 잘 운영」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업체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느냐"하는 문제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기술을 공모키로 결정하는 한편,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회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까지 하는 등 면밀한 선정과정을 거쳤으며,

○ 우선협상대상업체에 하자가 있어 후 순위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한 것은, 기술공모 기준에 따른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이미 선정된 업체를 변경한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임.

○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기술공모제안시 운영하지도 않은 실적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운영실적증명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 상에도 버젓이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평가심의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특히,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충분한 법적 검토는 물론 고문변호사(2명), 행정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았고 또한, 2003. 10. 7. 개최한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시 공모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시공업체 변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바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와 함께 2003. 9. 30~10. 11 실시한 행정자치부 환경기초시설 감사와 2003. 11. 26 실시한 울산시의 사무감사를 각각 수감한 결과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라는 촉구가 있었을 뿐 업체 선정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 우리 구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북구의회가 보내 준 관심과 질책을 겸허이 수용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자원화 시설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시설로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제 7 장 기타 의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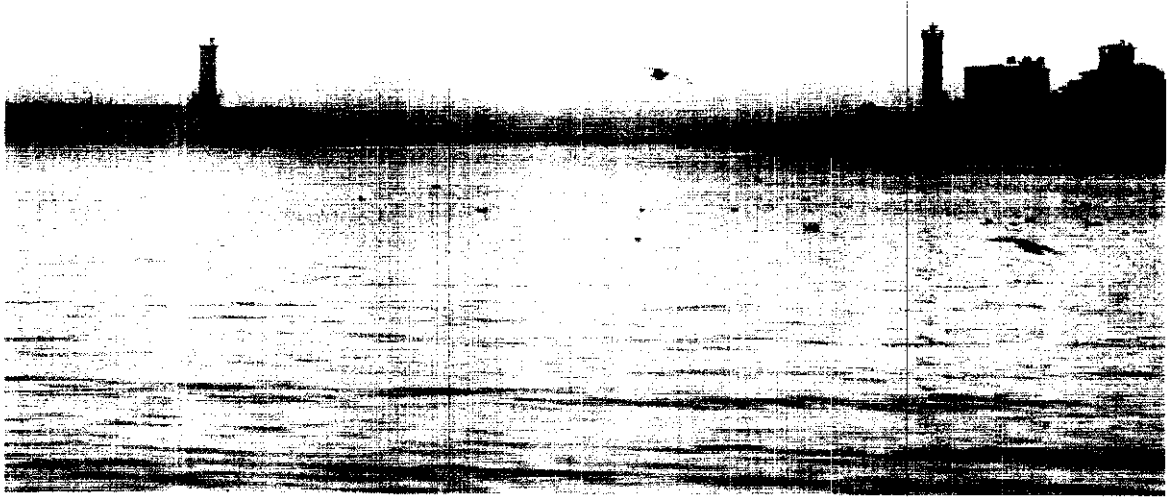
제 1 절 구정질문

제 2 절 4분 자유발언

제 3 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제 4 절 주요의정활동사항

제 5 절 의정활동일지



강동 정자항 일출

제1절 구정질문

1. 구정질문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7건
2003.3.31	제61회임시회	류재건의원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 ○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우수기시 침수대책에 관한 질문 ○덕양산업옆 연암삼거리앞 교통신호체계 대책에 관한 질문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 APT 입주전 주민편의시설 설치 대안에 관한 질문
2004.6.10	제72회임시회	윤임지의원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 기준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 ○강동동의 교육·문화·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대책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완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대책

2.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류재건 의원　　○2003. 3. 31(제6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류재건의원 질문〉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일부 개통된 덕양산업~연암삼거리까지 L=610m 구간은 지형고가 전반적으로 높아 도로부분을 낮게 시공시 기존 입주공장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되는 공감을 하며 또한 인접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주보상 등에 대하여는 광역시에서 검토 계획중임 ○앞으로 교통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안전시설(차선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 설치되도록 건의하겠음.
〈류재건의원 질문〉 ○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우수기시 침수대책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산업로(연암사거리, 효문사거리)는 우수기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는 곳으로 노면수 배제를 위한 침수 해소대책이 필요하여, 2002년 11월 울산광역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시에 건의하여 업무협의 결과 시가지 상습침수지역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2.12~2003. 1)완료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관리책임자 지정을 요청하였음. ○향후 울산광역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한 산업로변 도로측구정비(L=1.8㎞) 및 저류지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구에서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임.
〈류재건의원 질문〉 ○덕양산업 옆 연암삼거리 앞 교통신호체계를 실시하면 교통대란은 불보듯이 뻔한 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덕양산업 앞과 연암삼거리는 교차로가 현지 지형적인 형태로 볼 때 불균형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정자방향 31호 국도가 편도1차선 밖에 되지 않아 교통량을 수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따라서 차량으로 많은 정체가 예상되고 있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차로 접속도로의 개선이지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지금 건설중인 배면도로가 2004년 완공되면 어느 정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출퇴근시간대 신호기를 변동운영하고 교통경찰의 상주를 울산중부경찰서에 협조요청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류재건의원 질문〉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 APT 입주전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안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올해 2월에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등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 구획정리지구조합장, 평창건설관계자, 관련부서 과장과 구청 도시건설국장실에서 「평창2차아파트 사전점검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메가마트 입구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조기 개설과 조경시설 완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교통영향평가사항 이행 등 5월초까지 승인조건을 이행하여 입주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합의를 하였음. 또한, 오는 4월 중순경 최종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2003.3.12일 평창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가로등 설치요청이 있은 이후 가로등 설치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가로등이 설치되지않은 상태에서, 평창2차아파트 2,100여 세대가 금년 6월초에 입주 예상으로 평창 2차 입주민의 입주를 위한 아파트 사용승인 됨은 추가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가로등)미 설치시에는 아파트 사용승인을 보류등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구획정리조합과 평창건설에 가로등 설치 촉구와 시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임. ○ 학생 수용 문제는 현재 건립중인 명촌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 예정이어서 주공아파트와 평창리비에르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2차 입주 학생들을 인근 학성초등학교에 당분간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학생 수송버스를 운행할 예정임. ○평창2차 사용검사시에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제61회임시회 류재건의원 구정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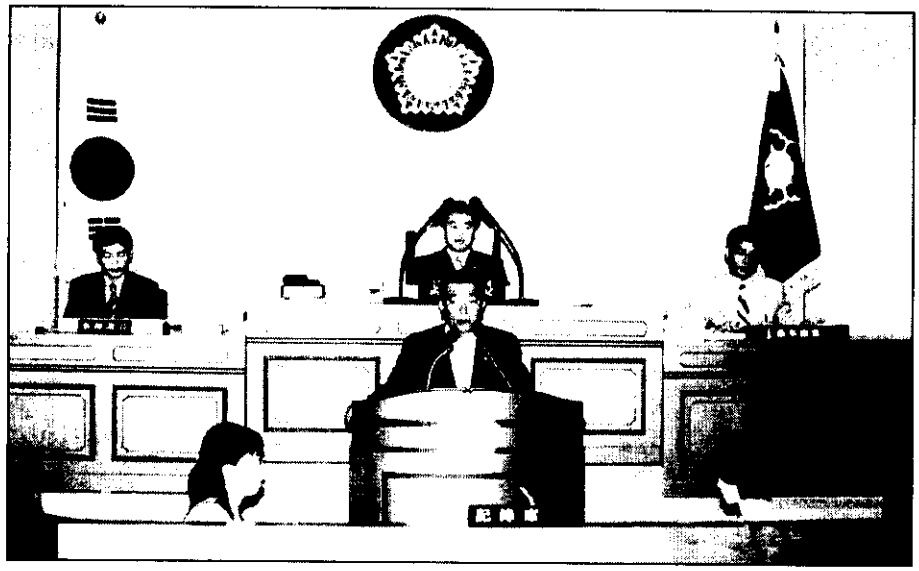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 인구의 증가 및 유입을 위한 방안 및 대책

○질문의원 : 윤임지 의원　　○2004. 6. 10(제7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임지의원 질문〉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 기준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이상범구청장 답변〉 ○도·농 통합지역으로서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이 동이냐, 면이냐에 따라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그것도 6:1편차를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동 지역이라도 지역여건이 농·어촌으로 형성된 지역은 면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공선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윤임지의원을 비롯한 강동동 주민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호소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진정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면 주민들의 서명서에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농 통합형태의 자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구인 우리 구의 특수성이 공선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지역국회의원과도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윤임지의원 질문〉 ○강동동의 교육·문화·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이상범구청장 답변〉 ○교육행정의 직접적인 해결 당사자는 교육청이지만 우리 구청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음. 말씀하신 내용 중 강동동에 살면서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결과 대략 2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이들은 자녀교육, 월성 원전지역 혜택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주민들로서 이들에 대해선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치시키도록 주민등록지 기관과 공조해 나가는 한편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임지의원 질문〉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완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이상범구청장 답변〉 ○강동지역에는 2~3개의 가칭 개발조합이 구성되어 환지 방식의 주민개발이 추진되어온 것도 사실이며,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가칭 강동산하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2004년5월17 우리 구에 접수하여 현재 행정의견 수렴 등 검토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향후 개발방식이 선정되어 개발이 완료되면 강동지역은 상당한 정도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위락·휴양·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전원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우리구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제72회임시회 윤임지의원 구정질문〉

제2절 4분자유발언

□ 류재건의원

○ 발언일시 : 제55회임시회 제9차본회의(2002. 9. 14)

○ 건　　명 :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 등에 관하여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의회와 집행부간의 몇 가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방의회가 생긴지 11년이 된 마당에 새삼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주 역할이지만 때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를 혹자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분위기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은 하되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취임사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주시되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부탁하셨습니다.

3대의회 개원축사에서도 주요정책과 업무에 있어서 항상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련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3대 의회는 8명의 의원 중 6명이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좀더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부하겠다고 지난 9월3일에서 5일까지 국회까지 가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 8월 초에 확정이 되어 실시한 것입니다. 확인해 본 바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몇 개의 위원회가 열린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가위원회 9월3일, 도시계획위원회 9월5일, 보상심의위원회 9월5일에 열려 해당의원보고 참석하라면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위촉을 받아들였는데, 혹시나 의원이 참석하면 골치 아프니까 의원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열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례회 기간 중 공식회의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기 중인 지난 9월10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것도 하루 전에 개최한다는 공문만 해당의원 책상에 두고 간 것에 대하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협력이란 것이 의회만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동반자이며 협력관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해 행위가 다 이루어진 결산안 심의라지만 의원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되어 서면제출로 대신하는가 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답변준비로 정회소동이 벌어지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결산서류 곳곳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너무도 준비가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가 그리도 만만해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장단에게 엄중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이후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관계유지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건의원

○ 발언일시 : 제58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2002. 11. 25)

○ 건　　명 : 북구지역 화장장유치 계획에 관하여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효문동 출신 류재건의원입니다.

금일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착잡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북구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전임 구청장이 발표하였을 때

북구주민 대다수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86% 라는 압도적인 반대의사로 인해 당시 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겠다며 화장장유치 포기의사를 분명히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신임 구청장이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13만 북구 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빌미로 화장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행정능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며, 안하무인한 명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구에는 구청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독자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간다면 머지않아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구청장은 지금까지 화장장 유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이끌어 가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재경의원

○ 발언일시 : 제64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2003. 7. 7)

○ 건　　명 :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의 역할

○ 발언내용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소1동출신 이재경의원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울산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 올해도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대의 화두 또한 '지방분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우리들 의식 속에 자율과 자치의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각 지방의회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봉사자이자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변화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집행부가 아직까지 기존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준비자세와 무계획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태도에 대해 주민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과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작년 말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2003년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보고

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본 의원도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믿고 동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만,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 이에 대한 추가 소요되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집행부와 해당 동 의원의 말을 믿고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즈모市 이와쿠니시장은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모토하에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서의 행정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되었던 상연암천과 마동천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예산 편성액 전부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업들은 사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울산시의 관련부서 및 광역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시 그 지역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의회에서 힘들게 승인 해준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해명과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에도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의회 답변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에서 보듯이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심의과정에 의원들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신중성이 부족했다든지, 경상적 경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 부족을 증명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3만 구민이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의안 심의시 준비 부족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결국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자 주민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이 북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좀더 노력해 달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편으로 북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범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근의원

○ 발언일시 : 제6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03. 9. 25)

○ 건　　명 : 집행기관 의혹진상규명위원회 설치요구건

○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농소2동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해 온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속에서 다소 선택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운영과 의회와의 신의를 무시하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통하여 13만 북구주민과 타 단체들이 가지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서 '희망공동체 북구'를 건설하는 토대의 밑거름으로 삼고저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바쁜 업무속에서도 '건강 지킴이'라는 도서출판 기념회를 가져 다른 동료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활성화와 북구청의 이미지 향상 효과를 안겨 준 우한곤 민방위계장과, 이번 태풍에도 다른 공무원들 역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추석휴가 마저 반납하고 강동해안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공을 세운 손성익 수산계장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 지방자치라는 주민참여 정치가 실시된 이후 혼란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도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의 공무자세와 민주적 절차를 과장한 행정집행에 있어 우려를 넘어 불신과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동료 이재경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예산 집행이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와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공무원들의 자기 편의적 계획과 발상으로 계획만 무성할 뿐, 실제 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설치지원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구청장이 의회와 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도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승진·전보발령 등 인사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등 구청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한 의회의 고민은 마치 간섭으로 치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계약직채용과정, 중산동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은 상식을 가진 주민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작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련의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합리적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균형유지를 거부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나는 차후 모든 책임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몫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늦게나마 집행부가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원한다면 구청장은 과거 짧은 기간이나마 얻은 의정 활동의 경험을 깨끗이 잊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이후로는 의회를 터부시하는 행위를 삼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실천하는 집행부, 확실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태어나길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02. 7. 1 ~ 2004. 6. 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중	불 가
계	22	22	22		
2002	8	8	8		
2003	10	10	10		
2004	4	4	4		

2. 2002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8건		
○2002. 7.10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부과 방법연기 요청	상안동 381-1 농소3동 발전 협의회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부과를 '02. 12월말까지 연기 요청	○2002. 7. 12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고 수수료부과·징수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기 바람.
○2002. 7.10 ○아파트주변도로	연암동 370번지	○아파트주변에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2002. 7. 16 ○교통규제시설심의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건의	LG진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사고위험이 크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건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가·부에 따라 조치계획임.
○2002. 9.30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호계동 873-4 이경수	○호계동 833-1번지 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요청	○2002.10. 9 ○호계동 833-1번지 자진철거 공문 발송 ○2003.1.2 ○현지 확인 자진철거 완료
○2002. 7.20 ○농소3동사무소 신축 공사 중지 요청	상안동 381-1 쌍용아진 2단지 입주자 대표 문석주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	○2002. 7. 26 ○기 회신('02.6.5)한 내용을 참조바라며, 농소3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협조 바람.
○2002. 11. 7 ○냉천경로당 증축 건의	신천동 481-10 엄종섭	○냉천경로당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옥상에 조립식으로 증축해 줄 것을 건의함.	○2002. 11. 26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 조치 계획임.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2. 11.26 ○화봉중학교 배정을 위한 진정건	화봉동 426 대우아파트 103-503 정미경외 842명	○현 송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전원 화봉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진정건의	○2002. 12. 4 ○현재 교육시설 여건으로는 전원 화봉중 배정이 불가함.
○2002. 11.28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반대	천곡동 775 박계현	○천곡동 741-1번지에 건립예정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 진입로 문제, 생활오염문제 등으로 건립반대 진정	○2002.12. 6 ○노인전문요양원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므로 주민의 이해를 바라고, 향후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것임.
○2002. 12.20 ○상안동 마을 주민 숙원사업 해결	상안동 410-6 이종해	○상안동 마을앞 72-1번지외 30필지 객토사업 허가에 따른 진정건의	○2002.12.21 ○집행부- 이첩

3. 2003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10건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3. 2. 7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진정	매곡동 주민 대표자 협의회 농소1동 8통장외 22명	○방어진 및 삼산방면 버스노선 확대 ○시내 및 모화방면의 시내버스를 매곡을 경유하여 운행 ○매곡(마동)을 종점으로 20-1번외 신 노선을 증설하여 울산역-삼산-공업탑을 경유하여 율리종점까지 신노선 개편	○2003. 2. 7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진정민원 집행부 및 울산광역시 이첩
○2003. 2. 24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진정	천곡동 411 쌍용아진A 203-103 자치회장 배두환	○현 버스노선 유지 및 마을버스 2대 추가운행	○2003. 2. 24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진정민원 집행부 및 울산광역시 이첩
○2003. 3. 12 ○약수마을 진입도로 조기개설탄원	중산동 894 약수마을 대표 류인덕외 320명	○송림자연농원에서 약수마을까지 동해남부선 철도변을 따라 진입도로 조기개설	○2003. 3. 14 ○송림자연농원에서 약수마을입구까지 도로조기 개설에 관한 탄원민원 집행부 및 종합건설본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3. 3. 5 ○성은아파트 재해발생 방지 대책 건의	염포동 성은A B동306호 입주자대표 김복만외 111명	○성은아파트 옹벽 붕괴 및 절개지 산사태위험 예방대책강구	○2003. 3. 19 ○산사태 위험:응급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제거와 지반정리, 우회배수로 설계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조치계획은 200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옹벽붕괴위험:옹벽은 사유재산임으로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구노력 강구 및 구에서도 안전진단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해소방안 마련
○2003. 3.29 ○이화중학교 진입로 조기 확장 개설	중산동 676-1 현우파크 602호 자영회장 조정욱외126명	○중산동7번국도에서 이화중학교까지의 진입로 조기 확장개설	○2003. 4. 7 ○학교개교와 더불어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검토중임.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3. 4. 29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도로 노면 평탄작업에 관한 진정	효정고등학교장 및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김동진	○진입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주차위반 단속 ○도로노면 패인부분 평탄작업 ○주 진입로 반사경 설치	○2003. 5. 6 집행부 이첩 ○효정고등학교 진입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건은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요청(4.30)
○2003. 5. 19 ○무단건물 신고 진정민원	호계동 873-4 이경수	○호계동 833-6번지와 인접한 호계동 833-1번지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와 이격 없이 지어져 일부 침범 시정조치	○2003. 5. 19 ○호계동 833-1번지 상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내 1944년 건축되었으며, 1977년도에 일부 증축된 건물로 건축법상 강제철거 명령등 강제하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므로 당사자간 협의해소
○2003. 6. 20 ○인접상가 건축물 관련민원	매곡동 422-2 현대파크 맨션	○매곡동 현대파크맨션 104동 앞 상가건물의 불법건축물	○2003. 6. 24 -건축선(도로)침범 및 현대파크아파트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입주자대표 하영태	시정조치 ○상가 건축물 건축선(도로) 침범 ○상가 건축물이 법정 주차장 인접 토지(아파트공동소유)를 침범-보수 및 굴착으로 인한 소음, 아파트 주변도로 교통 혼란예상 등	공동소유 매곡동 569-9번지에 주차장 침범여부에 대하여는 당시 경계측량 말뚝사진을 근거로 건축관계자(감리자)에게 침범여부확인처리 ○하수관로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시에는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억제(공사중지) 현장지도-상가 건축물의 규모,용도(목욕탕,찜질방)로 볼 때 진입로의 심각한 병목현장 없을 것임.
○2003. 8.19 ○7번국도 확장에 따른 보상가 현실 보상요구	호계동 25B7N 강석주외 18명	○7번국도 확장공사 편입지주 편입토지 현실보상 요구 및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요구	○2003. 8. 25 ○울산광역시 이첨(불가), 국가가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2021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년 울산도시계획상 녹지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변경불가
○2003. 12. 11 ○달천그린카운티 주거환경개선 요청	달천동 그린카운티 주거환경 감시대책위 하영태외 7명	○2005년1월 입주예정인 달천그린카운티아파트 주변환경(비소오염, 학교건립, 도로확장 등)개선 요청	○2003. 12. 12 ○집행부 이첩 (12.31민원인에게 통보) ○비소오염문제는 동의대학교와 농업기반공사에 토양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대책수립시행 ○학교건립은 교육청과 지속협의추진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가스공급은 경동도시가스로부터 투자계획을 확정한상태이며, 기타사항은 토지신탁(주)와 협의

4. 2004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4건		
○2004. 3. 2 ○호계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에 따른 건의	호계공설시장 번영회 김영숙외 28명	○호계공설시장사용료 인상(31.28%) 부과에 따른 재검토 건의	○2003. 3. 17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의 상승에 의함. ○소방도로개설 및 도시가스 공급 조기공급 등 기반시설 조기설치 대안강구
○2004. 5. 17 ○농소3동 관광호텔 건축관련 허가반대	상안동 358-1 그린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광혁	○상안동 317번지외 12필지에 건축예정인 관광호텔건립 반대	○2004. 5. 25 ○건축위원회(5.20) 개최 건축물의 구조안전, 소방 및 건축계획에 의한 이용객의 안전상 부결처리
○2004. 5. 27 ○오토밸리조성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안 변경 요구	신천동 745-64 조광열외 48명	○오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안 (진입로)변경요구	○2004. 5. 31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30호선으로「매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에 맞추어 결정 ○노선 변경시 하천 폭 감소로 집중 강우시 재해위험 산재 노선변경은 불가
○2004. 6. 22 ○염포동 농로개설 요구	염포동 479-3 박정준	○염포 쌍떼빌 건축공사로 인한 그늘발생 및 영농 피해, 건설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발생 및 농로개설 요구	○2004. 6. 28 ○건축법에서 인접대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충족하고 있고, 소음분진피해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해결전망 ○공동주택을 가로지르는 농로개설은 불가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1. 미군 장갑차에 치인 두 여중생에 대한 결의안

가. 발의자 및 일자 : 류인목의원 외4명 (2002. 9. 11)

나. 의결일시 : 2002. 9. 14 (제5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미군장갑차에 치여 숨진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공개사과 등 미국정부의 성의 있는 사건해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함

라. 주요골자

○주한미군 통수권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신효순, 심미선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 요구

○미2사단 측은 두 여중생의 유족, 산회단체 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과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진상을 밝힐 것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의 공평한 재판을 위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재발방지, 유족에게 신속한 배상,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 등을 신속히 실행할 것.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바. 조치사항 : 주한미국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에 결의문 이송

2. 이라크전쟁중단 요구 및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안

가. 발의자 및 일자 : 하인규의원 외2명 (2003. 3. 28)

나. 의결일시 : 2003. 3. 31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전쟁의 종식과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이라크 전쟁중지 요구

및 한국군 파병반대를 촉구하기 위함

라. 주요골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지원 및 한국군 파병계획 즉각 철회 요구

○미국의 이라크 전쟁복구비용 요구 단호히 거부

○국회의 한국군미국의 이라크 전쟁복구비용 요구 단호히 거부

마. 심의결과 : 원안 가결

바. 조치사항 : 청와대, 국회, 국방부 결의문 이송

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동에 따른 결의안

가. 발의자 및 일자 : 김대영의원 외2명 (2003. 7. 3)

나. 의결일시 : 2003. 7. 7 (제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지금 교육부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법령에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를 위한 NEIS 시행을 강요하고 있음.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NEIS 파동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라. 주요골자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진(입)학의 3개 영역을 폐기, 분리하여 시행토록 촉구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과 학생 인권 옹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행토록 촉구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교무학사 업무추진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일선 학교의 NEIS 시행 강요를 즉각 중지 촉구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시스템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 전까지

모든 학교의 NEIS 강행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NEIS 이외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실시 촉구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바. 조치사항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의문 이송

4.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

가. 질문자 및 일시 : 류재건 의원 (2004. 3. 31 제61회 임시회)

나. 질문대상자 : 구청장

다. 질문분야 : 효문공단도로 개설로 인한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

라. 질문요지

○개설된 효문공단도로 중 일부가 기존도로 보다 3~4m정도 높게 승고되어 도로가 뽈록하게 개설되어 있어 향후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을것이라는 주민여론이 있으므로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배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도로가 개설되어 우수기시 상습 침수가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덕양산업옆 연암삼거리 도로는 출퇴근 및 물동량 수송등으로 평소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함. 공사기간내 교통대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명촌주공,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입주전 진입로 가로등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안전 편익시설 설치 여부 및 대안은?

마. 답변내용

○효문공단도로 일부 구간은 지형고가 높아 도로부분을 낮게 시공시 기존 입주공장 진입도로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교통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안전시설인 차선, 안전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음.

○상습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 울산광역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해서 산업로변 도로측구정비 및 저류지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임.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차로 접속도로의 개선이지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신호기를 변동 운영하고, 교통경찰의 상주를 울산중부경찰서에 협조요청 함.

○우리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미설치시에는 아파트승인 보류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구획정리조합측과 평창건설에 가로등 설치촉구 및 시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학생수용 문제는 현재 건립중인 명촌초등학교 개교 전까지는 학성초등학교에 수용토록 강북교육청과 기 협의되어 있음

5. 강동동 인구감소 대책에 관한 질문

가. 질문자 및 일시 : 윤임지 의원 (2004. 6. 10 제72회 임시회)

나. 질문대상자 : 구청장

다. 질문 분야 :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 인구의 증가 및 유입을 위한 방안 (대책)

라. 질문요지

○독자적인 선거구와 행정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구수인데,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동동으로써는 생존차원의 문제이자 독자성을 유지하느냐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 현행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상 독자적인 인구하한선이 도농통합형태의 일반시의 경우 면단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1,000명인데 반해 광역시의 도농복합형태라도 자치구의 경우는 6,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모순임. 이에 따른 집행부의 노력과 해결방안은?

라. 답변내용

○가장 좋은 방법은 공선법 개정 및 강동개발 촉진으로 인구 유입정책 임.

○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자치구인 우리 구의 특수성이 공선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지역 의원 및 국회의원과도 공동노력을 기울이겠음

제5절 의정활동일지

2002년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 9(화) 14:00	의 사 당	개 원 식	○제3대 북구의회 개원 행사	
7.10(수) 17:10	의 장 실	간 담 회	○북구청공무원 노조위원장외 3명 내방 간담회	
7.11(목) 14:00	의 장 실	인 터 뷰	○시사 주간지 "주간인물" 의장당선 인터뷰	
7.11(목) 19:00	황금비늘 식당	월 례 회	○지방 자치위원회 회의	
7.12(금) 12:00	이조 한정식	간 담 회	○구·군의회 의장단 모임	
7.13(토) 13:00	하이트 타운	단합대회	○송정동 주민 단합대회	
7.13(토) 17:00	유스 호스텔	전진대회	○2002 민주노동당 전진대회	
7.15(월) 14:00	산업현장	격려방문	○민노총 산하 사업장 방문 (효성 울산공장외 3곳)	
7.16(화) 10:00	공사현장	기 공 식	○울산지방경찰청 청사건립 기공식	
7.18(목) 14:00	북구청 2층회의실	기 념 식	○제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7.18(목) 18:30	현대백화점 울산점9층	사 진 전	○제6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7.19(금) 10:00	문화예술 회관	기 념 식	○울산매일신문 창간 11주년 기념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19(금) 11:00	의 장 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7.20(토) 11:00	무 룡 정	궁도대회	○제2회 북구청장기 궁도대회	
7.22(월) ~7.26(금) 〈6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54회 북구의회 임시회	
7.22(월) 12:00	산길 영양탕	간 담 회	○북구청 출입기자와 오찬 간담회	
7.25(목) 12:00	해송복집	간 담 회	○북구청 간부 공무원과 간담회	
7.26(금) 11:00	강동 판지해변	수련대회	○북구 농업학습단체 한마음 수련대회	
7.31(수) 12:00	롯데호텔	간 담 회	○구·군의회 의장단 오찬 모임	
8. 2(금) 09:00	북구의회	청사견학	○한국걸스카우트 울산연맹 청소년의회학교 학생 내방	
8. 5(월) ~8. 9(금) 〈5일간〉	북구지역 정보센터	정보화 교육	○의원 정보화 교육	
8. 8(목) 19:00	문화회관	한마당 행사	○통일문화 한마당	
8.10(토) 11:00	무 룡 정	단합대회	○북구 생체협 주관 단합대회	
8.14(수) 14:00	의 장 실	간 담 회	○한국케이블TV 제작팀 내방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15(목) 10:00	문화예술 회관	경 축 식	○제5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8.15(목) 11:30	북정 근린공원	추 모 식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행사	
8.15(목) 12:30	농소 운동장	체육대회	○농소1동 통대항 생활체육대회	
8.15(목) 13:30	농소고교	체육대회	○농소3동 체육대회	
8.15(목) 14:00	화봉 중학교	축구대회	○제1회 8.15 광복기념 화봉·연암 친선 축구대회	
8.16(금) 11:00	북구청 3층회의실	정 례 회	○민주평통 정례회의 및 위촉장 전수식	
8.16(금) 12:00	ubc 방송국	수재민 돕기 행사	○ubc 울산방송 수해 이재민 돕기 방송	
8.18(일) 20:00	자유시간	일일호프	○무룡 조기회 주관 뇌종양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	
8.20(화) 11:00	농소초교	수련대회	○제5회 북구농업경영인 연합회 하계 수련대회	
8.20(화) 21:20	북구청 충무상황실	격려방문	○2002 을지연습 참여자 격려방문	
8.21(수) 10:00	의 장 실	간 담 회	○송정동 주민자치위원장 내방 간담회	
8.21(수) 11:00	북구청 충무상황실	참관행사	○2002 을지연습 참관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23(금) 16:00	의 장 실	간 담 회	○북구장애인 협회장외 임원 내방 간담회	
8.25(일) 09:00	태화강 둔치	축구대회	○울산 통일 축구대회	
8.25(일) 10:00	정자해변	단합대회	○해병전우회 북구지회 환경 캠페인 및 단합대회	
8.25(일) 10:00	농소고교	축구대회	○농소3동 조기회 축구대회	
8.26(월) 13:30	화봉 중학교	축구대회	○제1회 8.15 광복기념 화봉·연암 친선 축구대회	
8.26(월) 19:00	북구청 2층회의실	교육 세미나	○장애인 복지향상 교육 세미나	
8.27(화) 15:00	부산시 의회	간 담 회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관련 간담회	
8.28(수) 14:00	북구청 3층회의실	설 명 회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설명회	
8.29(목) 14:00	ubc 울산방송국	녹화방송	○김진영 의장 ubc 시사진단 출연 녹화방송	
8.30(금) 08:00	경남 남해	선진지 견학	○음식물자원화 시설 선진지 견학	
8.30(금) 19:00	두 번째 맛있는 집	간 담 회	○2대, 3대 북구의원 간담회	
9. 3(화) ~9. 5(목)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	의원연수	○초선 의원 연수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 6(금) ~9.14(토) 〈9일간〉	의 사 당	정 례 회	○제55회 북구의회 정례회	
9. 6(금) 12:00	진고개 식당	간 담 회	○북구청 간부, 시·구의원 오찬 간담회	
9. 6(금) 19:00	동호초밥	간 담 회	○구·군 의장단 회의	
9. 7(토) 17:00	울산대공원	시 상 식	○제3회 통일 글 쓰기,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	
9. 7(토) 18:00	울산대공원	보고대회	○8. 15 민족통일 울산 보고대회	
9. 9(월) 12:00	상안가든	간 담 회	○북구청 간부공무원과 오찬 간담회	
9.10(화) 10:00	시의사당 대회의실	지역회의	○제10기 민주평통 지역회의	
9.10(화) 11:30	울주군 의장실	전 달 식	○구·군의회 의장단 수재 의연금 전달식	
9.10(화) 12:00	사누끼 식당	간 담 회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자문위원 오찬 간담회	
9.11(수) 12:00	대청마루	간 담 회	○의원과 동장 오찬 간담회	
9.13(금) 15:00	화봉공원	바 자 회	○수재민 돕기 먹거리 장터	
9.13(금) 19:00	두 번째로 맛있는 집	간 담 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14(토) 14:00	북구청사 광 장	캠 페 인	○구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	
9.14(토) 15:00	21세기 좋은 병원	개 원 식	○21세기 좋은 병원 개원식	
9.15(일) 06:00	동천초교	달리기 대회	○제4회 구민화합 건강달리기 대회	
9.15(일) 07:30	동천초교	축구대회	○의원과 북구 생체협 이사 친선 축구대회	
9.16(월) 13:30	태연 재활원	자원봉사 활동	○울산시 기관·단체장 자원봉사활동	
9.17(화) 13:30	송정 관내 경로당	위문품 전달	○경로당 위문품 전달	
9.17(화) 17:30	양정 문화센터	개 소 식	○양정주민문화센터와 류인목 의원 사무실 개소식	
9.17(화) 18:30	중구 지구당	개 소 식	○민노당 중구지구당 개소식	
9.18(수) 19:00	원두막집	이 사 회	○송정동 체육회 정기 이사회	
9.24(화) ~9.27(금) 〈4일간〉	중 국	안보시찰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자문위원 안보시찰	
9.27(금) 18:00	의 사 당	영상물 제작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9.28(토) 10:00	농소 운동장	체육대회	○제1회 울산지역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28(토) 12:00	시 운영위원장 사무실	간 담 회	○시·군·구의회 운영위원장 간담회	
9.29(일) 09:00	현대차 사택구장	테니스 대회	○제5회 북구청장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9.29(일) 09:00	화봉 중학교	축구대회	○제7회 화봉·연암 축구연합 회장기 축구대회	
9.29(일) 09:00	양정초교	체육대회	○현대자동차 노연투 추계 체육대회	
9.29(일) 10:00	호계초교	족구대회	○북구족구연합회 회장 이· 취임식 및 동아리 족구대회	
9.30(월) 11:30	양정동 체육공원	한마음 대회	○2002 북구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	
9.30(월) 12:00	소야정 식당	상 견 례	○구·군의회 의원 상견례	
9.30(월) 15:00	북구청 3층회의실	보 고 회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 용역사업 2차 보고회	
10.1(화) 09:30	농소 운동장	게이트볼 대회	○제2회 북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0.1(화) 10:30	문화 예술회관	기 념 식	○제2회 울산시민의 날 기념 행사	
10.2(수) 10:00	현대차노조 노동대학원	입 학 식	○4기 무룡탑 주부대학 입학식	
10.2(수) 19:00	청년학교	입 학 식	○울산청년회 9기 청년학교 입학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0.4(금) 11:00	양정동 체육공원	수련대회	○북구 바르게살기 위원 한마음 수련대회	
10.4(금) 14:00	의 장 실	간 담 회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관련 의원 간담회	
10.4(금) 19:00	태화강 둔치	개 막 식	○제36회 처용 문화제 개막식	
10.6(일) 10:00	농소 운동장	체육대회	○제3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 대회	
10.8(화) 13:00	현대 중공업	이·취임 식	○현대중공업 노조 13대· 14대 집행부 이·취임식	
10.9(수) 11:30	오리쌀 재배지	품 평 회	○친환경 오리농법 쌀생산 품평회	
10.9(수) 14:00	경주 사격장	간 담 회	○의원과 북구 사격팀 간담회	
10.12(토) 11:00	의 장 실	간 담 회	○의원 간담회	
10.12(토) 16:00	동구청소년 문화의 집	기 념 식	○"함께"창립 1주년 기념행사	
10.13(일) 09:00	농소 운동장	축구대회	○북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10.14(월) 12:00	남구의회 의장실	간 담 회	○구·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10.15(화) ~10.25(금) 〈11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0.18(금) 09:30	의 장 실	간 담 회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임원 내방 간담회	
10.19(토) 15:00	동천 체육관	개 회 식	○제5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10.20(일) 08:40	궁도장외 11개소	격려방문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10.21(월) 12:30	화봉 파출소	기 념 식	○화봉파출소 경찰의 날 기념 행사	
10.21(월) 17:00	평창 리비에르	한마음 대회	○평창 리비에르 입주민 한마음 대회	
10.22(화) 11:00	올림픽 파크텔	개 회 식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10.22(화) 14:00	올림픽 파크텔	토 론 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 토론회	
10.23(수) 12:00	롯데호텔	간 담 회	○울산 지방경찰청장과 오찬 간담회	
10.25(금) 10:00	문수 보조구장	체육대회	○시·군·구의회 의원 체육대회	
10.26(토) 18:00	종하 체육관	복싱대회	○한국복싱 2대 타이틀 매치	
10.26(토) 19:00	장승촌 가든	수련대회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수련대회	
10.27(일) 10:30	농소 운동장	체육대회	○제11회 농소지구 아파트 연합 체육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0.27(일) 13:30	문화회관	볼링대회	○제3회 북구 생체협 회장기 볼링대회	
10.28(월) 14:00	시청 프레스룸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개악반대 기자회견	
10.29(화) 20:00	하이트 라운지	일일호프	○송정동부녀회 불우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	
10.30(수) 10:50	송정초교	명예교사	○1일 명예교사 활동	
10.30(수) 20:00	OB 프라자	일일호프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독거 노인돕기 일일호프	
11. 1(금) 12:40	강동 축구장	축구대회	○의원과 네트워크 자매도시 친선 축구대회	
11. 2(토) 10:00	공설 운동장	축구대회	○제2회 경상일보사배 울산 한마음 축구대회	
11. 4(월) ~11.11(월) 〈8일간〉	미 국	현지견학	○화훼단지 조성사업 관련 현지 견학	
11.10(일) 09:00	농소 테니스장	테니스 대회	○제1회 북구 생체협 회장배 테니스 대회	
11.10(일) 10:00	농소고교	족구대회	○제4회 북구청장기 족구대회	
11.11(월) 11:00	문화회관	증진대회	○제4회 북구 장애인 가족 복지증진대회	
11.11(월) 10:00	종하 체육관	기 념 식	○제4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시민안전 다짐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1.12(화) 11:00	북구청 2층회의실	한마음 대회	○영·호남 친선 한마음 대회	
11.12(화) ~11.14(목) 〈3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57회 북구의회 임시회	
11.13(수) 14:00	코리아나 호텔	연 찬 회	○평통 자문위원 연찬회	
11.13(수) 15:00	북구청 3층회의실	설 명 회	○북구 자활후견기관장 이·취임식 및 사업설명회	
11.14(목) 10:40	북구청 3층회의실	보 고 회	○정보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11.14(목) 11:30	시청 프레스룸	기자회견	○집단연가투쟁 참석 공무원 징계반대 기자회견	
11.17(일) 09:00	농소 운동장	체육대회	○현대자동차 5공장 추계 체육대회	
11.17(일) 09:30	호계초교	배드민턴 대회	○제2회 북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11.17(일) 15:30	태화강 둔치	시 상 식	○울산 통일축구대회 시상식	
11.19(화) 11:00	호계성당	졸 업 식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여성학교 졸업식	
11.19(화) 13:00	올림픽공원 제3경기장	의원대회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대회	
11.20(수) 10:30	염포주민 문화센터	졸 업 식	○무룡탑 주부대학 졸업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1.20(수) 11:00	울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회	○제5회 울산시 농업인 대회	
11.21(목) 15:3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상 견 례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내방 상견례	
11.22(금) ~11.23(토) 〈2일간〉	경주 문화회관	의원연수	○2002 하반기 의원 특별연수	
11.25(월) ~12.20(금) 〈26일간〉	의 사 당	정 례 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11.25(월) 11:30	북구청사 서편	전 달 식	○북구 농업경영인연합회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	
11.25(월) 18:00	평등여성 사무실	기 념 식	○평등여성 창립 2주년 기념행사	
11.29(금) 19:00	문화회관	기 념 식	○울산여성회 창립3주년 기념 및 제2회 여성문화 한마당	
12. 4(수) 19:00	문화회관	정기총회	○현대자동차 수지침 봉사회 정기총회	
12. 4(수) 19:00	북부신협	기 념 식	○화봉 자율방범대 8주년 기념행사	
12. 5(목) 11:00	호계 구획지구	기 공 식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공식	
12. 6(금) 16:30	롯데호텔	기 념 식	○북울산 JC 창립 제12주년 기념행사	
12. 8(일) 20:00	김서방 숯불갈비	일일호프	○염포조기회 불우회원돕기 일일호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13(금) 15:00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공 청 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민 공청회	
12.13(금) 18:00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정기총회	○송정동 체육회 정기총회	
12.14(토) 18:00	무룡고교	해병의 밤	○해병대 북구 전우회 2002년 해병의 밤 행사	
12.17(화) 10:00	북구청 3층회의실	설 명 회	○2003 정자해변 해맞이 축제 기획설명회	
12.17(화) 20:00	스핑크스 레스토랑	일일호프	○농소초교 축구꿈나무 돕기 일일호프	
12.21(토) 09:30	MBC 울산방송	방송출연	○의장 MBC 울산진단 패널 출연	
12.21(토) 11:00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자원봉사자 대회	○2002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12.21(토) ~12.27(금) 〈7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59회 북구의회 임시회	
12.21(토) 15:00	북구청 2층회의실	창 단 식	○북구 육상연합회 창단식	
12.22(일) 10:00	문화회관	탁구대회	○제1회 북구청장배 탁구대회	
12.23(월) 18:00	송림 자연농원	정기총회	○북구 자연보호협의회 2002년도 정기총회	
12.23(월) 18:00	문화회관	초청공연	○제3회 북구 풍물한마당 초청공연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24(화) 11:00	근 로 자 복지회관	정기총회	○환경미화원 울산시노조 3대 위원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	
12.24(화) 11:00	농소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북구 농업경영인 정기총회	
12.24(화) 12:00	한마음 횟 집	간 담 회	○의원과 북구청 간부공무원 오찬 간담회	
12.26(목) 17:30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송 년 회	○북구청 직원 가족 송년회	
12.27(금) 11:00	농소3동 사무소	개 소 식	○농소3동 사무소 개소식	
12.27(금) 14:00	평통 사무실	전 달 식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2002년도 장학금 전달식	
12.27(금) 17:30	하이트 타 운	송 년 회	○송정동 주민자치위 평가보고회 및 송년회	
12.27(금) 18:00	예 림 가	송 년 회	○북구 생체협 송년의 밤	
12.27(금) 18:00	자연농장	송 년 회	○북구지구당 송년회	
12.30(월) 09:00	현 대 중공업	대의원 대 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대의회 대회장	
12.31(화) 19:30	동언횟집	간 담 회	○2003 정자해변 해맞이 축제 위원 간담회	
12.31(화) 22:00	정자해변	해맞이 축 제	○2003 정자해변 해맞이 행사	

2003년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 1(수) 06:50	정자해변	해맞이 축 제	○2003 정자해변 해맞이 행사	
1. 3(금) 13:00	의 장 실	인 터 뷰	○울산케이블 TV 의장 신년인사 인터뷰	
1. 3(금) 14:00	행사현장	개 통 식	○호계철도 횡단도로 개통	
1. 4(토) 11: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간 담 회	○화봉·연암 학부모 화봉중학교 배정관련 간담회	
1. 6(월) 11:00	롯데호텔	신 년 인사회	○2003년도 기관·단체장 신년 인사회	
1. 6(월) 12:00	참가자미 횟집	긴 담 회	○북구의원 간담회	
1. 8(수) 12:00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신년 인사회	○시·구의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신년 인사회	
1.10(금) 11:00	북구청 2층회의실	신년 인사회	○2003년도 북구 관내 기관· 단체장 신년인사회	
1.17(금) 10:30	농소농협 3층	정기총회	○농소농협 제34기 정기총회	
1.18(토) 14:00	평창리비에르 관리사무소3층	개 소 식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 문화공간 개소	
1.20(월) 14:00	북구청 2층회의실	설 명 회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 설명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1(화) 09:00	문화회관 대강당	대의원 대 회	○현대자동차 노조 제16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	
1.23(목) 11:00	농소새마을 금고2층	정기총회	○6.25 참전 전우회 북구지회 창립 2주년 정기총회	
1.23(목) 14:00	삼성 SDI 레포츠센타	창 립 식	○울산 럭비협회 창립식	
1.24(금) 11:00	의장실	간 담 회	○북구의원 간담회	
1.27(월) 11:00	덕양산업	대의원대 회	○덕양산업 정기대의원 대회	
1.28(화) 11:00	북구청3층 소회의실	정기총회	○북구 생체협 정기총회	
2. 4(화) 14:00	농소3동 사무소	개 관 식	○농소3동 문화의 집 개관	
2. 5(수) 17:00	상안가든	간 담 회	○구군의회 의장회 간담회	
2. 6(목) 18:00	두 번째로 맛있는 집	간 담 회	○전·현직 북구의원 간담회	
2.11(화) 11:00	서 울 COEX	정기총회	○2003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정기총회	
2.12(수) ~2.20(목) 〈9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2.12(수) 12:00	대청마루	간 담 회	○북구의원과 북구청 출입 기자 간담회	
2.14(금) 15:00	의 장 실	전 달 식	○적십자회비 특별 성금 전달식	
2.15(토) 15:30	일지리버 앞 하천	달맞이 행 사	○농소3동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2.15(토) 16:30	신천천	달맞이 행 사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2.17(월) ~2.21(금) 〈5일간〉	북구지역 정보센터	인터넷 강의	○북구 관내 주민 대상 인터넷 실무 강의	
2.18(화) 13:30	성은아파트 뒷산	현장확인	○구의원 재해 위험지구 현장확인	
2.19(수) 11:00	북구청 2층 회의실	정기총회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2003년도 정기총회	
2.21(금) 19:00	울산장애인 복지센터	기 념 식	○울산장애인 복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2.25(화) 11:00	국회의사당 앞마당	취 임 식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2.27(목) 19:00	상공회의소 6층	정기총회	○울산 참여연대 정기총회	
2.28(금) 10:00	화봉동 일 대	환경정비	○봄맞이 화봉동 일대 환경정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 1(토) 10:00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기 념 식	○제84주년 3·1절 기념행사	
3. 2(일) 09:00	무룡고교	축구대회	○제1회 무룡조기 회장배 축구대회	
3. 3(월) 12:00	감포식당	간 담 회	○구·군 의장단 간담회	
3. 4(화) 19: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토 론 회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	
3. 6(목) 10:00	대 구 시민회관	조 문	○구·군의회 의장단 대구 지하철 참사 조문	
3. 7(금) 10:00	북구청 3층회의실	간 담 회	○구청장, 시·구 의원 간담회	
3. 7(금) 12:00	성 남 아구찜	간 담 회	○시 의장·부의장, 구·군 의장 간담회	
3. 7(금) 14:00	시의사당 3층회의실	창립대회	○지방분권 울산 본부 창립대회	
3.11(화) 15:00	의 장 실	간 담 회	○북구 농업인 단체 임원과 간담회	
3.11(화) 18:00	북구청 2층회의실	대의원 대 회	○2003년도 민노당 시지부 정기 대의원 대회	
3.12(수) 11:00	북구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북구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12(수) 19:00	북구청 2층회의실	토 론 회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 관련 주민 토론회	
3.13(목) 17:00	북구청 2층회의실	창 립 식	○북구 여성합창단 창립행사	
3.14(금) 10:30	농소새마을 금고 2층	정기총회	○북구 노인회 정기총회	
3.17(월) 11:00	울산시청 프레스룸	기자회견	○반전 평화 기자회견	
3.17(월) 15:00	농협울산본부 6층회의실	임 시 회	○울산시 국립대 설립 범시민 추진단 공동의장 임시회	
3.18(화) 17: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토 론 회	○제2차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	
3.19(수) 11:00	시의사당 3층회의실	보 고 회	○경부 고속철도 노선사수 관련 시정현안 보고회	
3.20(목) 15:00	울산시청 정문 앞	기자회견	○이라크 전쟁 반대 기자회견	
3.21(금) 09:00	남해음식물 자원화시설	견 학	○북구 주민과 남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견학	
3.22(토) 11:00	울산대 본관 1층	제 막 식	○정주영 전회장 흉상 제막식	
3.26(수) 10:00	의장실	간 담 회	○북구 족구 연합회 사무장 내방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26(수) 14:00	북구청 2층회의실	개 강 식	○제1기 북구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3.27(목) 18:00	지상레스토랑 3층	후 원 회	○울산 환경운동 연합 후원의 밤	
3.28(금) 11:00	강동농협 2층	전 달 식	○유포 장학회 제10차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식	
3.28(금) 15:00	의장실	인 터 뷰	○현대중공업 편집실 기자 내방 인터뷰	
3.30(일) 09:00	농 소 테니스장	개 회 식	○제6회 북구청장기 테니스 대회	
3.30(일) 10:00	호계초교 실내체육관	개 회 식	○제3회 북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3.31(월) ~4. 3(토) 〈4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61회 북구의회 임시회	
4. 3(목) 18:00	북구청3층 소회의실	전체회의	○2003년 북구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 전체회의	
4. 4(금) 18:30	롯데 호텔	간 담 회	○울산시장과 구군 의장단 간담회	
4. 5(토) 09:00	북 구 청 야외무대	기념행사	○제58회 식목일 나무 나누어 주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4. 6(월) 11:00	호봉사 내	위 령 제	○농소·송정 6.25 참전 전몰 군경 합동위령제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 7(월) 11:00	북구청 2층 회의실	오리엔테이션	○북구 생활체육교실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4.10(목) 15:00	상공회의소 5층	워 크 샵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워크샵	
4.11(금) 11:00	차 일 마을회관	한마음 큰잔치	○북구 배 작목반 한마음 큰잔치	
4.11(금) 14:00	북구청 2층 회의실	이·취임식	○북구 새마을 북구지회장 이·취임식	
4.12(토) 12:00	경주 식당	간 담 회	○시 의장, 구청장·군수, 구·군 의장 오찬 간담회	
4.16(수) 10:30	근 로 자 복지회관	기능경기대 회	○제5회 울산시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4.18(금) 10:00	서부구장	체육대회	○구·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4.18(금) 18:00	화이트 하우스	일일찻집	○장애인 직업재활기금 마련 어울림과 나눔의 자리	
4.19(토) 09:30	천곡동	추 모 회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회	
4.20(일) 18:00	남구청 6 층	취 임 식	○울산시 육상연합회 회장 취임식	
4.22(화) 14:30	동 천 체육관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23(수) 11:00	동 대 산 기박산성	의병축제	○제4회 동대산 기박산성 의병축제	
4.25(금) 18:00	경남횟집	간 담 회	○농소농협 조합장과 북구의원 간담회	
4.27(일) 09:00	농 소 운동장	축구대회	○북구 연합회장배 축구대회	
4.27(일) 10:00	화 봉 중학교	족구대회	○북구 연합회장배 족구대회	
4.27(일) 11:00	현 대 문화회관	탁구대회	○북구 생체협 회장배 탁구대회	
4.27(일) 14:00	금 강 볼링장	볼링대회	○북구청장배 볼링대회	
4.30(수) 15:00	경남은행 울산본부6층	개 소 식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 개소식	
5. 1(목) 15:00	시청 광장	발대식 및 부착식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110만 시민서명운동 발대식 및 차량스티커 부착식	
5. 2(금) 15:30	농협울산 지역본부	간 담 회	○구청장·군수와 구·군의회 의장 간담회	
5. 2(금) 18:00	롯데호텔	간 담 회	○구청장·군수와 구·군의회 의장 간담회	
5. 4(화) 10:00	농 소 운동장	기념행사	○2003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가족 운동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5. 5(월) 09:30	상방공원	큰 잔 치	○2003년 북구 어린이 날 큰잔치	
5. 9(금) 14:00	태연재활원	봉사활동	○북구의원 및 간부 공무원 하루 봉사체험 활동	
5. 9(금) 15:00	태화호텔	강 연 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김병준 위원장 초청 강연회	
5.10(토) 10:00	농 소 운동장	체육대회	○북구청 직원 체육대회	
5.11(일) 10:00	농 소 운동장	축구대회	○제3회 농소3동 체육회장기 조기 축구대회	
5.12(월) 13:00	부지현장	녹화방송	○북구어린이 도서관 건립지 선정 mbc 녹화방송	
5.16(금) 18:00	동 천 체육관	범시민 대 회	○울산 국립대 설립 촉진 범시민대회	
5.16(금) 18:00	의 원 사무실	개 소 식	○하인규 의원 사무실 개소식	
5.17(토) 10:00	북구청 2층 회의실	시 상 식	○2003년 효자·효부 시상식 및 위원 연수 교육	
5.18(일) 06:00	송정초교	달리기 대 회	○제5회 구민건강화합 달리기 대회	
5.18(일) 17:00	북구청 야외 공연장	기념행사	○연암 자율방범대 7주년 기념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5.19(월) 〈1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62회 북구의회 임시회	
5.20(화) 10:00	의 장 실	전 달 식	○결산 검사위원 위촉장 전달식	
5.21(수) ~5.23(금) 〈3일간〉	제 주 도	의원 연수	○의원 특별 연수	
5.27(화) 11:00	무 룡 정	궁도대회	○제3회 북구청장기 남녀 궁도대회	
5.27(화) 16:00	울산 학생체육관	개 회 식	○2003년도 울산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5.28(수) 14:00	코리아나 호 텔	보 고 회	○2003년 울산지역 통일정세 보고회	
5.30(금) 10:00	농 소 테니스장	테니스 대 회	○제2회 북구 생체협 회장배 테니스 대회	
6. 1(일) 10:00	무룡고교	체육대회	○효문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6. 1(일) 10:00	삼일초교	화합대회	○세종공업 조합원 가족 어울림 한마당	
6. 4(수) 14:50	북구청 2층 회의실	작 품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차돌이 가족 작품발표회	
6. 4(수) 12:00	황금비늘	간 담 회	○결산 검사위원과 오찬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6. 6(금) 09:50	현 충 탑	추 념 식	○제48회 현충일 추념식	
6. 7(토) 19:00	화봉공원	추모행사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사망 추모 1주년 행사	
6.10(화) 11:00	제 전 마을회관	준 공 식	○제전방파제 보강공사 준공식	
6.16(월) ~6.25(수) 〈10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63회 북구의회 임시회	
6.17(화) 10:00	보건소 광 장	개 소 식	○북구 보건소 이전 개소식	
6.18(수) 14:00	시의사당 3층	토 론 회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대시민 토론회	
6.19(목) 19:00	북구청 2층 회의실	기 념 회	○"재미로 알아보는 건강 멋쟁이" 출판 기념회	
6.21(토) 11:00	송정 저수지 진입도로	개 통 식	○송정저수지 진입도로 개통식	
6.21(토) 11:00	달천회관	화합잔치	○달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	
6.22(일) 10:00	농 소 운동장	축구대회	○제4회 생체협 회장배 클럽 대항 청소년 축구대회	
6.22(일) 10:40	농 소 중학교	농구대회	○제3회 생체협 회장배 클럽 대항 청소년 농구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6.27(금) 14:00	북구청 2층 회의실	토 론 회	○장묘 문화 개선사업 최종 선정지 결정	
7. 5(토) 17:00	문화회관	콘 서 트	○2003 수다 콘서트	
7. 6(일) 10:00	농소초교	발 대 식	○북구 자율방범 연합회 발대식	
7. 7(월) ~7.16(수) 〈10일간〉	의 사 당	정 례 회	○제6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7. 9(수) 18:00	문 화 예술회관	나눔행사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설립 기금마련 하루 나눔 행사	
7.15(화) 18:00	한 우 숯불갈비	간 담 회	○구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7.16(수) 13:00	북구청 2층 회의실	글짓기 대 회	○제3회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	
7.18(금) 18:30	롯데호텔	리 셉 션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 울산유치 리셉션	
7.19(토) 12:00	무 룡 정	간 담 회	○의원, 구청장, 북구 생체협 이사 등 오찬 간담회	
7.23(수) 10:00	의 사 당	임 시 회	○제65회 북구의회 임시회	
7.24(목) 18:00	산하해변	전진대회	○울산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25(금) 19:00	지 상 레스토랑	창립총회	○울산 여성나눔회 창립총회	
7.29(화) 11:30	의 장 실	수 여 식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7.31(목) 19:00	태화나루	간 담 회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간담회	
8. 1(금) 19:00	정자해변	영화축제	○제1회 정자해변 영화축제	
8. 4(월) 18:30	효성삼환 아파트 앞 공원	주 민 한마당	○반전평화 주민한마당	
8. 5(화) 18:00	새중앙 새마을금고	개 점 식	○새중앙새마을금고 화봉지점 개점	
8. 8(금) 10:00	송 정 저수지	환경정비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정비	
8. 8(금) 14:00	현대병원	기 공 식	○울산현대병원 신축 기공식	
8. 8(금) 18:30	현 대 백화점	사 진 전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8. 9(토) 10:00	북구청 정 문	쌀나누기 행 사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	
8.12(화) 14:00	북 구 청 대회의실	발 족 식	○학교급식 북구연대 발족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14(목) 15:00	북 구 청 소회의실	보 고 회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관련 보고회	
8.15(금) 10:00	문 화 예술회관	기 념 식	○광복절 기념식	
8.15(금) 10:00	농소고교	체육대회	○농소3동 체육대회	
8.15(금) 10:30	약수초교	체육대회	○농소2동 체육대회	
8.18(월) 11:00	북 구 청 소회의실	수 여 식	○민주평통 정례회의 및 위촉장 수여식	
8.19(화) 11:00	호계초교	체육대회	○제6회 북구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	
8.21(목) 17:00	지 하 충무상황실	보 고 회	○2003 을지연습상황 참관	
8.21(목) 20:00	지 하 충무상황실	격려방문	○2003 을지연습근무자 격려	
8.22(금) 14:00	송정동	위 원 회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	
8.29(금) 19:00	화봉동 제1근린공원	열린마당	○2003 함께하는 열린마당	
8.30(토) 14:00	농 소 운동장	축구대회	○외국인 노동자 축구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 2(화) 19:00	북 구 청 대회의실	대의원 대 회	○민노동 임시 대의원 대회	
9. 8(월) 14:30	관내경로당	위문품 전 달	○관내경로당 위문품전달	
9. 8(월) 16:00	화 봉 사거리	서명운동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관련 서명운동	
9.16(화) 11:00	의 장 실	여론조사	○개방화에 대한 구민 여론조사	
9.17(수) 10:30	부의장실	위 원 회	○공무국외연수평가 자문위원회	
9.17(수) 13:00	문예회관	현장확인	○문화예술회관 태풍피해 현장확인	
9.21(일) 09:20	화 봉 중	축구대회	○제8회 화봉·연암 축구연합 회장기 축구대회	
9.25(수) 14:00	문예회관	개 관 식	○북구 문예회관 개관식	
9.25(수) ~9.27(토) 〈3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66회 북구의회 임시회	
9.26(금) 14:00	화봉동 제1근린공원	먹거리 장 터	○수재민돕기 아나바다 먹거리장터	
9.27(토) 19:00	문예회관	기 념 식	○문예회관 개관기념 및 청소년의 밤 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28(일) 10:00	농 소 중	족구대회	○제4회 북구청장배 족구대회	
9.28(일) 10:00	서부구장	체육대회	○제2회 울산지역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9.30(화) 11:00	농 소 운동장	수련대회	○2003 바르게살기운동 북구 한마음 수련대회	
10. 1(수) 11:00	농 소 운동장	전진대회	○2003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10. 3(금) 09:00	동 천 체육관	선수단 격 려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북구선수단 격려	
10. 6(월) 14:00	농소2동 문화의집	기 념 식	○제2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및 생활교육	
10.9(목) ~10.18(토) 〈10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	
10.10(금) 17:00	LG진로 아 파 트	먹거리 장 터	○LG진로아파트 부녀회 먹거리 장터	
10.11(토) 10:00	농 소 운동장	체육대회	○제4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0.14(화) 11:00	양 정 동 체육공원	체육대회	○북구농업인 학습단체회원 체육대회	
10.17(금) 19:00	팔 도 낙지촌	간 담 회	○북구 검도대표와의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0.18(토) 14:00	송정초교	경로잔치	○송정동 경로위안잔치	
10.18(토) 18:00	한 마 음 테니스장	개 장 식	○한마음 테니스장 확장 개장식	
10.19(일) 09:30	농 소 운동장	축구대회	○제10회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10.21(화) 14:35	화 봉 중	교 육	○1일 명예교사	
10.21(화) 18:30	현대아트 갤 러 리	산 진 전	○울산매일 보도사진전	
10.22(수) 11:00	강동초교	체육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8지역 합동정례회 및 체육대회	
10.24(금) 11:00	주 간 보호센타	개 소 식	○주간보호센타 (치매노인 주간보호)개소식	
10.28(화) 10:30	명촌초교	개 교 식	○명촌초등학교 개교기념식	
10.29(수) 14:00	경남은행	토 론 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KDI공동기획 토론회	
10.30(목) 11:00	북 구 청 소회의실	위 원 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31(금) 12:00	팔 도 낙지촌	간 담 회	○(사)여성유권자연맹 회원과의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1. 1(토) 10:40	연암초교	경로잔치	○효문동 경로잔치	
11.3(월) ~11.14(토) 〈12일간〉	소회의실	진상조사 특 위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 3건 진상조사특위	
11. 3(월) 11:00	대영교회	경로잔치	○북구 새마을사랑나눔 독거노인 위안잔치	
11. 5(수) 09:30	농 소 운동장	게이트볼 대 회	○제3회 북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11. 6(목) 19:30	롯데호텔	간 담 회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유치 관련 간담회	
11. 7(금) 12:30	쭈가돈가	간 담 회	○노인회 북구지회 임원과의 간담회	
11.13(목) 10:30	시 청 상 황 실	토 론 회	○지방분권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활 정책토론회	
11.15(수) 14:00	북 구 청 야외공연장	정기공연	○북구풍물연합 정기공연	
11.18(화) 17:30	선 관 위	개 소 식	○현자노조 중앙선관위 개소식	
11.20(목) 11:00	문화회관	복지증진 대 회	○제5회 북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1.21(금) 14:00	북 구 청 대회의실	취 임 식	○북구문화원 개원 및 문화원장 취임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1.25(화) ~12.19(금) 〈25일간〉	의 사 당	정 례 회	○제6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1.26(수) 14:00	문예회관	수 료 식	○북구 주민자치대학 제1기 종강 및 수료식	
11.26(목) 19:00	하 사 정	만 찬	○중국 장춘시 녹원구청장 환영만찬	
11.28(금) 14:40	북구의회	의회방문	○중국 장춘시 녹원구청장 의회 방문	
11.28(금) 18:30	파로스 부 페	송년의 밤	○북구 족구연합회 송년의 밤	
12. 3(수) 19:00	문예회관	기 념 식	○화봉동 자율방범대 창단9주년 기념행사	
12. 5(금) 13:00	의 장 실	인 터 뷰	○ubc 인터뷰	
12. 5(금) 16:00	중소기업 지원센터	기 념 식	○북울산청년회의소 창립13주년 기념식	
12. 8(월) 12:00	강 동 동	간 담 회	○구의원과 농업인과의 간담회	
12.10(수) 19:00	문예회관	해병의 밤	○2003년 북구 해병의 밤 행사	
12.11(목) 18:00	호 계 동	간 담 회	○시장과 구의원과의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12(금) 19:00	롯데호텔	취 임 식	○울산청년회의소 회장단 취임식	
12.16(화) 14:00	북 구 청 대회의실	봉사자 대 회	○2003 북구자원봉사자대회	
12.18(목) 12:00	성 안 동	간 담 회	○울산 구·군의장단 간담회	
12.20(토) ~12.26(금) 〈7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69회 북구의회 임시회	
12.20(토) 11:00	도서관 부 지	기 공 식	○북구 기적의도서관 기공식	
12.22(월) 17:00	마우나 오 션	송년의 밤	○북구 여성합창단 송년의 밤	
12.23(화) 18:00	북 구 청 대회의실	시 상 식	○2003년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 및 송년의 밤	
12.26(금) 12:00	북구의회	종 무 식	○북구의회 종무식	
12.29(월) 11:00	북 구 청 대회의실	퇴 임 식	○이상수 부구청장 퇴임식	
12.30(화) 14:30	의 장 실	인 터 뷰	○울산케이블방송 신년인사 인터뷰	
12.31(수) 20:00	체육공원 호반광장	제야행사	○2003 울산 송년제야행사	

2004년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 1(목) 06:30	정자해변	해맞이 축 제	○2004 정자해변 해맞이 행사	
1. 6(화) 11:00	롯데호텔	신 년 인사회	○상공회의소 주최 2004년도 신년인사회	
1. 8(금) 11:00	북 구 청 대회의실	신 년 인사회	○북구문화원 주최 2004년도 신년인사회	
1.13(화) 12:00	화 봉 동	간 담 회	○사립유치원 북구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1.14(수) 15:00	현 대 자동차	취 임 식	○현자노조 제11대 위원장 취임식	
1.16(금) 16:00	미포구장	축구대회	○동구의회 의원과의 친선 축구대회	
1.19(월) 10:30	농소농협	정기총회	○농소농협 제35기 정기총회	
1.27(화) 10:30	경남은행	기 념 식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승격3주년 기념식	
1.27(화) 11:00	북 구 청 대회의실	정 례 회	○민주평통 정례회 및 신년인사회	
1.27(화) 19: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모 임	○참여연대 북구모임	
1.29(목) 11:00	농 소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6.25참전 전우회 정기총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30(금) 08:00	태 화 동	간 담 회	○국립대추진단과의 간담회	
2. 2(월) 11:00	의 장 실	회비전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 3(화) 11:00	사 회 복지관	개 관 식	○북구 사회복지관 개관식	
2. 4(수) ~2. 6(금) 〈3일간〉	제 주 도	연 수	○지방의회 제주도 연수	
2.12(목) ~2.21(토) 〈10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70회 북구의회 임시회	
2.13(금) 10:30	울산컴퓨터 과 학 고	졸 업 식	○울산컴퓨터과학고 제7회 졸업식	
2.13(금) 17:00	달 동 함양집	간 담 회	○구·군의장단 간담회	
2.14(토) 14:00	평창2차	현 판 식	○평창2차 주민자치회 및 노인정 현판식	
2.17(화) 11:00	시 청 대회의실	취 임 식	○여성단체협의회 제9대 회장 취임식	
2.18(수) 14:00	장애인 협 회	개 소 식	○울산지체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 개소식	
2.20(금) 14:00	롯데호텔	기 념 식	○울산경제포럼 창립 기념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2.26(목) 10:30	농소농협	소비촉진 행 사	○구민과 함께하는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	
2.27(금) 19:00	사 회 복지관	기념행사	○울산장애인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행사	
2.28(금) 10:00	울산분묘	석존대제	○춘기 석존대제	
3. 3(수) 14:00	쉼 터	발 족 식	○북녘농민 비닐보내기 범시민운동본부 발족식	
3. 4(목) 10:30	동광교회	개 강 식	○동광노인대학 개강식	
3. 7(일) 17:00	북 구 청 대회의실	기념행사	○연암자율방범대 창립 8주년 기념행사	
3. 8(월) 14:00	북 구 청 소회의실	회 의	○무룡산 산불피해복구 추진위원회 구성관련 회의	
3.10(수) 11:00	사 회 복지관	입 학 식	○제1회 북구어르신행복대학 입학식	
3.13(토) 11:00	상 연 암 경 로 당	준 공 식	○상연암 경로당 준공식	
3.14(일) 10:00	농 소 운동장	축구대회	○제11회 북구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3.20(토) 15:00	문예회관	개 막 식	○전국서예문인화대전 개막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26(금) 11:00	농소농협	정기총회	○성균관 유도회 농소지회 정기총회	
3.31(수) 11:00	강동농협	수 여 식	○(재)유포장학회 제11차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	
4. 2(금) 14:00	북 구 청 대회의실	보 고 회	○헌수운동관련 중간보고회	
4. 3(토) 13:00	무 룡 산	식목행사	○진실모, 마당모, 주민연대 식목행사	
4. 6(화) 15:30	의 장 실	인 터 뷰	○민족21 인터뷰	
4. 8(목) 10:00	사 회 복지관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2004년도 정기총회	
4.17(토) 10:00	농소농협	기 원 제	○2004년 배 풍년기원제 및 한마당 큰잔치	
4.18(일) 09:00	무 룡 고	축구대회	○제1회 성원축구회장기 축구대회	
4.20(화) 11:30	양 정 동	결의대회	○2004년 안보결의대회 및 제7차 회원정기총회	
4.21(수) 11:00	무 룡 사	경로잔치	○강동동 경로잔치	
4.22(목) 18:00	북 구 청 야외공연장	기 념 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 출범2주년 기념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23(금) 14:00	시교육청	개 청 식	○울산광역시 교육청 개청식	
4.23(금) 15:00	농소초교	의병축제	○제5회 기박산성 의병축제	
4.23(금) 17:00	강동구장	축구대회	○동구의회 의원과의 친선축구	
4.24(토) ~4.28(금) 〈5일간〉	발 리	연 수	○구·군 의장단 연수	
5. 2(일) 14:30	금 강 볼링장	볼링대회	○제5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5. 4(화) 14:00	북 구 청 대회의실	취 임 식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신임회장 취임식	
5. 7(금) 10:00	의 장 실	카네이션 달아주기	○태연재활원 카네이션 달아주기	
5. 8(토) 09:00	농 소 운동장	체육대회	○북구청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5. 8(토) 11:00	송 정 동	경로잔치	○화산·곡리경로당 경로잔치	
5.10(월) ~5.14(금) 〈5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71회 북구의회 임시회	
5.11(화) 12:00	화 봉 동	경로잔치	○효성삼환아파트 경로잔치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5.12(수) 12:00	연 암 동	경로잔치	○ 엘지진로아파트 경로잔치	
5.12(수) 15: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용천참사 돕 기	○ 용천참사돕기운동본부 모임	
5.13(목) 14:00	북 구 청 대회의실	강 연 회	○ 달천철장과 쇠불놀이 보존방안 강연회	
5.15(토) 10:00	의 장 실	위촉장 수 여	○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5.15(토) 11:00	울 산 대공원	기 공 식	○ 울산대공원 2차기공식	
5.16(일) 06:00	호계초교	달리기 대 회	○ 제6회 구민화합 건강달리기대회	
5.16(일) 11:00	무 룡 정	궁도대회	○ 제4회 북구청장기 남녀궁도대회	
5.18(화) ~6.6(일) 〈18일간〉	집행부 대기실	결산검사	○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5.19(수) 10:00	화봉공원	바 자 회	○ 용천동포돕기를 위한 바자회 및 먹거리장터	
5.19(수) 13:30	북 구 청 대회의실	강 연 회	○ 통일홍보 강연회	
5.20(목) 06:00	농소전방 지 휘 소	현장체험	○ 생활쓰레기수거 현장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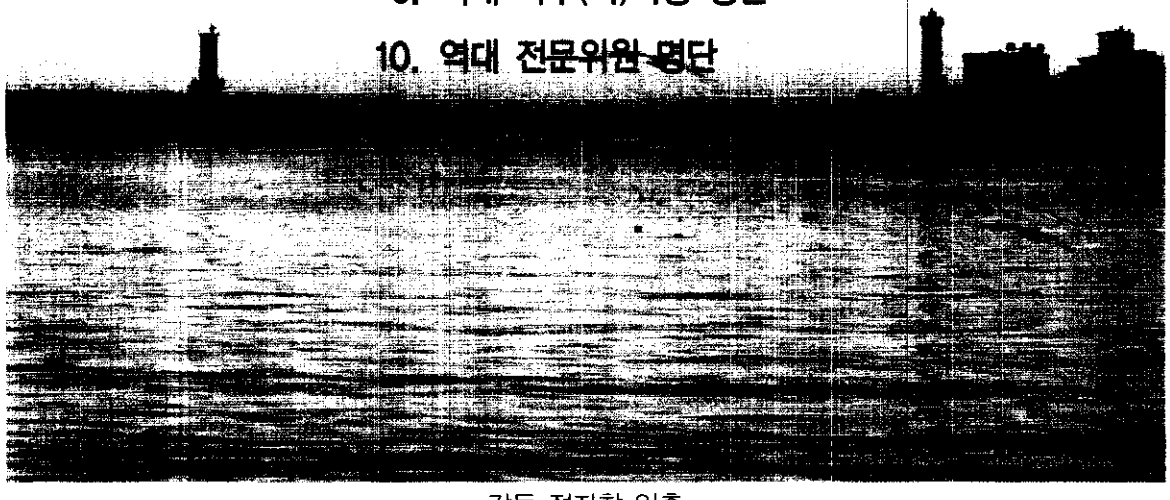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5.21(금) 09:00	진 해 시	선진지 견 학	○대체에너지시설 선진지 견학	
5.21(금) 14:00	남 부 소방서	발 대 식	○남부순환구조대 발대식	
5.22(토) 19:00	장 생 포 해양공원	고래축제	○제10회 울산고래축제	
5.27(목) 16:00	강 북 교육청	개 청 식	○강북교육청 개청식	
5.28(금) 14:30	북 구 청 대회의실	발 대 식	○어르신환경가꾸미봉사단 발대식	
5.29(토) 14:00	화 봉 동 미니구장	기념행사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5.30(일) 09:00	메 아 리 테니스장	테니스 대 회	○제7회 북구청장기 테니스대회	
6. 2(수) 18:30	연 암 동	간 담 회	○구청장과의 간담회	
6. 4(금) 10:30	농소농협	수 료 식	○주부대학 제14기 수료식	
6. 4(금) 19:00	문예회관	발 표 회	○제2회 차돌이가족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6. 6(일) 09:50	현 충 탑	추 념 식	○제49회 현충일 추념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6. 6(일) 10:30	농 소 운동장	체육대회	○농소지구아파트 연합체육대회	
6. 9(수) 09:00	거 제 포로수용소	안보견학	○중고생 안보현장견학	
6.10(목) ~6.19(토) 〈10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6.13(일) 10:00	농 소 고	체육대회	○농소3동 동민한마당체육대회	
6.15(화) 11:00	청 소 년 체육활동장	창립총회	○강동동체육회 창립총회	
6.17(목) 08:50	제일은행 농소지점	개 점 식	○제일은행 농소지점 개점식	
6.17(목) 19:00	강동농협	취 임 식	○울산동해라이온스클럽회장 취임식	
6.18(금) 10:00	화봉공원	나눔장터	○제1회 북구나눔장터	
6.18(금) 14:00	북 구 청 대회의실	보 고 회	○무룡산희망의숲가꾸기 헌수운동 완료보고회	
6.22(화) 10:30	북 구 청 소회의실	의견청취	○주민투표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	
6.22(화) 15:00	보 건 소	보건행사	○구강보건의 날 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6.23(수) 13:30	문예회관	자치대학	○제2기 북구주민자치대학	
6.24(목) 19:30	문예회관	연 주 회	○울산북구여성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6.25(금) 10:00	명 촌 동	일일호프	○결손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호프	
6.25(금) 12:00	울 산 대공원	환 경 캠페인	○울산사랑 범시민 환경캠페인	
6.30(수) 〈1일간〉	의 사 당	임 시 회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부록

1. 역대 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의원 명단
5. 제2대의원 사진
6. 제3대의원 명단
7.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8. 역대 구청장 명단
9.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0. 역대 전문위원 명단



강동 정자항 일출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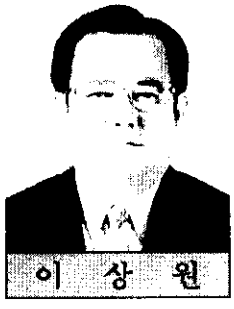


송 정 동



□ 의 원

제10선거구



농 소 동(읍)



진 장 동



효 문 동



양 정 동



염 포 동



제2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의원 사진

□ 의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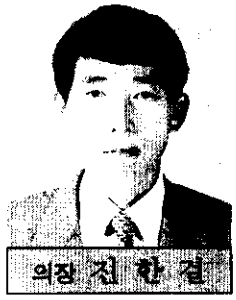
송 정 동



농소3동



양 정 동



강 동 동



□ 의 원

농 소 1 동



농 소 2 동



효 문 동



송 정 동



염 포 동



제3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9 ~2004.7.6	전반기 의장
2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9 ~2004.7.6	전반기 부의장
3	의 원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4	〃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6.30	
5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6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7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8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 ~ 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 ~ 현 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 국장	지 방 서 기 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 과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 2004.3.5	
4	〃	〃	송태호	1955.1.10	2004.3.6 ~ 현 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 현재	